

研究報告 157  
1987. 12

# 農家の 政策受容에 관한 調査研究

李 重 雄 (首席研究員)

李 永 錫 (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研究報告 157

## 農家の 政策受容에 관한 調査研究

### 要 約

□ 우리나라의 農業政策은 해방, 6.25 동안, 戰後復舊로 이어진 60年代까지 「食糧의 絶對不足을 해결하기 위한 増産」을 政策基調로 했었고, 70年代에는 工業을 중심으로 한 1·2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功的 추진으로 都·農間의 隔差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増産政策基調위에 農家所得増大를 接木시킨 「増産을 통한 農家所得増大」가 새로운 政策基調로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나 70年代 후반부터는 人口의 都市移動 등에 따른 農産物의 商品化와 流通物量의 增加로 인한 「流通近代化」, 「價格安定」, 「營農後繼者의 育成」 등에 대한 必要性이 證明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増産을 통한 農家所得増大」가 제한된 內需市場으로 점차 限界에 가까워 짐으로써 「農外所得増大」에 대한 政策的 關心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80年代에 들어서면서 70年代 후반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여러가지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農業政策도 多様해지기 시작했고, 다양해진 農業政策은 상호간의 연관성과 國土와 國民의 均衡開發이라는 國家의 發展戰略方向의 큰 테두리 안에서 農外所得源의 積極적인 開發과 農漁村의 보다 發展된 生活空間化를 골격으로 한 綜合的 性格의 「農漁村綜合對策」으로 發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要約할 수 있겠다.

□ 이러한 農政基調의 變遷過程을 거치면서 農林漁業은 그의 對 GNP 비중에 있어서 1970 년의 29.3%에서 85년에는 14.8%로 낮아짐으로써

## II

가장 비중이 낮은 産業分野로 밀려났고, 기간중의 GNP 成長 기여도에 있어서도 8.5%로 가장 낮은 産業分野로 밀려나 있다. 한편 農業生産 內部에 있어서는 1985년을 기준할 경우 栽培業의 比重이 87.1%로 가장 높지만 1970년의 91.3%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畜産業은 같은 기간 중 6.9%에서 11.0%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한편 그 동안의 農業政策은 農家經濟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 예를 들면 農家經濟의 規模가 1985년에는 1970년의 그것에 비해서 農家所得은 22.4 배, 農家支出은 21.9 배, 農家經濟剩餘는 25.5 배, 農家資産은 31.0 배가 증가함으로써 農家發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으나 農家負債는 127.2 배에 이르고 있어 크게 우려되고 있는 實情이다.

[4] 따라서 本研究은 農家を 事業主體로 하는 政策事業이 農家の 成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農家の 政策受容實態를 綜合적으로 調査·分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農家の 政策受容意圖와 政府의 政策意圖를 비교·검토하고자 했다.

[5] 우선 농가의 政策受容意圖가 정부의 政策意圖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비교적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이미 飼育중에 있는 韓牛에 대해서 入殖資金을 支援받았다거나, 이미 自力으로 造成한 林間草地나 이미 5년동안이나 使用해오고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造成 또는 設置資金을 지원받았다거나, 또는 營農資金을 支援받아 동생의 事業資金을 마련해주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6] 이러한 현상이나 경향은 政府의 政策事業에 대한 計劃 樹立과 政策事業對象農家の 選定, 政策事業受容農家에 대한 事後管理의 3가지 分野에 있어서의 미비점이나 問題點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우선 政府의 政策支援事業의 計劃 樹立에 있어서는 農家を 直接的인

事業主體로 할 경우, 제 1의 利害當事者인 農家들의 立場이나 見解, 要求 등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폭넓은 事前檢討가 先行됨으로써 農家와 農村이라는 現場事情에 알맞는 政策支援事業이 計劃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㉔ 政策支援事業 對象農家の 選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가 자신이 스스로의 事業計劃을 說明하고, 選拔審議過程에서의 질의 답변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農村指導機關은 事業計劃을 作成하고자 하는 農家들에게 指導와 諮問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㉕ 政策支援事業 受容農家에 대한 事後管理에 있어서는 이들 農家를 최 일선에서 接하고 있는 一線機關들이 支援資金의 流用이나 執行에 대한 確認과 감시에 그치고 있는 實情인 바, 예를 들면 耕種部門에 選拔된 영농 후계자가 約定에 따라서 農地만을 구입했을 뿐, 곧 바로 支援部門과는 다른 單期肥育牛事業이나 포도원을 造成하였고, 이러한 중요한 事業方向의 轉換이 擔當機關이나 指導機關과의 事前協議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政策支援事業에 대한 事後管理가 매우 허술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㉖ 특히 事業을 시작할 당시의 展望과 與件들이 事業이 推進되고 있는 도중에 急變할 경우(例: 韓牛入殖支援事業)에 있어서는 適時適切한 方向轉換이나 적극적인 對應方案의 마련이 一線機關의 自律性과 權限의 制限, 政府組織의 硬直性 등으로 신속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責任을 政府가 떠맡아야 한다는 비난의 對象이 되고 있는 實情이다.

㉗ 또한 農家の 立場에서는 農産物을 生産하여 市場을 통해서 供給한다는 農業經營體로서의 經營 및 企劃能力의 向上이 시급히 要請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農村指導事業의 強化가 매우 絶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農村指導機關은 農家の 事業計劃 樹立에 대한 指導, 農家들이 提示한 事業計劃에

#### IV

대한 檢討와 審議, 推進중에 있는 事業計劃의 適時適切한 補完 및 改善 등의 분야에 있어서 그 지역의 實情에 가장 밝은 專門機關이라는 점에서 事業의 成敗를 左右할 수 있는 重要な 役割과 機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制度的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㉒ 이외에도 일부 농가들의 政策支援事業에 대한 부정적인 認識(例: 相對的 열등 및 피해의식, 全國的 事業規模 對比 農家當 事業規模의 현격한 差異에서 오는 실망감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도 상당한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判斷되는 바, 이는 政府의 政策意圖와 그의 內容 및 申請節次, 方法 등에 대한 弘報 및 相談機能이 農家들과 最일선에서 接하고 있는 一線機關을 중심으로 強化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머 리 말

農業의 成長・發展과 農家의 所得增大를 위해서 政府는 그동안 많은 農業政策을 施行해 왔으나 부분적으로는 本來의 目的을 달성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負의 結果를 가져 오기도 했다.

이러한 結果는 政策을 수립하고 執行하는 過程에 政府의 施行 착오에서 기인되기도 하겠으나 農家의 政策受容 態度는 물론 農家與件 등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서 기인되기도 한다. 특히 農家를 事業主體로 한 政策支援事業은 그의 成果가 農家의 受容動機, 受容態度, 事業의 推進方法과 能力 등에 의해서 左右되며, 이는 또한 農家의 成長段階, 經營規模, 經營能力 등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政策支援事業의 効果도 農家에 따라서 差異가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農家를 事業主體로 한 政策支援事業들이 농가에서 어떻게 受容되고 있으며, 농가의 成長과 發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調査・分析하고자 했다. 다만 調査對象農家를 일부농가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의 研究結果는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를 誘導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987. 12.

# 目 次

## 第1章 序 論

- |                    |   |
|--------------------|---|
| 1. 研究의 必要性 .....   | 1 |
| 2. 研究目的 .....      | 2 |
| 3. 研究方法 및 範圍 ..... | 2 |

## 第2章 主要農業政策의 變遷과 農業構造의 變化

- |                              |   |
|------------------------------|---|
| 1. 主要農業政策의 目標 및 基調의 變遷 ..... | 4 |
| 2. 主要農業政策의 樹立背景과 內容 .....    | 6 |
| 3. 農業生産 및 農家經濟의 變化 .....     | 9 |

## 第3章 農家の 政策受容實態

- |                             |    |
|-----------------------------|----|
| 1. 基本前提 .....               | 16 |
| 2. 調査農家の 一般概況 .....         | 17 |
| 3. 主要農政事業別 調査農家の 受容實態 ..... | 25 |

## 第4章 要約 및 結論 .....

126

## 附錄：農家の 政策受容에 관한 調査表 .....

132

# 表 目 次

## 第 1 章

表 2-1	主要農業政策事業의 特徵	7
表 2-2	年度別, 産業別, 生産額 및 成長推移 (1980 年 不變市場價格基準)	10
表 2-3	農林漁業의 部門別 成長推移 (1980 年 不變市場價格基準)	11
表 2-4	年度別, 作目別 生産量 指數推移(1970=100.0)	12
表 2-5	農家經濟規模의 變化推移(戶當 平均)	14
表 2-6	農家戶當 農業粗收入 및 構成比 變化推移	15

## 第 2 章

表 3-1	調査地域別 調査農家數	18
表 3-2	調査農家의 經營特徵別 分布	22
表 3-3	調査農家의 營農形態別, 所得水準別 分布	24
表 3-4	主要政策事業別 調査農家의 受容現況	25
表 3-5	年度別 財源 및 事業別 소 入殖支援實績, 1982~86	27
表 3-6	年度別 비닐하우스 施設面積推移	56
表 3-7	年度別 호프生産量 推移	72
表 3-8	年度別 農漁民後繼者 育成實績	84
表 3-9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事業別 資金支援限度 및 償還條件	85
表 3-10	主要農機械의 臺當 農家戶數 變化推移	96
表 3-11	年度別 主要農機械 支援供給 및 資金支援實績	97

表 3-12	年度別 農機械購入 資金支援率 變化推移	98
表 3-13	調査農家の 主要機種別 農機械普及支援 受惠農家數	99
表 3-14	調査農家の 耕耘機 購入資金 調達内容	101
表 3-15	調査農家の 政策受容結果(耕耘機普及支援事業)에 대한 見解別 分布	102
表 3-16	調査農家の 部門別 耕耘機普及支援事業 受容結果에 대한 見解別 分布	103
表 3-17	年度別 機械化 營農團 育成支援實績	106
表 3-18	機械化 營農團 育成支援内容, 1987	107
表 3-19	年度別 秋穀收買實績, 1970 ~ 86	112
表 3-20	年度別, 穀種別 糧穀管理基金 缺損現況, 1970 ~ 86	113
表 3-21	年度別 옥수수生産, 收買 및 用途別 使用實績, 1970 ~ 86	116
表 3-22	年度別 營農資金支援實績, 1980 ~ 86	119
表 3-23	年度別, 分期別 營農資金融資 및 回收實績, 1980 ~ 85	120
表 3-24	調査農家の 營農資金 融資金額別 分布, 1986/1987	122
表 3-25	營農資金受惠農家の 申請額 對 配定額의 關係別 分布	122
表 3-26	營農資金受惠農家の 申請動機別 分布	123
表 3-27	營農資金受惠農家の 營農資金 使用實態別 分布	123
表 3-28	調査農家の 營農資金 受惠結果에 대한 見解別 分布	124

## 圖 目 次

### 第 2 章

圖 2-1 時代別 主要農政目標 및 基調의 變遷過程 .....	5
-----------------------------------	---

### 第 3 章

圖 3-1 江原道 橫城郡 屯內面 位置圖 .....	19
圖 3-2 忠北 陰城郡 三成面 位置圖 .....	20
圖 3-3 忠南 大德郡 鎮岑面 位置圖 .....	21

빈 면

# 第 1 章

##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농업의 成長・發展과 농가의 所得向上 등 농업과 농가・농민을 위해서 政府는 그동안 각종 農業政策을 施行해 오고 있다. 그러나 政府가 추구했던 당초의 目標은 地域, 農家, 또는 農産物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된 것도 있으나, 반대로 負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政府의 政策樹立이나 事業執行上的 착오 등에서 기인되기도 하겠으나, 농가의 政策受容上的 여러가지 問題點 등에서 기인되는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農家를 事業主體로 한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政策을 受容하는 농가의 受容動機, 受容能力, 受容態度, 政策受容에 기대하는 目標 등에 따라서 해당정책의 目標達成과 효과가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農家의 政策受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를 事業主體로 한 農業政策들이 농가에서 어떻게 受容되고 있으며, 농가의 成長과 發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綜合적으로 調査・分析함으로써 政府의 政策意圖나 目標과 농가의 農業政策

受容에 있어서의 政策受容意圖나 目標하는 바와의 隔差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案의 모색을 뒷받침할 수 있는 調査·研究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2. 研究目的

따라서 本研究는 농가의 成立 및 成長過程속에서 受容된 바 있는 농업정책의 受容形態와 受容當時의 農家の 目標 및 期待, 事業推進過程과 그 結果에 대한 農家自身들의 견해와 滿足度 등을 調査·分析하고, 해당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政策意圖와 目標를 比較·檢討하여 농가의 政策受容에 대한 特徵과 差異點 등을 찾아냄으로써 發展的인 농업정책의 수립과 効率的인 政策事業의 推進 및 事後管理를 위한 參考資料를 제공코자 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 3. 研究方法 및 範圍

정부수립후부터 지금까지 施行되어진 농업정책은 그의 種類와 範圍 및 內容이 매우 방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記憶能力에도 限界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調査地域을 山間, 準山間, 都市近郊地域으로 制限하고, 각 지역의 特性을 감안하여 각 지역에서 5 또는 8개 농가를 有意選定하여 調査 및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 18개 조사농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經營形態와 이들 농가들이 비교적 자세히 記憶하고 있는 受容政策만을 중심으로 檢討·分析함으로써 畜産政策事業의 소入殖(韓牛, 肉牛, 젖소)과 草地造成事業, 特作支援事業의 施設상지, 호프, 高冷地菜蔬, 農業機械化事業의 個別農家에 대한 支援과 機械化 營農團에 대한 支援事業, 營農後繼者育成事業, 收買事業의 米穀과 옥수수收買事業, 그리고 短期營農資金支援事業으로 제한했다.

本研究는 先行 研究文獻과 각종 政策資料를 參考로 했으며, 개별농가의

成立 및 成長過程과 농업정책의 受容 및 앞으로의 展望과 기대에 대해서는 個別農家에 대한 直接面接調査를 實施했으며, 이 농가조사결과는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서술한 다음 이를 檢討·分析하는데 충실하고자 했다.

## 第 2 章

# 主要農業政策의 變遷과 農業構造의 變化

### 1. 主要農業政策의 目標 및 基調의 變遷

解放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農業政策을 時代別로 정리해 보면 대략 〈圖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해방후부터 6.25 동란을 거친 60年代 이전까지의 상황은 社會的, 政治的 安定과 함께 食糧의 絶對不足問題의 해결을 최우선의 國政課題로 삼지 않을 수 없었으며, 食糧問題의 해결을 위해서 增產政策과 농업생산자인 농가들의 農業生産基盤인 農地問題의 해결을 위한 農地改革을 택하게 되었었다.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는 과감한 經濟開發政策들이 施行되기 시작했으나 食糧自給은 아직 어려웠었고, 이에 따라 增產政策의 基調는 큰 변화없이 持續되었으며, 부분적으로 適地適作을 위한 主産團地造成事業 등의 構造改善政策이 試圖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第1·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非農業部門의 成長은 高度化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都農間의 隔差가 점차 심해지기 시

圖 2 - 1 時代別 主要農政目標 및 基調의 變遷過程

期 間	1945~48	1948~55	1956~61	1961~66	1967~71	1972~76	1977~81	1982~86
農 政 目 標 及 基 調	○ 食糧問題 (食糧增產 及 需給 安定) ○ 社會安定	(需給 및 價格安定 政策)	(主穀價格 安定 및 需給 安定, 食糧 增產)	○ 構造改善 政策	○ 價格流通 政策 ○ 農家所得 政策			
主 要 施 策	○ 農地配分 ○ 米穀自由 市場開發	○ 農地改革 ○ 食糧增產 政策	○ 農業增產 政策	○ 自立安定 農家育成 ○ 主產區地 事業	○ 大單位綜合 開發 ○ 農工併進 ○ 農特事業 ○ 高米價政策 ○ 經濟作物 增產事業	○ 새마을운동 ○ 機械化事業 ○ 農特事業 ○ 새마을所得 增大事業 ○ 流通構造 改善事業	○ 營農後繼者 事業 ○ 農外所得 開發 ○ 새마을所得 綜合開發事業 ○ 流通構造改善	○ 複合營農 ○ 農外所得源 開發 ○ 畜產, 經濟 作物 增產 ○ 價格安定 및 流通改善
비 고	○ 主穀(食糧) 增產政策 ○ 主穀需給 및 價格安定政策			○ 所得增大政策 ○ 構造政策 ○ 食糧增產政策		○ 轉換期 農政 ○ 所得 및 流通價格政策 ○ 構造改善政策		

작함으로써 기존의 增産政策 基調위에 農家所得增大政策을 接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農業政策基調는 과거의 「絶對不足 食糧의 確保를 위한 增産」으로 부터 「增産을 통한 農家所得의 增大」로 차츰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非農業部門의 高度成長에 따른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으로 農産物의 商品化和 流通物量의 增加로 인한 農産物의 價格安定과 流通構造의 改善, 그리고 농업인구의 상대적인 감소와 老齡化로 인한 營農後繼者育成事業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하기 시작했었다. 또한 「增産을 통한 農家所得增大」는 제한된 內需市場이라는 限界에 가까워 지면서 農外所得의 증대에 대한 政策的關心도 높아지기 시작했었다고 하겠다.

80年代에 들어서면서도 70년대 중반부터 提起되기 시작했던 여러가지 問題點들이 복합적으로 作用함으로써 이의 해결을 위한 農業政策도 차츰 다양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小種 大量生産體系을 중심으로 한 商業的 營農의 擴散으로 農産物의 價格波動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價格安定政策의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러한 價格不安定에 대응하기 위한 農家들의 위험요소 分散을 도모하기 위한 複合營農事業이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全國土, 全國民의 均衡發展을 目標로 農漁村의 現代化와 農家所得의 증대를 위한 農外所得源의 開發을 위해서, 과거의 농가 또는 農産物단위 위주의 政策事業들을 農漁家・農漁村을 하나의 生活圈, 하나의 經濟圈, 하나의 農業圈 등으로 묶어서 綜合的인 開發方式을 통하여 發展시키고자 1986. 3.에는 農漁村綜合對策이 마련되었었다.

## 2. 主要農業政策의 樹立背景과 內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農業政策基調는 전반적으로 「絶對不足 食糧問題의 해결을 위한 增産」 → 「增産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農外所得源의 開發과 농어촌의 종합전인 開發」의 과정을 밟아 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農家를 事業主體로 한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은 1965년 이후의 農業政策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表 2-1 主要農業政策事業의 特徵\*

政策事業別	期間	特 徵
○ 自立安定農家育成事業	1965~66	對農產物 政策에서 對農家政策으로의 轉換
○ 主産團地造成事業	1966~67	自立安定農家育成事業을 補完 發展 시킴
○ 農漁民所得増大 特別事業	1968~73	増産基調위에 農漁家所得増大를 接木시킴
○ 새마을所得増大 特別事業	1974~76	農特事業과 새마을運動의 結合
○ 새마을所得綜合開發事業	1977~81	새마을所得増大 特別事業의 事業單位 擴大
○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	1981~	農漁村靑少年을 自力成長 農家로 育成 支援
○ 複合營農事業	1983~	農家所得, 農產物需給 및 價格의 安定化
○ 農漁村綜合對策	1986~	農業・農村・農家の 綜合開發方式

\* 農家を 事業主體로 하는 對農家政策事業을 뜻함.

#### 가. 自立安定農家育成事業(1965~66)

이 사업은 耕地規模가 5~10 단보에 불과한 영세소농을 自立安定農家로 育成하고자 한 사업으로써 농가를 支援하여 自力成長基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増産을 우선했던 과거 政策事業들과는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自力成長을 위한 새로운 作目的 導入이 適地適作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主産團地造成事業과 그의 性格이나 內容이 비슷하여 主産團地造成事業으로 흡수·통합되었었다.

#### 나. 主産團地造成事業(1966~67)

自立安定農家育成事業을 補完·發展시키고 適地適作을 유도함으로써, 農家生産의 主産團地化와 商業的 專門農化를 촉진시키기 위한 政策事業으로

써, 한편으로는 농가의 主力作目 및 地域特化作目的 도입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主産地의 농산물을 加工・處理할 수 있는 施設을 農村地域에 배치함으로써 農村近代化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 다.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1968~73)

흔히 農特事業이라고 쓰여지기도 한 이 사업은 工業開發 위주의 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추진 결과, 확대된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까지의 食糧増産이나 主産團地造成事業 등이 추구해 왔던 政策方向을 價格支持와 經濟作目的 도입 등을 통한 農漁家所得增大로 轉換하고자 한 事業으로써, 당시의 農工併進, 農漁村近代化, 農漁民의 所得增大라는 3大 農政基本方向의 중요한 政策手段으로 기여했었으나 새마을運動과 연결되면서 事業名稱이 「새마을 所得增大事業」으로 바뀌게 되었다.

#### 라. 새마을 所得增大事業(1974~81)

이 사업은 1970년부터 協同을 바탕으로 한 農村의 環境改善事業으로 시작된 새마을運動이 自助와 自立精神을 중심으로 한 精神啓發과 所得增大를 위한 努力으로 이어지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과 統合・調整되고, 보다 장기적인 政策事業으로 發展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1974년부터 76년까지를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을 主軸으로 한 「새마을 所得增大特別事業」, 또는 「第2次 農特事業」으로 따로 파악되기도 하는 바, 이는 이 사업이 1977년부터는 과거의 마을 또는 부락단위사업에서 邑 또는 面單位の 事業으로 擴大됨으로써 「새마을 所得綜合開發事業」으로 불리우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마.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1981~ )

이 사업은 非農業部門의 成長이 여러차례에 걸친 工業開發 위주의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추진으로 高度化 되면서 都農間의 開發隔差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農村人口의 都市流入과 農業人口의 老齡化 현상이 심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農業生産의 科學化와 專門化가 요구됨에 따라서 農漁村의 유능한 靑少年들로 하여금 農村에 定着, 專門化된 農業人力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營農正銳資源을 育成하기 위한 事業이다.

#### 바. 複合營農事業(1983~ )

이 사업은 商業農化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大規模化와 제한된 內需市場 등에 의한 농산물의 需給不均衡과 價格不安定이 잦아짐으로써 농가소득의 不安定이 심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米穀(麥類)+ 地域特化作目 + 補完作目」을 基本模型으로 한 농가 및 마을단위의 複合營農體系를 유도하고자 새로운 作目の 도입을 支援하거나 농가가 도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收買해주는 事業으로써, 농가소득의 安定的 增大, 農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 農家賦存資源의 活用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 사. 農漁村綜合對策(1986~ )

이 사업은 그동안의 여러가지 政策事業에도 불구하고 農家·農村의 成長·發展이 非農業部門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져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全國土, 全國民의 均衡있는 開發이 絶실해짐에 따라서 農家の 支出負擔을 줄여나가고, 農外所得源을 開發하기 위하여 農工團地 등을 造成하며, 農漁村을 살기 좋은 쾌적한 生活空間으로 가꾸고 發展시키기 위한 農村·農家·農業에 대한 綜合的인 對策으로써,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初期段階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 3. 農業生産 및 農家經濟의 變化

#### 가. 農業生産의 變化

우리나라의 農業生産은 꾸준히 成長해 왔으나 그 成長率은 國民總生産

額이나 非農業部門의 生産額成長率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있다. 즉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林漁業生産額은 1970년의 49,896億원에서 1985년에는 78,092億원으로 1.6배가 增加했으나 國民總生産額은 같은 기간중에 3.1배, 鑛工業生産額은 5.9배, 社會間接資本生産額은 5.0배, 기타 서비스業生産額은 2.4배가 증가함으로써 가장 낮은 성장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農林水産業의 對 GNP 比重도 1970년의 29.3%에서 1985년에는 14.8%로 낮아졌으며, 그 비중이 가장 낮은 産業部門으로 밀려나 있다. 또한 國民經濟成長에 대한 지난 16년동안 (1970~85)의 기여도에 있어서도 8.5%에 불과함으로써 가장 낮은 産業分野로 밀려나 있다.

한편 農林漁業중에서 農業이 차지하는 生産額比重은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내외의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므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農業部門중에서는 栽培業의 生産額比重이 가장 높지만, 그 비중은 1970년의 91.3%에서 1985년에는 87.1%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반면 畜産業의 生産額比重은 같은 기간중에 6.9%에서 11%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表 2-2 年度別, 産業別, 生産額 및 成長推移, (1980年 不變市場價格基準)

單位: 10 억원 (%)

年度	內容 國民總生産額	部 門 別 生 産 額			
		農 林 漁 業	鑛 工 業	社會間接資本	기타서비스
1970	17,013.0(100.0)	4,989.6(29.3)	2,975.4(17.5)	2,135.6(12.6)	6,912.4(40.6)
1975	25,815.7(100.0)	6,289.1(24.4)	6,406.6(24.8)	3,546.8(13.7)	9,573.2(37.1)
1980	36,672.3(100.0)	5,524.7(15.0)	11,734.3(32.0)	6,851.4(18.7)	12,561.9(34.3)
1985	52,705.4(100.0)	7,809.2(14.8)	17,597.9(33.4)	10,617.0(20.1)	16,681.3(31.7)
1985/1970	3.10 倍	1.57 倍	5.92 倍	4.97 倍	2.41 倍
1970~1985 연평균성장률	7.83	3.03	12.58	11.28	6.05
1970~1985 성장기여도	100.0	8.5	40.6	23.4	27.5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 主要統計」, 1987.

表 2 - 3 農林漁業의 部門別 成長推移 (1980年 不變市場價格基準)

單位：10 억원 (%)

內 容 年 度	農 林 漁 業 總 生 產 額	農 業				林 業	漁 業
		計	栽 培 業	畜 產 業	부대서비스		
1970	4,989.1(100.0)	4,380.5 (87.8)(100.0)	3,998.6 (91.3)	301.6 ( 6.9)	80.3 (1.8)	319.3 (6.4)	289.8 (5.8)
1975	6,289.1(100.0)	5,500.7 (87.5)(100.0)	4,948.0 (90.0)	458.6 ( 8.3)	93.3 (1.7)	326.4 (5.2)	462.1 (7.3)
1980	5,524.7(100.0)	4,663.5 (84.4)(100.0)	4,124.7 (88.5)	446.7 ( 9.7)	92.2 (1.8)	347.1 (6.3)	514.1 (9.3)
1985	7,809.2(100.0)	6,704.1 (85.8)(100.0)	5,842.9 (87.1)	741.3 (11.0)	119.9 (1.8)	435.5 (5.6)	669.5 (8.6)
增 加 率 ( 1985 / 1970 )	1.57 倍	1.53 倍	1.46 倍	2.46 倍	1.49 倍	1.36 倍	2.31 倍
年平均成長率 ( 1970 ~ 85 )	3.03	2.88	2.56	6.18	2.71	2.09	5.74
成長寄與度	100	82.5 (100.0)	(79.2)	(19.3)	(1.5)	4.1	13.4

資料：農林水産部，「農林水産 主要統計」，1987.

한편 이를 農産物別로 살펴보면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의 生産量을 100으로 했을 경우, 껌소는 1.625.0으로 가장 成長이 빨랐으며, 그 다음은 調味菜蔬類(489.2), 참깨·들깨(387.5), 엽채류와 과일류(각각 346.1) 등의 순으로 모두 9개 作目群에 있어서 그의 生産량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히려 生産량이 줄어든 作目群은 綿花가 23.1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다음은 유채(24.0), 麥類(32.1), 그리고 薯類(45.9)의 순으로 모두 4개 作目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의 변화가 없는 作目은 豆類(101.5)와 雜穀類(1186)의 두가지 作目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러가지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國民經濟의 成長에 따른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食生活構造가 高級化, 高蛋白質·低熱量化의 方向으로 바뀌고 있고 簡食需要가 增大되는 등, 需要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加工業體들의 輸出需要 充足을 위한 原料農産物의 輸入需要 增大(예; 綿花)와 價格競爭力의 취약성 및 大量需要의 充足을 위한 農産物輸入의 증가(예; 유채, 小麥 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2 - 4 年度別, 作目別 生産量指數推移(1970=100.0)

작목별 연도	식 량 작 물					채 소 류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과 채	엽 채	근 채	조미채
19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75	118.5	99.2	74.2	128.8	94.3	86.4	264.0	180.2	158.0
1980	90.1	49.8	137.1	98.2	55.1	163.5	368.1	266.3	390.3
1985	142.8	32.1	118.6	101.5	45.9	170.0	346.1	216.9	489.2

내용 연도	과 실	특 용 작 물				축 산 물			
		면 화	유 채	참 깨 들 깨	땅 콩	한 우	유 우	돼 지	닭
19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75	128.4	46.1	140.0	218.8	133.3	121.0	358.3	111.2	88.6
1980	196.9	53.9	108.0	118.8	150.0	111.0	862.5	159.1	169.8
1985	346.1	23.1	24.0	387.5	266.7	198.5	1,625.0	254.5	216.1

資料：農林水産部, 「作物統計」, 1986.

한편 이러한 農業生産의 변화속에서 農家經濟는 所得과 支出, 資産과 負債 등 그의 規模가 크게 증대되었다. 즉 〈表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부터 1985년까지의 16년동안 農家所得은 22.4 배, 農家支出은 21.9 배, 農家資産은 31.0 배, 그리고 農家負債는 무려 127.2 배나 증대되었다. 이러한 農家經濟規模의 增大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우선 22.4 배의 農家所得規模의 증대와 21.9 배의 農家支出規模의 증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相關關係로부터 22.5 배의 農家經濟剩餘規模의 증대는 농가경제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家資産規模의 增大가 31.0 배인데 비해서 農家負債規模의 增大가 무려 127.2 배에 이르는 것은 農家經濟의 부정적 발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1985년의 農家負債가 戶當 平均 200 萬원을 상회하는 반면, 農家經濟剩餘는 96 萬여원으로 그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農家經濟剩餘로부터의 負債償還은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이는 또한 農家の 支出 減縮努力에 의한 農家の 生活水準 퇴보나 또는 농가의 自己資本潛蝕, 그 중에서도 특히 都市資本에 의한 農地潛蝕이 進行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농가의 農業粗收入에 있어서의 作目群別 依存度를 살펴보면, 〈表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을 기준할 경우 그의 48%를 米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채소(17.3%), 축산(17.0%), 과수(6.3%) 등의 순이다. 그러나 1970년부터 85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米穀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채소, 과수, 축산에 대한 그것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농가의 農産物 生産이 米穀偏重으로 부터 換金性이 높은 經濟作物의 적극적인 受容으로 바뀌면서 複合營農形態로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表 2 - 5 農家經濟規模의 變化推移(戶當 平均)

單位: 원(%)

연도	농가소득			농가지출	농가임여	농가자산 (A)	농가부채				비율(%)			
	농업소득	농외소득	합계				계 (B)	생산성 (C)	소비성 (D)	차입금 상환(E)	B/A	C/B	D/B	E/B
1970	194,037 (75.9)	61,767 (24.1)	255,804 (100)	218,024 (85.2)	37,780 (14.8)	915,251	15,913 (100)	7,950 (50.0)	6,738 (42.3)	1,225 ( 7.7)	1.7	50.0	42.3	7.7
1975	714,838 (81.9)	158,095 (18.1)	872,933 (100)	646,002 (74.0)	226,931 (24.0)	4,588,400	33,434 (100)	19,362 (57.9)	12,068 (36.1)	2,004 ( 6.0)	0.7	57.9	36.1	6.0
1980	1,754,816 (65.2)	938,294 (34.8)	2,693,110 (100)	2,288,012 (85.0)	405,098 (15.0)	13,383,522	338,465 (100)	205,562 (60.7)	111,570 (33.0)	21,333 ( 6.3)	2.5	60.7	33.0	6.3
1985	3,698,936 (64.5)	2,037,310 (35.5)	5,736,246 (100)	4,774,097 (83.2)	962,149 (16.8)	28,378,195	2,023,922 (100)	1,305,712 (64.5)	475,884 (23.5)	242,326 (12.0)	7.1	64.5	23.5	12.0
1985/1970	19.1 배	33.0 배	22.4 배	21.9 배	25.5 배	31.0 배	127.2 배	164.2 배	70.6 배	197.8 배	4.2 배	1.37 배	0.6 배	1.6 배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6.

表 2 - 6 農家戶當 農業粗收入 및 構成比 變化推移

單位：千원(%)

내용 연도	농업 조수업	미곡	기타 곡류	채소	특작	과수	축산	기타
1970	248 (100.0)	125 (50.4)	40 (16.1)	20 ( 8.1)	8 (3.2)	4 (1.6)	8 ( 3.2)	43 (17.4)
1975	891 (100.0)	488 (54.8)	150 (16.8)	66 ( 7.4)	35 (3.9)	22 (2.5)	66 ( 7.4)	64 ( 7.2)
1980	2,342 (100.0)	1,141 (48.7)	239 (10.2)	379 (16.2)	102 (4.4)	121 (5.2)	284 (12.1)	76 ( 3.2)
1985	5,477 (100.0)	2,628 (48.0)	316 ( 5.8)	950 (17.3)	225 (4.1)	347 (6.3)	932 (17.0)	79 ( 1.5)

資料：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6.

## 第 3 章

# 農家の 政策受容實態

### 1. 基本前提

農家の 政策受容實態에 대한 調査와 分析 및 檢討는 農家の 立場과 視角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에 따라서 農持事業, 새마을 所得增大事業, 複合營農事業 등과 같이 政府立場에서의 分類에 따르지 않고, 韓牛(肉牛) 또는 젖소 入殖支援事業, 草地造成支援事業, 施設園藝 및 特作支援事業 등 支援對象作目이나 支援對象物件을 기준으로 分類했다. 이는 농가입장에서 農業政策受容은 政策支援作目이나 政策支援物件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農家の 政策受容은 農家の 成立이나 지금까지의 成長過程을 바탕으로 해야만 그의 實態나 動機, 成敗要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개개농가가 成立되고 지금까지 成長·發展해온 過程에 있어서 農가가 受容한 政策事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라는 관점에서 農家の 政策受容은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農家の 營農規模나 營農形態, 主力作目 등의 몇가지 또다른 分類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分類基準들은 農家の 成立이나 成長過程과 그때 그때

의 주위여건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畜産部門(韓牛 및 肉牛入殖支援事業, 젖소入殖支援事業, 草地造成支援事業), 施設園藝 및 特作部門(施設상치, 호프, 高冷地菜蔬), 農業機械化 促進事業(個別農家, 機械化營農團), 營農後繼者 育成事業(耕種部門, 酪農部門, 韓牛部門), 收買事業部門(米穀, 옥수수), 그리고 短期 營農資金支援事業으로 區分하였다.

또한 각 事業은 우선 해당정책을 受容한 농가의 成立 및 成長過程과 家族事項, 學歷, 經歷, 營農形態 등의 一般的인 概況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서술한 다음, 해당정책의 受容動機, 受容形態, 受惠內容, 事業의 執行 및 推進過程 등 政策受容實態를 검토·분석하고, 세번째로 해당농가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目標과 자신의 장래에 대한 구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건의사항을 정리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기서 덧붙이고자 한 것은, 本研究가 우리나라 農家의 農業政策受容의 代表的인, 또는 一般的인 實態를 調査·分析하자는 것이 아니라, 18개의 調査農家와 2개의 機械化 營農團이 비록 調査 標本數는 적지만 이러한 농가들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농가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調査農家의 一般概況

### 가. 調査地域 및 調査農家數

本研究를 위해서 農家調査를 實施한 地域과 調査農家數는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山間地域으로 分類한 江原道 橫城郡 屯內面은 〈圖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백산맥의 3大主峰중 하나인 오대산(1,563 m) 남서쪽으로 계방산(1,577 m), → 태기산(1,261 m) → 발교산(998 m)으로 이어지는 山脈과 오대산에서 발왕산(1,458 m) → 가리왕산(1,561 m) → 치악

表 3 - 1 調査地域別 調査農家數

	調 査 地 域 別	農家戶數
山 間 地 域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 둔방리, 현천리, 두원리, 자포리)	8
準 山 間 地 域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양덕리)	5
都 市 近 郊 地 域	충남 대덕군 진잠면 (세동리, 방동리)	5
※機械化營農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 2 리, 화동 1 리)	2 개소

산 (1,288 m) 으로 이어지는 두 山脈의 사이에 길게 형성된 계곡의 초입에 위치한 山間地帶로써, 남한강의 여러 發源地중 하나인 酒泉江이 시작되는 곳이다. 따라서 酒泉江과 그 지류인 石門川(삽교리에서 發源)을 좌우로 논농사가 다른 山間地域보다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結實期인 가을이 짧기 때문에 米質이 좋지 못하여 대체적으로 自家消費, 또는 地域內에서 消費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 外地로 반출되는 농산물은 옥수수과 콩을 중심으로 한 밭작물이었으나, 1970年代 부터는 고냉지채소, 약초, 호프 등의 換金性作物과 肥育牛나 젖소 등의 畜産作目이 所得作目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의 原州-진부 구간이 이 지역을 동서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깊은 山間의 오지나 高冷地라기 보다는 山間地域으로써의 일반적인 特性을 끌고 루 갖추고 있는 地域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準山間地域으로 분류한 忠北 陰城郡 三成面은 태백산맥의 남쪽 主峰인 태백산 (1,560 m) 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소백산 (1,421 m) → 속리산 (1,057 m) 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의 하단·북편에 위치함으로써, 표고가 높지 않고 경사도 심하지 않은 野山들이 많은, 높낮이가 자주 반복되는 地形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圖 3-2).

따라서 이 지역은 표고가 낮고 평탄한 곳은 논농사가, 표고가 높거나 경사진 곳은 밭농사가 행해지며, 논과 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傳統的인 耕種農業地域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이 지역은 農業이외의 産業이 發展할 만 한 特徵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체나 工場이 거의 없는 地域으로써, 현재까지 面所在地로 연결되는 포장도로가 전혀 없는

圖 3 - 1 江原道 橫城郡 屯內面 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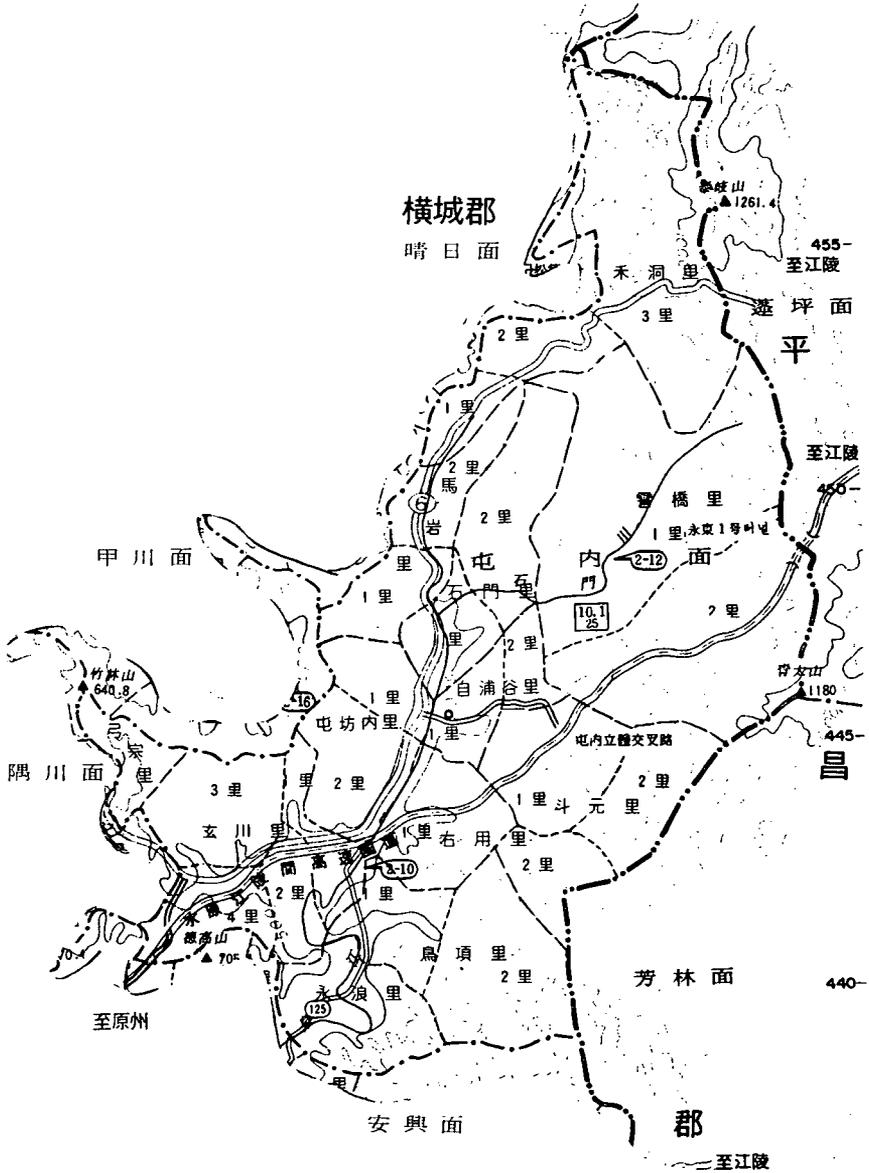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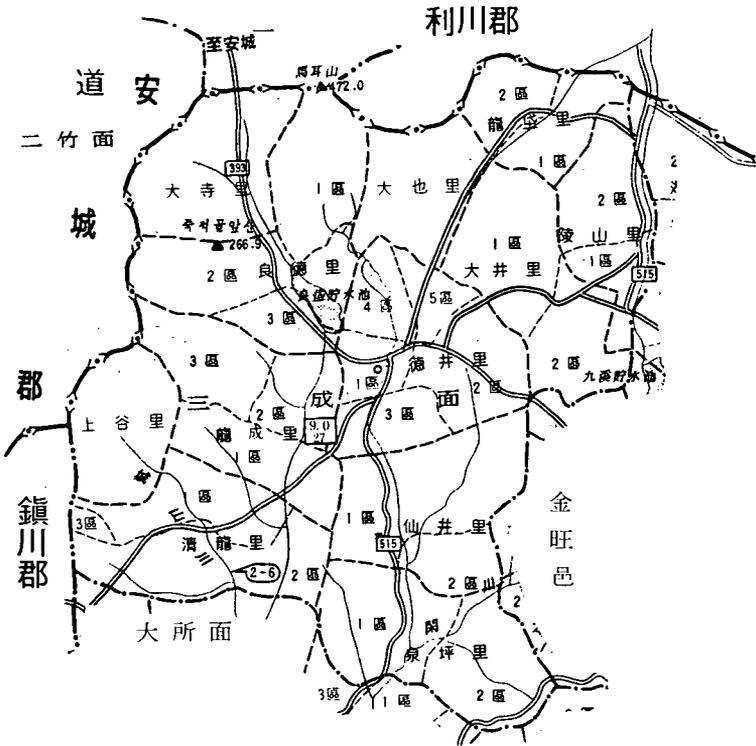


圖 3 - 2 忠北 陰城郡 三成面 位置圖



낙후개발지역에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三成面の 일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中部高速道路가 완공되고, 중부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道路 및 交通事情은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 지역은 고추, 담배, 김장채소가 주로 밭에서 栽培되고, 경사가 다소 심한 地域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중심으로 한 果樹作物이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논농사에 편중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山間地域과 같이 밭농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準山間地域으로서의 特性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都市近郊地域으로 選定한 忠南 大德郡 鎮岑面은 〈圖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田의 南西쪽과 接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거의 大部分이 그런



表 3 - 2 調査農家の 經營特徵別 分布

區 分		地 域 別			
		山 間	準 山 間	都 市 近 郊	計
연령 계 층 별	20代	2	—	—	2
	30代	2	1	—	3
	40代	2	2	5	9
	50代	2	2	—	4
	小 計	8	5	5	18
營農 經 歷 別	5年미만	1	—	—	1
	5~10年	4	1	—	5
	11~20年	2	2	4	8
	21年以上	1	2	1	4
	小 計	8	5	5	18
學 歷 別	國 卒	1	3	2	6
	中 卒	4	1	—	5
	高 卒	2	1	2	5
	(그중農高卒)	(2)	(1)	—	(3)
	大 卒	1	—	1	2
小 計	8	5	5	18	
營形 農成 基形 盤態 別	相 續	6	3	4	13
	(그중 長子)	(1)	(2)	(3)	(6)
	開 拓	1	1	—	2
	相續 + 開拓	1	1	1	3
	小 計	8	5	5	18

으로 1985년도 농업센서스 보고서의 農家經營主의 年齡階層別 分布와 그의 순서가 동일하다.

영농경력별 분포에 있어서는 11~20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5~10년(5명), 21년이상(4명), 5년미만(1명)의 순이고, 學歷別 분포에 있어서는 國卒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中卒과 高卒이 각각 5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專門大 및 그 이상이 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조사농가의 경영주들은 대부분 父母로부터의 相續(13명)이나, 또

는 相續받은 것에 自身들이 모은 것을 합하여 (3명) 自己農事를 시작함으로써 相續에 의한 農家成立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相續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한 13개 농가중에는 長子가 아닌 경우가 7개 농가로써, 이는 우리나라의 相續貫行이 傳統的으로 長子위주였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教育熱은 「큰 아들 만큼은 최대한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또 다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農事가 아닌 다른 職業, 특히 事務職을 택하게 되는 社會的, 經濟的 여건과 固定觀念이 함께 작용하여 많이 배운 큰 아들들 일수록 農事와 떨어져서 生活하게 되는 반면, 큰 아들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운 다른 아들들이 農事를 이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調查農家の 經營主에 대한 性向을 종합해보면, 本研究의 農家調査는 40~50代의 經營主로서 10년 내외 以上の 營農經歷과 中卒 이상의 學歷, 그리고 부모로부터 農事를 이어받은 農家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調查農家の 營農形態 및 所得水準

한편 調查農家が 생산하고 있는 農産物의 構成을 기준으로 그의 營農形態를 살펴보면, 〈表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농가가 2가지 이상의 生産作目群을 복합시킨 形態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18개 조사농가 중 10개 농가가 3가지 作目群을 복합시킨 複合營農形態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가의 입장에서 農事를 계속하기 위한 年間最低期待所得水準을 살펴보면, 最下 400만원대에서 最高 1,000만원대로 農家の 營農規模, 家族事項, 主力作目, 成長段階, 經營主의 나이나 個性 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調查時點인 1987년의 9월말, 즉 거의 作況이나 價格展望이 큰 변동이 없는 시점에서의 '87년도 예상소득수준별 農家分布를 살펴보면 500~600만원대가 가장 많은 것

表 3 - 3 調査農家の 營農形態別, 所得水準別 分布

區 分		地 域 別				
		山 間	準山間	都市近郊	計	
營 農 形 態 別	논농사+밭농사	—	1	—	1	
	밭농사+축산	2	—	—	2	
	논농사+시설원예	—	—	5	5	
	논농사+밭농사+축산	4	2	—	6	
	논농사+밭농사+과수(호프)	2*	1	—	3	
	논농사+과수+축산	—	1	—	1	
小 計		8	5	5	18	
最 低 기 수 대 준 별	400 만원대	3	—	—	3	
	500 ~ 600 만원대	3	—	2	5	
	700 ~ 800 만원대	1	1	2	4	
	1,000 만원대	1	4	1	6	
	小 計	8	5	5	18	
87 예 상 소 득 수 준 별	300 만원대	2	1	1	4	
	400 만원대	1	1	1	3	
	500 ~ 600 만원대	2	2	3	7	
	700 ~ 800 만원대	2	1	—	3	
	1,000 만원대 및 그 이상	1	—	—	1	
小 計		8	5	5	18	
최 저 기 대 소 득 대 비	87 예 상 소 득	기대소득 < 실현소득	3	1	1	5
	기대소득 = 실현소득	—	1	—	1	
	기대소득 > 실현소득	5	3	4	12	
	小 計	8	5	5	18	

\* 호프를 뜻함.

(7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87년도 예상소득과 본인들이 밝힌 最低期待所得과의 관계를 보면 총 18개 조사농가중 6개 농가를 제외한 12개 농가가 87년도 예상소득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저기대 소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主要農政事業別 調査農家の 受容實態

한편 18개 調査農家들이 受容한 바 있는 主要政策事業은 〈表 3-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농가에 따라서 적게는 2가지 (6개 농가), 많게는 5가지 (2개 농가)의 政策事業을 受容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農家들이 受容한 政策事業은 短期營農資金 支援事業(14개 농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個別 農家에 대한 農機械普及 支援事業 (12개 농가), 米穀收買事業(6개 농가) 등의 순이었다.

한편 農家の 政策事業 受容實態는 本章의 第1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支援對象作物이나 物件을 중심으로 畜産分野, 特作分野, 營農後繼者育成 事業에 대해서는 개별농가의 成立 및 成長過程과 해당정책사업의 受容實態, 그리고 이들 농가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目標와 農家の 展望과

表 3 - 4 主要政策事業別 調査農家の 受容現況

地域 및 農家別 政策事業別		A (山 間)								B (準備間)					C (都市近郊)					計	
		1	2	3	4	5	6	7	8	1	2	3	4	5	1	2	3	4	5		
畜産 分 野	韓牛 및 肉牛 入殖			○					○				○		○					4	
	질 소 入殖					○		○												2	
	草地 造成			○		○														2	
特作 分 野	施設 상치														○	○	○	○	○	5	
	호 프			○					○											2	
	高冷地 菜蔬*	○		○																2	
農分 機 械 野	個別 農家	○	○	○	○	○	○			○	○	○	○			○			○	12	
	機械化營農團																			山間 2개소	
營農後繼者育成					○		○	○		○										4	
收事 買業	米 穀*									○	○		○	○		○		○		6	
	옥 수 수*				○	○														2	
營農資金 支援 *		○		○	○		○	○	○	○	○	○	○					○	○	○	14

\* 는 1987年度를 基準했음 (但 米穀收買는 '86年度 基準임).

農政全般에 대한 農家の 見解와 當面課題에 대한 見解 등을 중심으로 調査・檢討했다. 또한 機械化 營農團에 대해서는 그의 組織背景 및 運用 등을 중심으로 했으며, 개별 농가에 대한 農機械普及支援事業과 短期 營農資金支援事業, 그리고 收買事業에 대해서는 이의 農家受容이 비교적 一般化 되어 있기 때문에 農家單位로 파악하지 않고 政策事業의 受容動機, 事業의 推進 및 執行, 受容結果에 대한 農家の 見解 및 満足度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 가. 畜産政策事業

농가를 事業主體로 한 畜産政策事業은 肉牛와 젓소의 入殖支援事業과 草地造成支援事業을 중심으로 1962년부터 '66년 사이에 시행된 「蠶業 및 畜産장려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自立安定農家育成事業(1965~66)」, 「主産團地造成事業(1966~67)」, 「農漁民所得増大特別事業(1968~73)」, 「새마을所得増大事業(1974~81)」,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1981~ )」, 「複合營農事業(1985~ )」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農業政策事業에 항상 포함되어 왔던 事業이다. 그러나 1983/84년의 소 값 下落으로 86년부터는 肉牛入殖이 支援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5개년동안(1982~86) 소入殖(韓牛 및 肉牛)을 內容으로 한 政策事業과 그의 實績을 <表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21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財源別로는 12가지로, 그리고 所管部處別로는 農林水産部, 內務部, 保社部の 3개 政府部處와 農水畜協의 3개 協同組合으로 大別되고 있다.

소入殖支援事業의 融資條件중 利率에 있어서는 年制 최저 5%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에서 최고 15% (82년의 畜協自體事業)로 그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10%이다. 또한 居置 및 償還期間에 있어서도 82년의 畜協自體事業은 貸出期間이 1년에 불과한 반면, 1984년까지 施行되었던 低所得自立支援事業은 5年 居置 5年分割償還으로 事業의 性格에 따라서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5年居置 2年分割償還이 大部分이다.

表 3 - 5 年度別 財源 및 事業別 소 入殖支援實績 1982~ 86

事業 및 財源	所管	1982		1983		1984		1985		融 資 條 件		
		頭 數	金 額	頭 數	金 額	頭 數	金 額	頭 數	金 額	金 利	据置-償還	
		頭	百萬元	頭	百萬元	頭	百萬元	頭	百萬元	%	年	
1. 政策支援資金		117,296	42,384	130,992	100,463	132,846	85,828	94,309	43,970			
○ 畜産振興基金	畜産局	82,479	28,468	114,938	87,362	95,680	59,773	49,940	22,982	10	3-2 (5-2)	
- 價格安定分								49,940	22,982	10	3-2 (5-2)	
- 암송아지入殖			59,742	17,916					(단기성9,940)	(2,982)		
- 專業養畜農家育成			2,018	798	4,045	3,190					10	3-2 (5-2)
- 地方特化事業			3,852	1,800							10	3-2 (5-2)
- 繁殖牛圃地(示範圃地)			13,806	6,487	30,984	25,190	55,800	34,200			10	3-2 (5-2)
- 肉牛代替入殖							26,890	17,568			10	3-2 (5-2)
- 特別支援			3,061	1,107			1,455	1,017			10	3-2 (5-2)
- 複合營農		農政局			16,000	9,600					10	3-2 (5-2)
- 導入肉牛入殖		畜産局			63,909	49,382	11,535	6,388			10	3-2 (5-2)
○ 農業 및 綜合開發資金	農政局	27,500	8,000	8,550	6,824	21,737	13,041	44,369	20,988	10		
- 複合營農						16,786	10,072	44,369	20,988	10	3-2 (5-2)	
- 새마을所得支援		27,500	8,000	8,550	6,824	4,951	2,969			10	1-2 (3-2)	
○ 資特 및 農業開發資金 (低所得自立支援)		1,318	1,415	1,974	1,913	4,604	3,972			10	3-2 (5-5)	
○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5,079	4,200	4,343	3,738	9,607	8,240			5	3-4 (5-4)	
○ 漁村새마을(水協)	水産廳	920	301	1,187	626	1,218	802			9	2-3 (4-3)	
2. 農協自體資金	農 協			47,884	34,291	94,885	59,866	66,133	35,724			
○ 金融農業中期資金				9,410	7,263	16,930	9,834	20,073	12,044	11.5(10)	1-2 (3-2)	
○ 世銀借款資金				507	354	3,296	2,179			12	3-2 (5-2)	
○ 農企業資金				1,093	656	8,547	5,129	6,500	3,900	11.5	2-3 (4-3)	
○ 相互金融資金				36,874	26,018	66,112	42,674	39,560	19,780	13.5-14.5(14.0)	1 (2-1)	
3. 畜協自體資金	畜 協	20,573	14,809							15	1	
4. 새마을誠金等	內務部	(9,980)	5,988	25,077	24,069	27,372	24,993	29,542	25,749	-	3-2 (4-2)	
5. 零細民生業資金	保社部	(1,911)	1,147	1,536	2,032	1,632	2,259	(3,000)	1,500	10	2-3 (4-3)	
合 計		149,760	64,328	205,489	160,855	256,735	172,945	192,981	106,943			

\* 融資條件의 ( ) 안은 1983 ~ '84 年의 延期分입.

'86 年에는 소入殖을 目的으로 한 支援이 全無함.

資料: 農水産部

한편 入殖支援實績은 1984 年의 257 千頭 入殖에 모두 1,729 億원을 支援한 것을 頂點으로 85 年에는 193 千頭 入殖에 1,069 億원 支援으로 줄었으며, 86 年부터는 支援實績이 전혀 없다.

### ① 소(韓牛 및 肉牛)入殖支援事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 入殖支援事業은 政府나 農水畜協의 立場에서 여러가지 각각 다른 事業名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受容한 農가의 立場에서는 자신들이 수용한 정책의 정확한 명칭이나 해당정책에 대한 政策意圖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入殖했었느냐?, 즉 어떤 物件에 대한 政策이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農가들은 구체적인 정책명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現實이다.

또한 이러한 政策事業의 受容은 本章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農가의 成立 및 成長過程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18 개 조사 農가중에서 소(韓牛 및 肉牛)入殖支援事業을 受容한 바 있는 4 개 農가(表 3-4 참조)의 政策事業受容實態에 대해서 農家別로 살펴보고자 한다.

### ▣ A-3 農家の 경우(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農가는 부부가 農事를 짓고, 大學에 다니는 아들이(3 學年) 서울에서 하숙을 하고 있고, 3 年전인 84 年부터는 농사일을 거들기도 하고, 동네 이웃집들의 일도 하면서 두 딸(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임)을 거느린 혼자된 40 代 아주머니가 舊屋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 農가의 경영주는 현재 53 세로써 현재의 위치에서 먼 지방에서 中學校를 卒業했으며, 青年時節에는 肥料會社의 販賣職, 건설회사의 事務職 등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특히 肥料會社에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 농업을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되었었으며, 이때부터 農事를 지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었다고 회고하고 있었다. 그 후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그 때까지 모았던 모든 것을 정리하여 경남지역에서 직접 農事

를 시작했었으나 그해 여름에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서울에 올라와 1평 남짓한 구멍가게를 얻어 연명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동안 꾸준히 저축한 결과 제법 규모가 있는 여관을 買入,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었으나, 밤에는 뜬 눈으로 지내기가 일수였고, 낮에 자는 잠은 불규칙적이기 마련이었고 식사도 불규칙적이게 되어 職業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신경성 위장장애를 얻었으며, 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했었다. 그래서 이웃의 복덕방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며, 맑은 공기속에서 자유스럽게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되었었고, 그 복덕방의 주선으로 1977년, 당시 나이 43세때 현재의 위치에는 3,000 坪과 밭 7,000 坪, 林野 2 ha와 韓牛 .2頭, 등을 賣入하여 定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각오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은 먹고 살 수 있고, 특히 공기 좋고 물 좋은 이 조용한 산골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것 뿐이었고, 농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두었거나 또는 충분한 농사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주위에서는 「병든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이 산골로 왔구나」라는 식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가능하면 접촉도 하지 않고자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도 풀리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의 관행적인 농사방법을 익히면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보고자 책도 찾아보고, 이것 저것 시험도 해보는 과정에서 남다른 새로운 농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었다.

예를 들면 연중 4월부터 9월까지 반년이 될까말까한 無霜期間이라는 地域的 與件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닐멀칭(혹색)을 이용한 감자와 고냉지 배추의 混作栽培方法으로 1年 2期作과 똑같은 成果를 얻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里長을 맡아야 할 정도로 동네의 신임을 얻게 되었었다.

농사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논농사(3,000 坪)가 이러한 추운 골짜기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부터는 매년 논을 밭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여 작년('86)에 모두 마무리 됨으로써 현재는 논이 전혀 없는 대신에 밭이 7,000 坪에서 1만평으로

늘어났다.

또한 移住해올 때 일괄적으로 買入했던 2 ha의 林野를 效果的으로 활용하고, 山間이라는 地域의 特殊性을 살리기 위해서는 繁殖 및 肥育牛事業이 耕種農業보다는 有利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移住時에 賣入했던 2 마리의 韓牛를 길러본 결과 成果가 좋았을 뿐 아니라 展望도 밝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1982年에는 2 ha의 林野를 모두 林間草地로 造成했었다. 물론 이 때 韓牛는 1979년부터 매년 3~4 마리씩을 매각하면서도 6頭로 늘어나 있었다.

이처럼 82年에 2 ha의 林間草地를 造成한 다음 해인 1983년에는 畜協을 통해서 6頭의 導入肉牛를 入殖하여, 기존의 韓牛 9頭('77年 移住時의 2頭에서 증식된 것으로써, 79년부터 82년까지 4년 동안은 매년 3~4頭씩을 賣却해 왔음)를 합하여 總飼育頭數가 15頭로 增加하게 됨으로써 2 ha의 林間草地와 함께 繁殖肥育牛牧場으로의 自力成長基盤을 갖추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導入牛를 入殖한지 4개월만에 2年前부터 고용해왔던 牧夫(同居)가 아무런 소식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행방을 감추어 버림으로써 혼자서는 15마리의 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버렸었다. 이에 따라 導入肉牛 6頭와 기존의 韓牛 3頭를 포함하여 모두 9頭를 賣却하고 사육두수를 우선 6頭로 크게 줄이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후에는 소값이 下落되고 전망도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85년에는 또다시 3~4頭 水準으로 줄이고 2 ha의 林間草地도 그중 1 ha를 賣却해 버렸다. 그러나 韓牛의 飼育頭數는 3~4마리를 항상 유지함으로써 展望이 좋아질 때 다시 增殖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도 임신중인 2마리를 포함하여 모두 3마리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시 5마리로 늘어나게 된다.

이 농가는 이외에도 1983년에 용자를 받아서 경운기를 구입, 언덕이 많은 山間地域에서 사용하기 알맞도록 트렐러에도 구동장치(일명: 뒷테후)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

## 나) 소(導入肉牛) 入殖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83년에 畜協으로부터 導入肉牛 6頭와 現金 170만원(총 지원자금: 360만원)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年利 10%의 條件으로 融資받았다. 이는 1980년경부터 山間이라는 立地條件과 2ha의 林野를 막연하게 소유만 하고 있을 뿐 전혀 活用하지 못하고 있어서 林間放牧을 통한 肥肉牛牧場으로의 成長을 구상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3년의 導入肉牛 入殖은 실은 그 이전인 1982년에 이미 畜産農家로의 轉環을 위한 제 1 단계 事業으로 이미 自力으로 林間草地 2ha를 造成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後續段階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특히 당시의 導入肉牛 入殖을 위한 畜協融資는 草地基盤을 가진 농가에 우선권을 주었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自力으로 조성한 林間草地는 그 所要資金을 事前에 農協 單位組합을 통해서 申請했었으나 融資는 草地造成이 이미 끝난 후인 83년의 導入肉牛 入殖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받게 됨으로써 한꺼번에 470만원의 現金(草地造成: 300만원+導入肉牛 入殖支援중 現金部分: 170만원)과 導入肉牛 6頭가 이 농가에 들여놓아진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導入肉牛 入殖 4개월만에 牧夫가 없어짐에 따라서 導入肉牛 全量인 6頭를 포함해서 韓牛 3頭 등 모두 9頭的 소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草地造成支援資金 300만원, 導入肉牛 入殖支援資金 360만원, 耕耘機購入支援資金 100만원 등 모두 760만원의 元金과 利子를 모두 청산함으로써 「負債없는 農家」라는 평소의 바램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이 總飼育規模를 15頭에서 6頭로 절반이상 縮少하게 됨으로써 2ha의 林間草地도 일부만 필요하게 되었고, 肥肉이나 繁殖牛事業의 앞으로의 展望도 상당기간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判斷되어 85년에는 그중 1ha를 賣却하게 되었었다. 이로써 山間이라는 特殊性을 바탕으로 한 畜産專門農家로의 成長은 당분간 보류되어 있는 셈이나 언제라도 展望이 다시 밝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3~4頭的 암소는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며, 다만 그동안의 農家所得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만평의 밭농사에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83년의 導入肉牛 入殖支援事業에 대한 受容動機, 受容過程, 事業의 進行過程 등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농가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評價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값이 큰 폭으로 下落하기 직전에 우연히 행방을 감춘 牧夫가 오히려 幸運을 가져다 준 셈이기 때문에 이 농가는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을 수용했던 여러 다른 농가들과는 달리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 붙혔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물론 幸運이 뒷따랐기 때문에 禍를 면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農事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代價를 받을 수 있고, 年間所得도 예를 들면 大企業의 大卒 新入社員의 봉급인 월 30만원, 즉 年間 360만원 정도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自營이기 때문에 自主성과 自律性이 얼마든지 허용되고, 연간 勞動時間에 있어서도 都市의 봉급생활자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대학 3학년(稅務專工)에 재학중인 아들도 졸업후에는 취직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代를 이어 농사를 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나 아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가면 갈수록 農家의 支出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單位面積當 所得의 增大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農地規模를 점차 擴大하여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려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勞動力 需要의 격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機械化가 불가피 하다고 이 농가는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方向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年間所得이 最少限 80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상당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겠으나, 현재의 水準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연간 500만원 정도의 所得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86년도에는 1,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었으며, 금년('87)에도 최소한 750만원 정도의 소득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규모를 두배로 늘리려는 계획은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2~3년 후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農政全般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 할 때도 있다」고 답변했으며,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農政課題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Offen Question) 價格安定과 商人의 興廢에 대한 政府의 規制 및 堅制機能의 強化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邑面單位 農村指導所 支所는 2~3명에 의한 農事技術에 대한 指導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보다는 오히려 農民들이 알아야 할 法과 制度, 行政節次, 融資制度나 그의 事業內容 및 申請節次와 方法, 새로운 政策에 대한 자세한 說明 등을 담당하는 소위 「農民相談所」로 운용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農事技術은 각종 메스미디어의 發達로 상당부분이 이미 一般化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원칙적으로 農家 스스로의 努力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신의 실정이나 여건에 알맞는 비료나 농약, 품종 등은 물론 그의 適定施用량까지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農家들이 갈수록 專門化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 ▣ B-1 農家の 경우(準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작년 2월부터 病中에 계신 아버지(67세)와 작년 여름에 한차례 병을 앓고 나신 어머니를 모시고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7세와 4세의 아들), 모두 6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이 농가의 經營主는 5남매중 3째(次男)로써 누님(42세)은 일찍 출가했었고, 형님(38세)도 현재 서울에서 직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4,000평의 논농사(그중 3,500평은 賃借地)와 500평의 포도원, 그리고 1,800평의 밭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가의 經營主는 國民學校를 마친 후 獨學으로 高入檢定考試에 합격했었으나 學業을 계속하지는 않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고향에 돌아와 21세때('74년)부터 부모의 農事를 거들면서 貨物自動車(2.5톤)로 運輸

\* 附錄의 調査表 참조.

事業(自營)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8년전인 1979년 당시 나이 26세 때(현재 34세)부터는 運輸事業을 정리하고, 그 대신 부친으로부터 농사를 물려 받아 농사에 전념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누님과 형님에 대한 婚事, 出家 및 分家 등 손위의 형제들에 대한 모든 일들은 부친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었으나 畜産學을 專工 卒業한 후, 84년에 結婚, 85년에 유전공학을 工夫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留學을 떠난 동생(男, 31세)과 3년전에 大學을 卒業하고 서울로 出家한 여동생(27세)에 대한 學費, 留學費用, 結婚費用 등은 그의 상당부분을 이농가가 부담했었으며, 이로 인해서 2년전인 85년까지 6년동안은 農土나 營農規模를 늘릴 만한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82년에는 논 700평과 밭 1,000평을 매각해야 했었다.

8년전 부친으로 부터 농사를 물려받을 당시에는(1979년) 논 1,200 坪, 밭 1,000 坪, 포도원 500 坪, 그리고 耕耘機 1대가 있었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82년에 논 700 坪과 밭 1,000 坪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논 500 坪과 포도원 500 坪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에는 農協單位組合의 作目班중 하나인 畜牛會로부터 短期借入資金을 얻어 韓牛(♀) 1마리와 導入肉牛(♂) 2마리를 入殖하여 增殖에 힘쓴 결과 86년 가을에는 모두 20 頭로 늘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增殖은 우선 所有하고 있는 논은 500 坪에 불과했으나 3,500 坪의 賃借地를 얻어 모두 4,000 坪의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500 坪의 포도원이 農家所得에 큰 기여를 해줄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82년에 땅을 팔아서 누적되었던 빚을 청산한 후부터는 형이 취직·분가했고, 여동생도 出家했기 때문에 집안에 큰 돈이 들 일이 없었던 반면, 남동생의 결혼(84년)과 外國留學(85년), 작년의 부모님 治療 및 入院費(400만원 정도) 등의 비용은 형님과 누님, 그리고 본인 등 여러 사람이 서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85년에는 飼育頭數가 많아지면서 飼料購入 등의 運送需要가 증대되었고, 과거부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오던 착정기를 사려는 사람이 있었고(60만원), 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110 만원 (총 250 만원중 140 만원은 割賦) 을 들여 중고세레스(農業用 貨物自動車) 1 대를 구입했었다. 그러나 이 車輛은 현재 약 30 % 정도가 自家需要의 充足에 이용될 뿐, 70 % 정도는 農外所得에 利用되고 있다.

한편 86 년 가을까지 20 마리로 늘어난 繁殖 및 肥育牛는 월동준비를 서두르던 그 해 초겨울에 뜻하지 않은 火災事故로 畜舍가 불타고 소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모두를 도태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하는수없이 1,200 만원을 받고 모든 소를 정리해 버렸었다. 이로써 앞날이 막연하고 失意에 가득 차 있던 차에 그해 겨울인 86 년 12 월에 耕種部分 營農 後續者로 選定됨으로써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85 년에도 營農 後繼者로 申請했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던 탓인지, 이는 더욱 값지고 고맙게 느껴졌었고,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었다.

이를 계기로 소를 정리한 자금 1,200 만원중 840 만원은 飼料代金 등의 크고 작은 債務들을 정리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60 만원과 營農 後繼者 支援資金 720 만원, 그리고 農協으로 부터의 一般貸出 300 만원을 얻어 모두 1,380 만원을 마련하여 2,300 평 (坪當 6,000 원) 의 밭을 매입했으며, 여기에 포도원을 造成하기 시작했다. 금년 봄에는 묘목만을 심었고(1,200 주 × 500 원/주), 내년 봄까지는 콘크리트 지주와 철사망을 설치해야 하며, 여기에는 약 400 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포도원을 造成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이 지역의 主作目인 고추는 連作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價格도 회복이 심해서 위험이 뒤따르고, 참깨는 大規模 栽培에 限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금까지 가꾸어 온 500 평의 포도원은 그동안의 所得效果가 매우 좋았었을 뿐 아니라, 근래에 들어서는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도는 식재후 3~4 년만 기다리면 所得을 얻을 수 있는 速成樹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농가는 현재 논농사 4,000 평 (그중 3,500 평은 賃借地), 포도원 2,800

평(그중 2,300 평은 初年樹), 경운기와 세레스 각 1 대씩을 갖춘 果樹農家로 탈바꿈해 있으며, 금년에는 논농사에서 250 만원 정도, 포도원(500 坪)에서 200 만원 정도, 밭농사(2,300 평 : 고추+참깨)에서 90 만원 정도로 農家所得은 모두 510 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나) 소(韓牛 및 導入肉牛) 入殖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農協 單位組合의 作目班중 하나인 「畜牛會」로부터 1983 년에 180 만원을 貸出期間 1年, 年利 14.5%의 融資條件으로 韓牛(우) 1 頭와 홀스타인(♂) 2 頭를 購入했었다.

이는 82년에 1,200 평의 논이 500 坪으로 줄어들고, 1,000 평의 밭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논 500 평과 포도원 500 만이 남게 되었고, 이를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을 지키면서 農事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農土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지을 수 있는 農事, 즉 畜産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비포장도로 뿐인 三成面에서의 酪農은 우유의 納品 등이 不利할 뿐 아니라, 주위에 酪農을 하는 農家도 없었고, 또 농가 자신도 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으나 繁殖이나 肥育牛에는 다소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후 84년에는 180 만원의 貸出資金을 約定대로 償還했으며, 기회있는 대로 큰 소를 팔아 송아지를 買入하기도 하는 등 꾸준한 增殖을 계속하여 86년 가을에는 모두 20 頭로 늘어남으로써 本格的인 繁殖·肥育牛 專門農家로 成長할 수 있는 基盤을 갖추게 되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불의의 火災로 인해서 20 頭 모두를 도태·賣却하지 않을 수 없었었다. 물론 그로부터 불과 2 개월만에 耕種部分 營農後繼者로 選定됨으로써 再起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었으나, 이 농가는 이 계기를 耕種部分도, 畜産部分도 아닌 果樹部分(포도)에로의 轉換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앞으로 기존의 500 평과 새로 조성된 2,300 평의 포도원에서 本格的인 收穫이 시작될 3~4年 후 부터는 포도원에서만도 年間 1,000 만원~1,400 만원 정도의 所得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소入殖支援資金을 바탕으로 3年만에 繁殖·肥育牛 專門農家로의 成長基盤을 마련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도중에서 포기하게

됨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 농가는 말하고 있다. 물론 그중 일부를 전져냈고, 여기에 營農後繼者 資금을 더해서 果樹農家로 전환·재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180 만원의 소入殖資金은 자신의 成長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농가는 자신과 같이 소入殖事業에서의 失敗를 營農後繼者育成事業으로 만회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만 주위의 많은 농가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이 농가는 앞으로 당분간 經營規模나 農地規模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所得作目的 導入을 구상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2,800 명의 포도원으로부터 기대되는 1,000 ~ 1,400 만원의 年間所得을 바탕으로 우선 生活水準의 向上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3,500 명의 賃借地(논)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自家消費의 充足을 위한 最少限의 논농사(1,000 평 미만)와 밭농사(300 평 정도) 규모로 조정해나가고자 하고 있으나, 이것은 포도가 본격적으로 收穫되기 시작할 3 ~ 4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한다.

이 농가는 農事란 열심히 노력하고 궁리하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學識이나 知識, 經歷이나 學歷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職業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農事に 專念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2세인 자식들이 7살과 4살로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일구어 놓은 農事를 이어 받아 줄 것인지, 또는 代를 잇도록 하겠다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農政은 전반적으로 「민고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政府의 統計나 이를 바탕으로 한 豫測이나 展望, 그리고 政策들이 아직은 不正確하기 때문에 빗나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고 믿기 때문이며, 특히 이는 당장 改善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農政課題는 농산물 流通이 가능한 한 生産農家쪽에 有利하도록 大都市의 都賣市場보다는 農村의 產地市場을 活性化, 近代化 시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農産物の 加工 등에 있어서도 都市의 商業資本보다는 農家들의 所得領域을 保護한다는 차원에서 單位組合이나 農民團體들이 地域實情에 알맞는 事業에 참여할 수 있도록 育成·支援해 줌으로써 農家の 經濟活動領域을 최대한으로 保護·擴大하기 위한 政策의 開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히 増産을 통한 農家所得의 増大가 限界點에 가까워지고 있고, 農外所得의 増大를 위한 農民들의 農外就業이 자칫 농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都市資本의 肥大에 따라서 農家の 所得領域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또한 農家所得의 増大可能性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國民全體的으로는 生活水準이 높아지게 되어 農家の 支出負擔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농가의 支出負擔중 비교적 그 비중이 큰 의료비와 학자금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진의하고 있다.

### ▣ B-3 農家の 경우(準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30년전인 1957년, 당시 나이 27세때(현재 57세, 國卒) 집안의 외아들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논 2,000평과 밭 1,000평을 물려 받아 57세가 된 지금까지 농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子女는 3男2女를 두고 있다. 현재 큰아들(32세)은 서울에서 高等學校를 졸업한 후 직장(서울)에 나가고 있으며, 4년전인 83년에 結婚을 시켰으며, 2년전인 85년에는 큰 딸(30세)을 出家시켰고, 둘째와 셋째 아들(29세, 27세), 그리고 막내딸(24세)은 아직 未婚이지만, 셋째 아들만이 얼마전에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는 3식구만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둘째 아들은 중학교까지,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모두 고등학교까지 밖에는 가르치지 못했으나 독자인 자신으로서

는 되도록이면 많은 자식들을 갖고 싶어 했고, 비록 남들처럼 충분히 가르치지지는 못했으나 모두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있으며, 특히 논 1,300평과 밭 1,000 평만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까지 만이라도 건강하고 건실하게 가르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2,000 평의 논이 1,300 평으로 줄어든 것은, 15 년전인 1972 년 (당시 42 세) 에 몸이 허약해져서 입원을 했어야 했고, 이에 따라 농사도 소홀해져서 소득도 시원치 못하게 되어, 학비 마련도 어렵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논 700 평을 매각하여 고비를 넘겼었기 때문이다. 물론 농사가 잘되면 그 논을 다시 사들이려고 했었으나 아직까지도 이 땅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어 先親께 큰 죄를 지고 있으며,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살아 있는 한, 꼭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고 다짐하고 있으나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1978 년경에 정부로부터 송아지 入殖支援資金으로 20 만원을 융자 받아 송아지 한마리를 구입하여 (융자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그 이듬해엔가 이상없이 상환했었다고 함) 지금까지 매년 송아지나 큰 소 한마리 씩을 내다 팔 수 있었고 지금도 소 한마리는 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들이 차례로 농사를 거들면서 부터는 소보다는 耕耘機로 농사를 짓고자 하여 84 년에 융자를 받아 경운기를 구입하면서부터는 소는 농사일에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농가는 논 1,300 평과 밭 1,000 평 (고추, 참깨 등), 그리고 소(또는 송아지) 한마리씩으로부터 매년 400 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어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나) 소 (韓牛 송아지) 入殖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78 년경에 송아지 入殖支援資金을 받아서 송아지 한마리를 入殖한 바, 이는 새마을 所得増大事業의 일환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농가는 처음부터 2,000 평의 논농사와 1,000 평의 밭농사를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해오던 중, 72 년에 심하게 앓고 난 후 부터는 논이 1,300 평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도저히 소 한마리 없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다가

마침 정부에서 자금을 支援해 준다고 해서, 이를 신청, 20 만원을 융자받아 송아지 한마리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 후부터는 매년 송아지나 큰 소 한마리씩을 그 때 그 때의 자금소요에 따라서 내다 팔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그 때 송아지를 들여오지 않았었다면 농사를 짓기도 어려웠었을 뿐 아니라 논농사와 밭농사에 아무리 열심히 매달렸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의 학비는 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했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事業은 지금까지 自身이 버티어 올 수 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이제는 몸도 노쇠해지고 마음도 늙었지만, 농사의 展望도 매우 흐리기 때문에 현재의 農事規模로는 成長이나 再起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며, 차라리 아이들을 따라서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지만, 독자인 본인으로써 先親과 祖上들께 대한 면목이 없어서 고향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 재대하고 집에서 농사를 거들고 있는 세째 아들은 농사를 이어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農土를 다소라도 늘려서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아직 미혼인 2男1女の 婚事나 分家問題 등을 생각하면 결국은 본인의 代에서 農事도 끝나게 되고, 고향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서글퍼 지기도 한다고 말한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지금까지 30 년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자신이 무능하고 재주가 없어서 크게 成長하지 못했을 뿐, 政府의 全般的인 農業政策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야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建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農地購入資金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 C-1 農家の 경우(都市近郊)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18 년전인 1969 년 당시 나이 27 세때(현재 45 세) 집안의 네째 아들로써 부친으로부터 논 800 평, 밭 600 평, 임야 22,800 평, 그

리고 소 한마리와 빗 200 만원을 물려 받아 지금까지 줄 곧 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

이 농가의 經營主는 商業高等學校를 卒業하고 68 년에 인근의 3 개 里를 묶은 「信用協同組合」이 생기면서부터 조합일을 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으며, 얼마전 부터는 組合購販場을 直接 맡아서 運營해오고 있다. 또한 이 농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써 동네 教會의 집사일도 보고 있는 비교적 農外活動이 많은 편에 속한다.

위로는 형님들이 계시지만 두 형님은 公務員으로 일찍부터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고, 한 형님은 일찌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4 재 아들인 본인이 자연스럽게 농사를 물려받게 되었으나 마을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農土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1973 년과 74 년에 비닐하우스 300 평을 논에 設置한 것이 유일한 변화에 해당된다.

1969 년 農事를 처음 시작하면서 教會가 중심이 되어 所得作目으로 普及을 支援하던 養鷄(산란용)를 導入, 400 首를 1974 년까지 6 년동안 계속해오다가, 75 년부터는 收益性이 악화되어 중단했고, 1973 년에는 기독교 단체가 주축이 되어 資金融資까지 해가며 보급하던 비닐하우스 100 평을 設置했고, 뒤이어 74 년에는 政府로 부터 融資를 받아서 200 평의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設置하였었다.

또한 1985 년에는 양봉 1 통을 들여와서 86 년까지 2 년동안에 8 통으로 늘렸으나 무리한 分蜂으로 벌들이 약해져서 금년에는 오히려 6 통으로 줄여서 蝨蜂해 놓았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韓牛 한마리는 매년 그로부터 증식된 송아지나 큰 소 한마리씩을 내다 팔 수 있었으나 작년에 지난 20 년 가까이 동안 누적되어 왔던 600 만원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팔아 버리고 지금은 기르고 있지 않다. 물론 작년의 負債清算은 1979 년부터 8 년동안 계속해 온 마을 쌀계(米穀契)를 작년에 타게 되었기 때문이고, 소를 판 것은 부족한 일부분을 마저 充當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농가는 1985 년 2 월에 소 入殖資金 90 만원(2 마리분)을 支援받았으나 이는 그 이전부터 기르고 있던 소에 대한 것이었다.

이 농가는 信用協同組合으로부터 月 16 만원의 月給과 購販場 運營收入 月 10 만원 정도로 年間 약 310 만원의 農外所得을 얻고 있으며, 300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年間 약 250 만원(상치), 500 평의 논농사에서 自家食糧으로 약 50 만원 상당의 쌀을 收穫함으로써 연간 600 만원 정도의 所得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의 所得水準이면 두남매(女: 13세, 男: 10세)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최소한 연간 800 만원 정도의 소득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耕地規模를 擴大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 때문에 새로운 所得作目を 開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나) 소(韓牛) 入殖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85년 2월에 農協 單位組合으로 부터 韓牛入殖支援資金 90 만원을 2年居置 3年分割償還 年利 10%의 條件으로 融資 받았으나, 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는 69년 이후부터, 즉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소 한마리를 시작으로 항상 1~2마리를 사육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融資 이전에 이미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1986년 초에 이 소 두마리를 95 만원에 매각했으나, 融資는 償還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해 두고 있는 바, 이는 우선 償還期間이 남아있고 利子도 유리해서 서둘러 갚아야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政府가 도와준 것인데,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당장 되갚아 버리는 것도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예금통장에는 현재 200 만원 정도가 저금되어 있으나, 사람이 살다보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의료보험도 없이 아무런 對策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몇몇하고 정당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해 할 말은 없으나, 이로 인해서 부친 때부터 20여년 동안이나 누적되어 오기만 했던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이 농가는 農事는 萬事의 根源이며, 農心이 곧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農事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농사는 열심히 노력하면 절대로 굶지는 않도록 하늘이 보살피 주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사만은 꼭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農心이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고 싶으며, 이제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모든 빚을 청산했고, 오히려 200 만원 정도의 예금고를 갖게 되었으니 앞으로 4~5년 후 부터는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1973/74년부터 지금까지 근 14년동안이나 農家所得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비닐하우스 상치栽培가 앞으로 과연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과, 이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所得作目を 開發해 내야 할 단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이 서지 않고 있어서 앞날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한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특히 지금까지의 農政은 일부 先進 獨농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각고 끝에 開發한 것들을 擴散시키고 畝을 造成하는 데에 치중하여 結果적으로 過剩生産을 유도하게 되어 農産物 價格의 下落이라는 都市消費者에 대한 혜택과 농가에 대한 피해를 조장해 온 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農政은 「민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농가가 각고 끝에 開發한 것을 弘報·擴散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政府 스스로가 開發해 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農産物 購入에 대한 都市消費者들의 支出負擔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農家の 農業所得의 增大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農産物 價格은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引上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젓소 入殖支援事業

### ▣ A-5 農家の 경우(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12년전인 1975년, 당시 나이 21세때 (현재 33세) 5형제 중 막내로 원주에 있는 부친의 4,000평자리 과수원 (사과와 배)을 돌보면서 자신의 몫으로 韓牛 2頭와 젓소 2頭를 飼育하면서부터 農事를 짓기 시작하였다.

형님들은 모두 社會에 進出하고, 누님들도 出家하였으나 자신은 어려서 곱추병을 앓게 되어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農業高等學校를 卒業하여 農事를 짓고자 하였다. 1975년에 자신의 몫으로 韓牛 2마리를, 76년에는 젓소 2마리를 추가로 들여 왔었고, 그로부터 韓牛는 增殖되는 대로 팔고 그 대신 젓소를 賣入하여 늘려나감으로써 4년후인 1979년에는 韓牛는 2頭로 변화가 없는 대신에 젓소는 12頭로 늘어남에 따라서 草地의 確保가 불가피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81년에는 부모로부터의 相續形式으로 1,500만원을 支援받고, 젓소 12頭중 6頭와 韓牛 2頭를 팔아서 현재의 位置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밭 10,000평 (坪當 1,000원)과 논 1,500평 (坪當 2,650원)을 賣入하고, 500만원을 들여서 젓소 50頭分の 100坪짜리 畜舍 및 倉庫를 新築하여 나머지 젓소 6마리를 가지고 移住하여, 새로운 각오로 酪農을 시작하였다. 그 이듬해인 82년에는 몸이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용자를 얻어 경운기를 사들였었고, 이 融資는 이 농가에 있어서 최초의 負債로 기록된다. 그 후 같은 해인 82년 겨울에는 형님으로부터 350만원을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하고 있음) 草地로 造成할 林野 10,000坪을 매입했고, 그 다음해인 '83년에 그 임야중 3ha를 草地로 造成하였다.

또한 그 다음해인 84년에는 畜協을 통해서 용자를 받아 젓소 5頭를 導入했고, 85년에는 형님 소유인 林野에 4ha의 草地를, 그리고 86년도 형님 소유의 林野에 畜協融資를 받아서 5ha의 草地를 造成함으로써

1982년부터 4년 동안에 12 ha의 草地造成事業을 일단 마무리 지었었다.

이와 같이 81년에 移住해와서 86년까지 7년동안 草地造成을 위한 投資를 계속해 옴으로써 6마리의 젖소와 5마리의 추가도입을 합한 11마리 중 유방염으로 도태된 1마리를 제외한 10마리로부터 최소한 40~50마리로 增殖되었어야 하지만, 繁殖되기가 바쁘게 資金調達을 위해서 매각되어야 했었기 때문에 87년 현재 모두 12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84년에는 착유기, 벗잎절단기 등의 酪農裝備를 購入하기 위하여 畜協으로부터 補助(40%)를 받기도 했었고, 85년에는 管理機(自負擔 80만원)를 구입하기도 했고, 금년 겨울에는 트랙터를 購入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85년도에는 집앞에 붙어 있는 밭 500평을 매입함으로써 젖소를 제외하고는 牧場으로써의 配置計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틀을 거의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移住에서부터 지금까지의 7년동안 이 投資活動으로 一貫되어 왔었기 때문에 83년에 林野를 매입하기 위해서 형님으로부터 빌려온 350만원 외에도 農協과 畜協에 모두 2,000만원에 이르는 負債가 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負擔해야 하는 利子和 元金の 分割償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매년 繁殖되는 송아지의 大部分을 팔아야 한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나, 다행히도 私債는 일체 쓰지 않아 도 되었었고, 이는 형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큰 投資事業이 이제 끝났고, 특히 草地造成에 몰두해야 했던 노력들을 발농사(10,500평)와 논농사(1,500평)로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젖소관리도 과거보다는 철저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負債도 '86년말의 2,000만원을 고비로 금년부터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금년 가을에는 10,000평의 옥수수 농사로 4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송아지의 대부분이 目標飼育頭數인 50頭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농가는 그러나 불편한 신체조건 때문에 41세의 혼자 살고 있는 農畝를 81년부터 즐곤 1년에 쌀 10가마씩을 지불하면서 고용해 왔었으나 그 사람이 뜻하지 않게 금년 겨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새 사람

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은 부부가 7살 난 딸(유치원)과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 농가는 12마리의 젖소로 부터 매년 우유 납품으로 200만원 정도, 송아지 매각(7頭)으로 200만원, 그리고 발농사에서 100만원 정도로 모두 500만원의 연간소득을 얻었으나, 금년에는 발농사에서 300~400만원의 소득을 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800~9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 나) 젖소 入殖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農家は 1984년에 畜協을 통해서 導入 젖소 5마리를 入殖한 바, 이는 3年居置 2年分割償還, 年利 10%의 條件으로 全體入殖所要資金 1,100만원(1頭當 220만원)중 80%에 해당되는 880만원을 용자로 나머지 220만원은 自負擔로 承擔했었다. 또한 5頭的 젖소를 導入할 당시에 이미 6마리의 젖소를 飼育中에 있었으며, 3ha의 草地와 50頭分の 100평 짜리 畜舎도 갖추어진 상태였었다.

따라서 젖소 5頭的의 추가적인 入殖은 낙농에 뜻을 두고 현재의 位置에 移住, 젖소 50頭를 目標로 한 事業進行의 한 過程이었다고 하겠다. 5頭的의 젖소 入殖으로 모두 11頭로 사육두수가 늘었었으나, 그 중 한마리는 유방염으로 얼마되지 않아 도태시켰고, 다른 한마리는 장거리 輸送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서 임신중 유산됨으로써 그의 出發이 순조롭지는 못했었으나 6頭的의 과거 규모보다는 두배에 가까운 10마리로 늘어남에 따라서 83년에 造成이 끝난 3ha의 草地와 함께 移住 당시보다는 成長된 수준에서 새 출발하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85년과 86년에 다시금 草地造成에 着手함으로써 投資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投資財源의 調達을 위해서 사육두수를 거의 늘릴 수 없게 되어 83년의 젖소 10마리가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겨우 2마리가 늘어난 12마리에 그치게 되었다.

물론 젖소 入殖支援事業만을 놓고 본다면, 酪農農家로서의 成長基盤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 다만 經營戰略 또는 成長戰略面에서 볼 때 「先젖소增殖, 後草地基盤造成」,

「先草地基盤造成, 後젓소增殖」, 그리고 「젓소增殖과 草地基盤造成的 同時推進」이라는 3 가지 중에서 「先草地基盤造成, 後젓소增殖」의 戰略을 택함으로써 投資財源에 대한 調達費用(利子)을 필요이상으로 감수해야 했고, 이로써 항상 農家에 資金이 딸리게 되어 매우 어렵게 生活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잘못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물론 1986 년까지 50 頭의 젓소를 수용할 수 있는 畜舍, 12 ha의 草地, 10,500 평의 밭, 1,500 평의 논이 갖추어져 있고, 젓소 12 마리에서 얻어지는 所得만으로도 家計는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젓소를 늘려 나가면서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보며, 이제는 머지 않아 酪農農家로써의 위치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이 농가는 비록 몸은 불구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꼭 酪農으로 成功해 보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젓소 50 頭의 일차적인 目標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酪農業에 대한 앞으로의 展望에 대해서는 81년에 이곳으로 移住해 온 이래 지금까지 무척이나 바빠 뛰어야 했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탓으로 아무 것도 말할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따라서 農政全般에 대해서도 이 농가는 「우선 내 앞을 가려 나가기가 바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다만 農産物의 價格安定은 현재로써 시급한 農政課題일 것으로 생각되며,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農産物의 輸入規制를 완화한 만큼 營農資材의 輸入規制도 함께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國內의 生産業體들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地形과 目的, 作目に 알맞는 農機械를 적극적으로 開發하고, 品質을 向上시키면서도 저렴한 價格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外國의 業體들과 競爭을 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특히 農民들은 國際農産物 市場과 競爭해야하는 반면에 農機械生産業體들은 政府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農民들은 자신들이 원하

는 농기계라기 보다는 農機械生産業體들이 만들어 주는 것만을 사서 써야 하는 등 매우 不公平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 농가의 主張이다.

### ▣ A-7 農家の 경우(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經營主가 아직 24세의 未婚으로 독립된 家庭을 이루고 있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生活하고 있지만, 農事는 부모에 의하지 않고 자신에 의해서 經營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70세의 高령이신 부친은 과거에 專賣事業관련 公務員으로 근무하던 중 현재의 位置에 牧場을 세우고 定着했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15~16年前에 牧場을 정리하고 面所在地에서 自營業(宿泊業)을 하고 있다. 經營主 자신은 7남매(형: 27세, 누님 4, 여동생 1) 중 6째로 부친이 牧場을 하실 때 어린 마음이긴 하였으나 酪農으로 成功해 보겠다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高等學校를 卒業하고 畜産專門大學에 進學하여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으며, 在學中에도 주로 自營業에 대해서 重點적으로 공부했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84년에 귀향하여 85년에 酪農部分 營農後繼者로 選拔되었었다. 700만원의 營農後繼者 育成支援資金을 받아서 우선 牛舍를 지었고, 86년 2월에는 젖소 송아지 7마리를 入殖하여, 금년 겨울(87년)에 첫 송아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착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농가는 지금까지의 모든 生活에 대한 財政的 부담을 부모에 의존해 오고 있으며, 부친은 자신의 경험이나 앞으로의 展望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렸으나 자식이 기어히 하겠다고만 고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미 공부도 했고, 계획도 나름대로는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다고 한다.

이 영농후계자는 현재 부친이 소유해 온 논 1,200평과 밭 2,000평으로 1985년부터 自營을 시작한 셈이며, 85년에 우선 100만원을 들여서 牛舍를 신축했고, 86년 2월에 젖소 송아지 7頭를 들여왔으며, 그 중 6頭

가 금년 말에 분만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젖소가 모두 13頭가 되며, 또 내년 초부터는 6頭로부터 착유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88년부터는 收入이 생기게 되어 차츰 모든 일이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 나) 젖소入殖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酪農部分 營農後繼者로 85년에 選拔되어 86年 2월에 700만원을 지원받아서 100만원을 들여 牛舍 1棟과 일부 酪農器具를 구입했으며, 牛舍를 짓고 난 후에 490만원을 들여 젖소 송아지 7頭(頭當 70만원)를 사들였으나 그 중 1마리가 진드기에 의해 병들게 되어 이의 치료비가 100만원 가까이 들게 됨으로써 송아지 값보다 더 들게 된 셈이 되었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700만원의 融資額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가까스로 매듭지어 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불행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酪農을 시작하기 위해서 營農後繼者가 되었을 당시의 計劃은 自立經營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착유젖소 20頭(우유 20kg × 20頭 × 30日 = 12,000kg/월, 조 수입 330원/kg × 12,000kg/월 = 396만원/월)와 후보 송아지 10頭 등 총 30頭的 規模를 갖추기 위해서 基盤造成 段階 1年, 增殖 및 擴充段階 3年으로 모두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우선 그 당시의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싼 편이었고, 또한 젖소 구입 이외에도 牛舍, 酪農機械類 등과 다소간의 飼育費(진료비, 사료비 등)까지를 支援資金의 범위내에서 充當하겠다는 생각에서 生後 2個月 밖에 되지 않은 송아지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86년까지 계획했던 基盤造成이 87년까지 걸리게 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進行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은 더 지나야 만이 自立目標로 設定한 30頭를 確保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고 한다.

한편 지난 23개월 동안 飼料費와 防段費 등은 모두 650만원(월평균 28.3만원)이 소요된 셈이나, 부모로부터의 支援, 營農資金, 外上購入(飼料費) 등으로 充當되어 왔다. 또한 금년 말까지는 착유기, 냉각기, 우유통 등의 착유관련 농기구의 구입에 130만원 정도가 所要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畜協으로부터의 融資로 충당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유의 納品이

現在 制限되어 있기는 하지만, 營農後繼者育成事業이라는 政策支援事業의 성격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농가는 營農後繼者育成資金을 支援받아 酪農의 뜻을 實現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政策的인 資金支援이 自立水準이나 또는 어떤 일정한 水準으로 成長할 때까지 持續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支援資金의 規模에 있어서도 自立 내지는 最少限의 수준까지의 成長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이 농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총 사육두수 30頭 (착유 적소 20頭, 후보 송아지 10頭)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게 되는 3년 후부터는 年間 최소 1,000만원, 최대 2,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유의 品質을 油脂肪 含量 3.2%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우유의 納품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급사료 기반을 확충하여 사료자급율을 70%까지 높여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戰略方向과 目標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농가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자신에 차있고 구체적인 戰略方向과 目標을 設定하는 등, 낙농을 전공한 젊은이다운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아직은 영농경력은 얼마되지 않고 자기자신의 일이 더 급하다 보니 특별한 見解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政府가 원하는 農産物은 지금까지 거의 예외없이 增産 → 과잉생산 → 가격하락 → 농사수지 악화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農家は 많은 돈을 들여서 펼치는 주택, 도로, 통신분야 등의 여러 가지 政府事業이 주로 도시민이나 都市의 發展을 위한 것이고, 農民・農村에 대해서는 그저 참고 기다리면서 차례가 돌아올 것이라는 弘報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農民들은 항상 열등감에 젖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 3 草地造成支援事業

#### ▣ A-3 農家の 경우(山間)

이 농가는 소 入殖支援事業의 A-3 農家와 同一하기 때문에 草地造成支援事業의 受容實態만을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A-3 農家와 同一함).

나) 草地造成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가 草地造成을 위해서 農協에 融資를 신청한 것은 1982년이었으나 融資를 받은 것은 82년에 이미 이 농가의 自力으로 林間草地进行을 造成하고 난 후인 83년으로, 畜協으로부터 導入 肉牛入殖支援資金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

이 농가는 2ha의 林間草地进行을 造成한 바, 이는 우선 집이 자리잡고 있는 2ha의 林野를 所有만 하고 있을 뿐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山間地域이라는 特殊性을 고려해 볼 때 繁殖 및 肥肉牛 事業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有利하고, 지난 4년동안에도(1979년 이후) 계속해서 소를 길러 왔기 때문에 경험도 쌓였고, 그동안의 所得效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으며, 이에 이 농가는 앞으로 繁殖 및 肥育牛 專門農家로 成長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그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특히 飼育頭數가 늘어나게 되면 飼料需要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자신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풀을 베어다 먹이기 어려워지게 되지만 林間草地进行이 있으면 1년중 7~8개월(4월부터 11월 초까지)을 放牧(林間巡回放牧)으로 대체해 나갈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草地进行을 造成하고자 했던 82년에 農協에 草地造成支援資金을 申請했으나, 資金融資는 83년 4월에야 2년거치 3년상환, 年利 10%의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 資金은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었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牧夫가 行방불명되어 15마리의 소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韓牛 6頭를 제외하고는 賣却하여 이 賣却代金과 融資를 받아서 쓰지 않고 있던 草地造成資金을 합하여

畜協의 導入 肉牛入殖資金과 農協 單位組合의 草地造成資金은 물론 耕耘機 購入資金 등의 모든 農畜協으로부터의 融資를 앞당겨 償還했었다.

한편 이와 같이 15 마리까지 늘었었던 飼育頭數가 6 마리로 줄어들게 되는데다가, 繁殖 및 肥肉牛事業의 收益性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기침체가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85 년부터는 飼育頭數를 3~4 頭 수준으로 다시금 縮少시켰었다. 이로써 2 ha의 林間草地도 모두를 계속해서 가꾸고 관리할 必要가 없어져서 그 중 1 ha를 매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綜合的으로 볼 때 草地造成과 導入牛入殖에 대해서 政府가 꼭 支援해주지 않았었다라도 매년 3~4 頭의 소를 賣却하여 所得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政府의 支援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소값이 下落되기 시작할 무렵에 牧夫가 없어지게 되어 幸運이 뒤따랐고, 이로써 모든 負債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資金들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A-3 농가와 동일함).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A-3 농가와 동일함).

#### ▣ A-5 農家の 경우(山間)

이 농가도 稔소 入殖支援事業의 A-5 농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草地造成 支援事業의 受容實態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생략(稔소 入殖支援事業의 A-5 농가와 동일함).

#### 나) 草地造成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83년에 農協으로부터 1985년과 1986년에는 畜協으로부터 각각 草地造成資金을 지원받음으로써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현금 360만원, 풀씨, 비료, 석회 등 280만원 상당의 資材를 支援받았으며, 그 중 160만원은 補助였으나 480만원은 融資였다.

먼저 83년에 農協을 통해서 支援받은 3ha의 草地造成支援資金은 160만원 상당의 풀씨, 肥料 등의 資材를 補助받았고, 약 160만원 정도의 作業費, 즉 勞賃이나 機械作業費 등은 自負擔으로 承擔함으로써 모두 320만원의 投資費用이 소요된 셈이었다. 이 3ha의 草地는 형님으로부터 350만원을 빌려서 草地를 造成할 目的으로 구입한 10,000평의 林野에 造成한 것으로서, 100두의 專門酪農農家로 成長하기 위한 年次的인 計劃 즉 제 1 단계 : 移住, 제 2 단계 : 畜舍, 草地 등의 酪農基盤造成, 제 3 단계 : 飼育規模의 擴大로 구분된 3단계중 한 過程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85년에는 형님의 소유인 산에 4ha의 草地를 造成한 바, 이는 畜協을 통해서 2년거치 5년분할상환, 年利 10%의 草地造成支援金 230만원을 融資받았었고, 86년에도 또 다른 형님의 산에 5ha의 草地를 造成했고, 이것도 畜協을 통해서 85년도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250만원의 용자를 받았었다. 이러한 85년과 86년의 草地造成支援資金은 모두 480만원이나 이 중 120만원은 풀씨, 비료 등의 資材로, 나머지 360만원은 現金으로 받았으나 그 대부분이 풀씨, 肥料, 석회 등의 추가적인 資材購入에 쓰여졌고 勞賃, 機械作業費 등에 400만원 정도가 自負擔으로 充當되었었다.

이와 같은 3차례에 걸친 草地造成에 所要된 自負擔은 모두 560만원에 이르며, 그의 대부분은 그동안 增殖되었어야 할 100두의 송아지를 매각하여 充當해 왔었다.

한편 畜協의 草地造成支援資金 480만원(85년+86년)과 84년의 100두 入殖支援資金 880만원, 착유기, 벗짚절단기 등에 대한 용자 등 畜協에만 모두 1,500만원 정도의 負債가 있으나, 이에 대한 本格的인 償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利子拂入을 위해서 農協으로부터 그때 그때 一般貸出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500만원 정도의 일반

대출이 누적되어 있어 모두 2,000 만원의 負債가 누적되어 있는 셈이다. 이 농가는 그러나 糞소 入殖支援事業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3年이내에 모든 빚을 갚고, 5年이내에는 糞소를 50頭로 늘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농가는 全般的으로 볼 때 草地造成資金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糞소 50頭의 飼育에 필수적인 草地基盤의 確保에 결정적인 발판과 계기가 되었었다고 한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것은 「先草地基盤造成, 後糞소増殖」의 戰略을 택함으로써 資金調達費用과 더딘 成長速度, 그리고 오랜기간 동안의 資金壓迫으로 인한 最低生活水準의 維持 등, 경우에 따라서는 격지 않았어도 될 어려움들을 감수했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생략(糞소 入殖支援事業의 A-5 농가와 同一합).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생략(糞소 入殖支援事業의 A-5 농가와 동일합).

#### ④ 畜産政策事業의 農家受容實態에 대한 檢討

우선 農家の 政策受容動機는 立地條件에 알맞는 營農構造로의 전환, 耕地規模 擴大의 限界性 극복, 일소(力牛)로의 利用, 農家の 資金不足 解消, 酪農專門農家로의 成長 등으로 政府의 政策意圖와 항상 一致하지는 않으며, 이는 政策受惠對象者의 選定에 상당한 問題點이 內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농가의 政策受容과 관련된 事業計劃이나 投資計劃은 專門家나 專門機關에 의해서 충분한 檢討나 指導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인 바, 이는 최일선의 관련기관들이 政府의 政策推進에 있어서 그의 役割과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가의 政策事業 推進過程을 살펴보면 대체로 初期에는 政府의 政

策意圖에 따르려는 努力이 엿보이지만, 農家內의 與件變化나 市場 등의 外部的 與件的 變化에 대해서는 각각의 農가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對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農가의 立場에서는 專門家나 指導機關으로 부터의 諮門을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外面하고 있으며, 政府의 立場에서도 이러한 與件的 變化에 대한 對應策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상되는 여건변화의 類型에 따른 事前對策이 처음부터 樹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政策支援資金의 受惠는 한편으로는 資産增大를, 다른 한편으로는 負債增加를 가져옴으로써 資産規模는 늘어났지만, 財務構造는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融資에 대한 償還은 약정대로 이행했거나(1개 農가), 또는 서둘러 상환하기도 했으며(1개 農가), 指定되어 있는 事業 이외의 用途로 資金을 轉用한 農가에 있어서도 約定대로의 상환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畜産部門에 대한 政策支援事業을 受容한 農家들은 全般的으로 볼 때 그의 營農資産構造가 畜産部門의 增大쪽으로 바뀌었고, 所得構造도 畜産物 所得의 比重이 增大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이러한 観点에서 본다면, 農가의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는 정부의 畜産振興과 農業所得의 다변화 추구라는 巨視的 政策意圖의 긍정적인 効果라고 評價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政策受惠對象者の 選定과 農家の 事業計劃 樹立에 대한 指導와 諮門은 물론, 政策受容 後 與件變化에 대한 適時適切한 對應을 위한 事後管理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實踐的인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制度的 法的 裝置의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특히 政府立場에서는 事業計劃을 수립할 당시의 與件變化에 대한 展望이 예상을 벗어나게 될 여러가지 경우에 대비한 代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適時適切한 對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나. 施設園藝 및 特作支援事業

### ① 施設園藝

施設園藝는 1920年代에 大田地方에서 기름종이(油紙)를 이용한 保温栽培를 시초로 일부지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60年代부터는 PE 필름이 보급되면서 全國적으로 擴散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政策的인 支援은 1966~67년의 「主産園地造成事業」에서 部分的으로 채택되었었으며, 68년부터의 「農特事業」을 계기로 本格的인 政策支援事業의 한 분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었고, 이는 1974~81년의 「새마을所得増大事業」과 1983

表 3 - 6 年度別 비닐하우스 施設面積推移

年 度 別	비닐하우스施設面積 (ha)
1970	763
1975	1,746
1980	7,142
1981	9,315
1982	10,641
1983	11,718
1984	12,992
1985	16,569
1986	18,822

資料 :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7.

年부터의 「複合營農事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비닐하우스 施設面積은 이러한 政府의 적극적인 支援과 農産物需要의 季節性이 점차 둔화되면서 〈表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 年の 763 ha에서 86 년에는 18,822 ha로 크게 증대되었다.

施設園藝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은 初創期에 해당되는 73 年 까지는 施設資材의 政府補助에 의한 供給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으나, 74 年 부터는 政府補助를 2~3 年 居置 3~4 年 分割償還, 年利 10%의 融資로 전환했으며, 設置費用중 勞力費 部分은 自負擔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C-1. 農家の 경우(都市近郊)

이 농가는 소 入殖支援事業의 C-1 농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受容實態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C-1 농가와 동일함).

#### 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74 년에 새마을所得増大事業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設置支援資金 80 만원(40 만원/100 坪×200 坪)을 3 年거치 5 年분할상환, 年利 10%의 조건으로 융자받아 200 坪의 철제고정식 비닐하우스를 設置했었다.

그러나 이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처음으로 設置한 것은 그로부터 1 年전인 73 년에 기독교 농민단체를 통해서 였다. 기독교 농민단체는 이 地域이 大田과 인접한 都市近郊라는 잇점을 活用하여 農家所得을 増大시킬 목적으로 68/69 年경부터 營農教育課程을 設置하고 100 坪당 30 만원씩의 비닐하우스 設置資金을 월 1.5%, 貸出期間 1 年の 條件으로 貸出해주는 비닐하우스 普及事業을 전개해 왔었으며, 이 농가는 1970 年에 教育課程(1 年課程)을 이수했고, 73 년에 30 만원의 資金을 貸出받아서 竹材 비닐하우스 100 坪을 800 坪의 논중 일부에 설치했었다. 여기에 상치를 栽培한 결과 그 成果가 매우 좋아서 貸出金에 대한 上환도 큰 어려움이 없

었고, 이에 비닐하우스를 더 늘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었다.

그 이듬해인 74년에는 이를 擴大하기 위해서 당시 마을에서 自律적으로 組織되어 活動중이던 마을作目班(후에 單位組合의 作目班에 흡수됨)을 통해서 몇몇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設置支援資金を 지원받기로 했고, 이에 200평분인 80 만원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年利 10%의 조건으로 용자를 받았었다. 이 농가는 우선 철제고정식 비닐하우스 200평을 새로 設置하고, 이에 추가하여 1년전에 ('73년) 設置했었던 竹材 비닐하우스 100평도 自負擔 30 만원을 들여 철제고정식 비닐하우스로 교체함으로써 모두 300평을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후 融資는 約定대로 82년 말까지 모두 償還을 완료했으나 비닐하우스는 앞으로도 4~5년 동안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총내구년수 17~18년정도에 해당됨).

이 농가는 300 坪의 비닐하우스에 겨울철에 1期作, 봄~여름에 1期作, 그리고 여름~가을에 1期作으로 모두 年間 3期作의 상치를 栽培하여 연간 250 만원 정도의 所得을 얻고 있으나 논농사는 총 800 평중 300 평의 施設面積을 제외한 500 평에 불과하여 自家食糧을 自給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농가는 「소 入殖支援事業」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마을의 信用協同組合의 일을 맡아 봄으로써 연간 약 310 만원의 農外所得이 있기 때문에 食糧自給 이외에 560 만원 정도의 農家所得으로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을 受容한 結果에 대해서 이 농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는 바, 특히 비닐하우스가 아니었다라면 논 800 평과 밭 600 평만으로 생활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비닐하우스 상치재배가 지난 15년동안 高所得作目으로 그런대로 위치를 지켜왔었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의 所得向上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고 있으나 그렇다고 어떤 對策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實情이어서 오직 답답할 뿐이라고 덧붙인다. 물론 현재 버섯이나 藥草 또는 水耕栽培에 의한 청정채소의 栽培 등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

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試驗栽培, 試行差誤 등 앞으로 겪어내야 할 일들이 걱정된다고 한다.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C-1 농가와 동일함)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C-1 농가와 동일함)

### ▣ C-2 農家の 경우(都市近郊)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논 3,000 坪, 밭 600 坪, 비닐하우스 600 坪을 가진 이마을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農家로서, 경영주 자신은 19년전인 1968년, 당시 28세(현재 47才) 때 대학(화공학전공)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移農現象이 심각했던 당시의 분위기와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나만이라도 농촌과 고향을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귀향하여 長男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논 5,000 평과 밭 600 평 그리고 韓牛 1마리를 물려 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었다. 위로는 누님이 있었으나 부친의 주관하에 出家했고, 현재 서울에서 직장에 나가고 있는 남동생과 여동생은 자신의 주관하에 결혼·出家 또는 分家했고, 부친은 2년전인 1985년에 작고하셔서 현재는 74才의 고령이신 어머니와 2남 2녀중 장녀를 제외한 2남 1녀의 자녀와 부인 등 모두 6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長女는 금년 봄에 商高를 卒業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職場에 나가고 있으며, 次女는 高2, 長男은 中2, 次男은 國民學校 5學年으로 모두 學校에 나가고 있으며, 막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大田으로 通學하고 있어 연간 150만원 정도의 자녀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1983년에는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논 5,000 평중 2,000 평을 매각하여 동생들의 結婚費用과 일부 生活費 등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빚 600만원과 남동생의 分家를 위한 비용 1,4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充當했었고, 1975년의 경운기 구입을 계기로 1977년에는 부친으로부터

물러받아 기르고 있던 韓牛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0 평과 소 1마리가 최초의 資産보다 줄어든 셈이 되었다.

다만 1973년에 일부는 政府補助, 일부는 自負擔으로 300 坪의 竹材 비닐하우스를 設置한 것을 시작으로, 76년에는 200 평의 철재고정식과 100 평의 철재이동식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設置하고 300 坪의 竹材 비닐하우스도 철재고정식으로 교체함으로써 600 평의 비닐하우스를 設置한 것과 75년의 경운기 구입이 지난 19년동안에 늘어난 자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한다.

한편 이 농가는 子女教育 등의 여러가지 與件을 고려해 볼 때 연간 최소한 800 만원의 소득은 보장될 수 있어야 하겠으나, 87년의 예를 들면 논농사 3,000 평에서 200 만원 정도(水害를 입음), 비닐하우스 상치 600 坪에서 200 만원 정도(500 평×1 期作+100 평×2 期作=700 坪)로 모두 400 여만원의 소득 밖에는 기대할 수 없고, 86년에도 500 만원 내외의 소득 밖에는 실현하지 못하는 등, 농사로는 집안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 轉職을 試圖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73년에 農特事業의 일환으로 竹材 비닐하우스 100평분인 40 만원을 補助받고, 自負擔 80 만원을 들여서 200 평의 竹材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設置함으로써 모두 300 坪을 設置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76년에는 이를 더욱 擴大하기 위하여 새마을 所得增大事業의 일환으로 140 만원의 비닐하우스 設置資金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年利 10%의 條件으로 용자받아 철재고정식 비닐하우스 200 평을 설치하고, 同時에 竹材 비닐하우스 300 坪을 철재고정식으로 대체하고, 이동식 비닐하우스 100 평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76년부터는 모두 600 평의 비닐하우스에 상치를 재배해오고 있다.

이 농가가 73년에 처음으로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을 受容하게 된 것은 70年代 초부터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이 마을에 보급되기 시작한 비닐하우스 상치재배가 좋은 成果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導入하고자 했던 차에 정부에서도 補助·支援해 주었기 때문이며, 76년의 擴大設置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소득도 높았고 장래의 展望도 좋았었고, 이제는 栽培에 자신도 생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농가는 논에 설치된 500 평의 철재고정식 비닐하우스는 겨울철 재배만 하고, 여름에는 비닐을 걷어내고 논농사를 하고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는 밭에 設置해 두고 있는 100 평의 이동식 비닐하우스에서 2기작을 함으로써 연간 延栽培面積은 700 평인 셈이다. 이는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겨울철 栽培가 훨씬 有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닐하우스 농사가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여름철에는 주로 自家勞動力(부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농가도 76년에 받은 140만원의 용자는 81년까지 모두 約定대로 償還을 완료했으나, 비닐하우스는 앞으로도 5~6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 상치栽培의 收益性은 매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다른 所得作目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나 특별한 高所得作目이 없어서 앞일이 크게 걱정된다고 한다.

이 농가는 그러나 政府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이 농가는 농업의 展望이 갈수록 어둡고, 현재의 추세대로 라면 현상유지조차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 轉職을 試圖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빚부터 갚아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83년에 논 2,000평을 팔아서 모든 빚을 정리했었으나 그 후 4년만에 또 다시 800만원의 빚이 누적되어 있으며, 이는 農土를 모두 정리하기 전에는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한다.

따라서 이 농가는 營農에의 意志보다는 轉職될 때 까지 家事를 지탱하고 있는 農家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農政全般에 대한 見解와 建議事項

이 농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政府의 政策을 믿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지금까지의 政策支援은 틀림없이 해당 農産物의 過剩生産을 유도했었고, 이는 농산물 가격의 下落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都市消費者들이 利益을 보는 반면에 農家は 所得의 減少를 감수해야 했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政策이 아니라 都市消費者를 위한 農業政策이라는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農政課題에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農土가 그린벨트地域으로 指定되어 있기 때문에 去來는 물론 장래의 發展과 成長을 위한 設計나 計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國家가 買入하여 國有化하던지, 아니면 開發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특히 私有財産權에 대한 엄연한 침해이며, 그의 피해자가 현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農家들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課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政策當局에 대한 建議事項으로는 획일적인 下向式 政策을 지양하고, 地域特性에 따른 융통성이 일선기관에 허용되는 上向式 政策으로 그의 기본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붙이고자 하는 것은 農家所得은 온 식구가 農事에 메달려서 얻은 것이고, 都市勤勞者의 所得은 가족중 한사람이 벌어들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농산물 가격의 지나친 통제나 농산물 가격의 작은 상승에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物價當局의 자세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C-3 農家の 경우(都市近郊)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22년전인 1965년, 당시 나이 25세(현재 47세, 國卒) 때 월남 파병으로부터 귀국, 재대와 함께 귀향하여 부친이 남기고 가신 논 400평과 自身이 월남 파병으로 모았던 돈으로 600평을 추가로 매입, 모두 1,000평의 논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였다.

3남2녀중 長男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27년전), 큰 동생은 81년에 自力으로 結婚,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두 여동생은 각각 18년전과 12년전에 出家했고, 아직 未婚인 남동생은 이웃마을에서 67세의 노령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1,200평의 논농사(그중 300평은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다. 따라서 집에는 부인과 2남1녀의 자녀로 본인

의 5 식구만이 함께 살고 있고, 長女는 中 3, 長男은 中 1, 次男은 國民學校 4學年에 재학중이다.

이 농가는 1969년에 100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었고, 72년에는 400평을 추가로 設置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77년에는 中古 耕耘機(30만원)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작년인 86년에는 그동안 모은 400만원으로 처가마을인 論山 부근에는 600평을 매입, 장차는 그쪽으로 옮겨서 비닐하우스를 지을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이는 마을 전체가 그린벨트地域으로 指定되어 있어서 이마을이 위치한 좁은 골짜기의 耕地面積과 住居家口數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耕作規模를 늘린다거나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成長이나 發展計劃을 세울 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농가는 50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일년내내 상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年間 延栽培面積은 1,500평인 셈이며, 여기서 얻어지는 所得은 연간 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농가는 최소한 연간 500만원 정도의 所得이 있어야 아이들의 教育 등 장래를 위한 다소의 저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耕作規模 만으로는 더 이상의 所得向上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移住를 통한 耕地規模의 擴大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가 政府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을 수용한 것은 1972년의 農特事業을 제기로 400평분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資金 200만원의 融資(3년거치 5년분할상환, 年利 10%)를 받으면서이다. 그러나 이 농가는 그로부터 3년전인 69년에 기독교 농민단체의 비닐하우스 普及支援事業을 통해서 資金支援(貸出期間 1年, 月利 1.5%, 農家當 20만원 이내) 20만원을 받아 100평의 竹材 비닐하우스를 設置했었다. 그 당시 100평의 비닐하우스는 이 농가의 유일한 現金所得源이었고, 그 所得効果도 매우 좋았었기 때문에 이를 擴大하고자 하던 차에 政府로부터의 資金支援가 가능해져서 마을에서 自律的으로 組織되어 活動하고 있던 당시의 마을 作目班(후에 單位組合의 作目班에 흡수됨)을 통해서 일부 농가들과 함께 支援資金을 신청하여, 200만원(50만원/100평 × 400평)을 용자 받아

400 명의 철재고정식 비닐하우스를 設置했고, 추가적으로 69 년에 設置했던 竹材 비닐하우스 100 평을 철재이동식으로 교체하여 모두 500 평의 철재비닐하우스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000 평의 논중 비닐하우스 設置面積 500 평은 연중 내내 活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논농사는 500 평만을 짓고 있으며, 500 평의 비닐하우스 농사가 일년내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일년내내 비닐하우스에 매달려야 함으로 매우 힘들게 지금까지 일해 온 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각고의 노력은 1,000 평의 논농사만으로 17 년만에 600 평의 논을 구입했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200 만원의 용자는 지난 80 년까지 約定대로 모두 상환했었다. 다만 금년 봄에는 작년 가을에 논을 사들이는 바람에 처음으로 農協으로부터 비닐구입자금 50 만원을 용자받았고, 營農資金도 금년에는 200 만원이나 支援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2 년 동안의 農事期間 중에서 가장 많은 빚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 말의 가을상치와 겨울상치로 곧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受容結果에 대해서 이 농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1,000 평의 논을 지키기는 커녕 거리에 나가 앉아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農事에는 이제 자신이 있으나 그 외의 일에는 자신이 거의 없고, 뿐만 아니라 농사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사만은 계속하겠다는 것이 이 농가의 각오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規模만으로는 더 이상의 所得向上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소득 1,000 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規模까지 늘려나가기 위해서 農地購入을 우선적인 目標로 세워두고 있으나, 논 600 坪을 購入하는데 17 년이 걸렸었으니 이제 아이들은 커나가고,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걸리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자식들이 代를 이어 農事를 지을지는 모를 일이라고 하지만, 모두 400 坪의 논만을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았던 본인으로서서는 보다 많은 것을 물려주어야 겠다고 다짐한다고 한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이 농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農政은 全般的으로 볼 때 「민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한 政府의 모든 계획을 믿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농정과제는 강력한 農産物價格의 안정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영세소농에 대한 지원이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농가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 「소, 돼지, 닭 이제는 쌀농사까지도 비행기로 벼씨를 뿌리겠다고 하니,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나면 영세소농들은 무엇으로 벌어 먹어야 하느냐! 최소한 영세소농이 生産한 農産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可能하다면 差等價格을 적용하여 수매해 주던지, 영세소농을 위한 政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 ▣ C-4 農家の 경우(都市近郊)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15년전인 1972년, 당시 나이 27세(현재 42세, 國卒) 때 長男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논 1,200평, 밭 3,000평, 林野 6,000坪, 소 한 마리를 물려 받아 農事를 시작했으며, 1973년부터 시작한 비닐하우스 상치재배로 1975년에 논 1,200坪을 1979년에도 논 800坪을 매입하여, 현재는 논이 3,200坪(그 중 700坪은 비닐하우스)으로 늘어났으나 그 외의 다른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이 농가는 7형제 중의 맏아들로서, 부친의 주관으로 4동생은 결혼·分家시켰고 아직 미혼인 나머지 두동생 중 하나는 현재 대학졸업반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年間 學費부담 : 약 10만원), 막내동생은 고등학교를 나온 후 현재 내년 3월에 재대를 앞두고 군복무중에 있다.

따라서 집에는 68 세이신 부친과 66 세이신 모친, 그리고 남동생 하나와 1남 6녀의 자녀중 금년에 출가한 큰 딸을 제외한 6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11 식구인 셈이다. 출가한 큰 딸을 제외하고 위로부터의 딸 5은 고 3, 중 3, 중 1, 국 6, 국 3 이고, 독자인 아들도 국민학교 1학년으로 모두 학교에 나가고 있어서 대전으로 통학하는 3 딸에게 들어가는 學費만도年間 200 만원 정도가 支出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농가는 연간소득이 최소한 1,000 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나, 87년의 경우 논농사 2,500 坪에서 약 250 만원, 시설상치 700 坪(3 기작)에서 약 400 만원, 매년 송아지 1 마리에서 약 40 만원으로 모두 700 만원정도가 예상되며, 작년에는 價格이 좋은 편이어서 750 만원 정도의 所得에 그쳤었다. 물론 2年前부터 4년동안 人蔘栽培圃로 賃貸해주고 있는 3,000 평의 밭에서 매년 賃貸料로 쌀 10 가마를 받고 있는 것을 추가하면 800 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겨우 꾸려가고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밭 3,000 평의 賃貸는 夫婦가 모두 일년내내 비닐하우스 農事에 메달리다 보니 (1년 3 기작), 도저히 밭 3,000 평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가 때마침 錦山에서 온 人蔘業者가 賃貸를 교섭해와서 도지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본인이 機械에 익숙하지 못해서 경운기 대신에 소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것도 3,000 평의 밭을 도지로 내주게 된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68/69년부터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이마을에 보급되기 시작한 비닐하우스 채소농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에 자극을 받고 있던 차에 정부의 융자지원이 있게 되어 73년에 83 만원의 농협융자 (융자조건은 자세히 기억되지 않음)로 200 평의 竹材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을 시초로 76년에는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에 의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年利 10%의 융자 84 만원을 받아, 철재비닐하우스 200 평을 추가로 설치했고, 自負擔 40 만으로 종전의 竹材비닐하우스를 철재로 교체하였고 栽培作目도 상치 대신에 딸기, 시금치, 쪽갓 등으로 多樣化 했었다. 그러

나 딸기는 連作에 의한 피해로, 시금치와 쪽갓은 상처보다 收益性이 낮아서 다시 상처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후인 1978년에는 또다시 120만원의 自費를 들여 300坪의 철재고정식 비닐하우스를 設置함으로써 모두 700명의 비닐하우스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79년도에는 78년에 이미 設置된 300坪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設置支援資金 120만원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연리 10%의 조건으로 용자받아, 그해에 는 800평을 매입하는데 보탬었다. (총 매입자금 : 540만원).

이 농가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받았던 融資들은 모두 約定대로 상환을 완료했으나 비닐하우스는 앞으로도 7~8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농가는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을 受容함으로써 1,200평의 논이 3,200평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금까지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농사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이고, 또 머리를 써서 잘만하면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하고자 한다고 이 농가는 말하고 있다.

이 농가는 그러나 비닐하우스농사에는 농한기가 없고, 일손도 구하기 어려워서 두 부부가 설새없이 메달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하게 老年을 보낼 수 있기 바라지만, 남달리 자식들이 많다보니 앞으로도 한참동안은 더 참고 견디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농사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절대로 農事를 이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전반적으로 볼 때 「민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고 이 농가는 말하고 있는 바, 이는 政策支援이 增産 → 過剩生産 → 價格下落 → 農家所得의 減少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政府가 支援할 때가 되면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농가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農政課題는 農産物價格의 安定이며, 강력히 建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권장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는 민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을류 농지세가 그의 세액은 줄었으나 부과기준은 아직도 애매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달리 하면 세액이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 C-5 農家の 경우 (都市近郊)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15년전인 1972년 당시 나이 34세(현재 49세, 高卒)때 長男으로서 부친으로부터는 1,600평, 밭 1,000평, 임야 17,000평, 그리고 밭으로 쌀 20가마를 물려받아 농사를 시작했다.

그후 이 농가는 밭 1,000평을 開畝, 논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는 밭이 전혀 없는 대신에 논이 2,600평으로 늘어났으며, 81년에 이중 700평에 비닐하우스(철재교정식)를 設置했다.

또한 81년에는 임야 17,000평중 5,000평을 매각하여 그 때까지 누적되어 왔던 밭과 생활비 충당에 쓰여짐으로써 현재는 임야가 12,000평으로 줄어 들었고, 86년에는 政府의 資金支援을 받아 경운기를 購入했다. 그러나 이 농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資産을 늘려 나가는 커녕 재대로 유지하기조차 못한 셈이라고 한다.

이 농가의 經營主는 마을의 「信用協同組合」 理事長, 學校育成會 理事, 동창회의 총무, 새마을지도자 등의 일을 맡고 있어, 대외활동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農事일의 상당부분이 婦人과 고용노동에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현재 집에는 76세의 고령이신 어머니와 1남 2녀의 자녀, 그리고 부인으로 모두 6식구가 생활하고 있고, 長男은 高3, 長女는 高1, 次女는 中2로 모두 學生이기 때문에 연간 150만원 정도의 學費가 支出되고 있다.

이 농가는 자녀들의 학비 등 연간 약 1,000 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농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87년에는 1,900 평의 논농사에서 약 150 만원, 시설상치(700 평×3기작)에서 약 450 만원 정도로 모두 600 만원의 所得을, 86년에는 700 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데 그침으로써, 87년 현재 農協에 700 만원, 信用協同組合에 100 만원 등 모두 800 만원의 負債가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빠듯하게나마 지탱해나가고 있지만, 큰 아들이 대학에 進學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더욱 쪼들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농가는 1972년 이후부터는 비닐하우스 상치재배에서 얻어지는 所得으로 생활을 꾸려 왔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施設상치가 지난 15년 동안이나 유지해 왔던 높은 收益性이 이제는 얼마지나지 않아 무너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水耕栽培에 대한 자료수집과 이의 導入可能性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先進農家를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 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가 최초로 비닐하우스를 도입한 것은 1970년을 전후로 아버지가 설치한 500 평의 竹材비닐하우스이었으며, 본인은 1981년에 竹材비닐하우스를 철재고정식으로 대체하고, 추가로 200 평을 더 설치하여 모두 700 평을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후인 '84년에 複合營農事業의 일환으로 農協을 통해서, 이미 3년전에 設置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이의 設置支援資金 600 만원을 융자받았으며, 그의 구체적인 償還條件 등은 기억이 희미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비닐하우스 設置支援資金은 70% 融資와 30% 自負擔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融資를 받은 資金의 規模만큼만 設置하고 있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농가는 결과적으로 이미 設置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設置支援資金을 받은 셈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設置時에 얻어야 했던 負債와 이로 인한 農家の 資金壓拍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政府의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이 이 농가에 도움이 되

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손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비닐하우스 設置로 인한 所得增大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부가 生計費에 쓰여지고, 減價償却費는 전혀 축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낡아서 못쓰게 되어 새로 設置해야 할 때는 또다시 資金支援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소득이 向上되었고, 技術이 向上되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어보면서 느낀 것은 농업은 전망이 거의 없는 斜揚産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은 자신의 능력이나 나이로 봐서 자신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농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다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수경재배의 도입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자신들이 代를 이어 農事를 짓겠다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農業政策은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 농가의 주장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上意下達式 劃一的 政策은 下意上達式的 地域實情에 알맞는 다양한 政策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農政課題는 適地適産을 중심으로 한 計劃生産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主要農産物의 價格에 대해서는 정부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정책지원사업 특히 예를 들면 營農後繼者育成事業 등은 農家の 發展段階別로 지속적인 資金支援과 技術指導 등이 뒤따르도록 보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비닐하우스 設置支援事業의 農家受容實態에 대한 檢討〉

종합적으로 볼 때, 農家の 政策受容動機는 일부 농가들에 의해서 「先 自力設置, 後 資金支援」이라는 뒤바뀐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設置의 支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政府의 政策意圖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先 自力設置, 後 資金支援」이라고 하더라도 「先 自力設置」로 인한 負債나 農家の 資金壓拍이 「後 資金支援」으로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의 設置를 支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支援對象農家の 公正한 選抜이라는 事業執行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마을에 있어서의 시설채소의 도입은 기독교단체의 普及支援事業과 마을의 自生的 組織인 「마을 作目班」의 活動에 의한 初期段階의 普及試圖過程이 政府의 政策支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이의 擴散은 무리없이 進行될 수 있었으며, 특히 施設菜蔬의 導入이 농가소득을 크게 向上시킴으로써 농가들의 好應度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의 이 사업은 成功的인 事例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技術指導分野에 대해서 기독교 농민단체와 스스로의 努力에 지나치게 의존해 버렸었으며, 이 마을에 이 사업이 점차 擴散되고 技術도 축적되어 團地化 되어감에 따라서, 한 차원이 더 높은, 즉 예를 들면 水耕栽培나 水模栽栽 등과 같은 高級技術의 普及이나, 高所得이 기대되고 高度의 栽培技術을 요하는 새로운 所得作目的 普及, 그리고 共同出荷나 規格包裝, 等級包裝 등의 出荷指導 등이 뒤따라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마을은 마을전체가 大田이라는 大都市의 배후 農村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耕地規模의 擴大나 耕地利用의 轉用 등 個別農家들의 장기적인 發展構想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高級農産物의 生産이라는 戰略方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비록 初步的인 促成栽培技術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상당한 발전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

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더욱 高度化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는 물론 모든 관련기관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② 호 프

우리나라에서의 호프栽培는 일부 麥酒會社에 의해서 극히 적은 量이 生産되어 오다가 1968 年の 農特事業을 계기로 政策的인 支援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호프재배면적은 < 表 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에는 90 ha (생산량 2%)에 불과 하였으나 75년에는 129 ha (생산량 46%)로 80년에는 377 ha (생산량 367%)로, 그리고 85년에는 515 ha (생산량 697%)로 최고에 달했었으나, 86년에는 445 ha (생산량 600%)로 다소 줄어들어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호프는 다년생 作物으로써 매 7~8년마다 種球를 갱신해야 하며, 栽植密度는 300평당 250柱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栽培施設로는 4~5 m 정도 높이의 支柱와 철사줄 등을 栽培圃에 設置해야 하고, 收穫된 호프를 乾燥시킬 수 있는 乾燥施設을 필요로 한다.

表 3 - 7 年度別 호프 生産量 推移

年 度 別	栽 培 面 積 (ha)	生 産 量 (%)
1965	90	2
1970	153	4
1975	129	46
1980	377	367
1981	339	450
1982	352	510
1983	400	438
1984	500	627
1985	515	697
1986	445	600

資料 :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7

호프농사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위험요소이며, 平年作을 가정했을때 300坪當 약 30~40만원의 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작목이다.

호프재배는 거의 대부분이 맥주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支柱의 설치와 乾燥施設의 확보 등 초기의 投資費用規模가 비교적 크고 施設의 耐用年數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施設資金의 中長期的인 投資와 乾燥施設의 用量에 알맞는 生産量의 確保를 위해서 栽培의 團地化나 一定規模 이상의 栽培面積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호프를 栽培한 두개의 調査農家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 A-2 農家の 경우(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27년전인 1960년, 당시 나이 26세(현재 54세, 中卒)때 군 북무를 마치고 귀향, 面所在地에서 옷가게를 經營하시던 부친이 논 1,500평과 밭 500평을 사주셔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었고, 그후로도 부친이 옷가게를 정리하시게 된 1975년까지 약 15년동안 5차례에 걸쳐서(거의 매 3년마다) 農土를 사서 보태주셨었고, 1968년에는 林野 16,000평을 사주시기도 했었다. 그 결과 현재는 논 9,000평, 밭 3,000평, 임야 16,000평, 호프栽培圃 600평, 경운기 1대('82년 구입), 이앙기 1대(87년 봄 구입), 育苗箱子 800개를 가진 비교적 규모가 큰 農家로 成長・發展해 있다.

이 농가는 74세의 老齡이신 아버지와 어머니(62세)를 모시고, 3男4女の 子女들 중, 위로 두딸은 85년과 86년에 각각 出家시켰고, 長男은 현재 大學生으로 집에 없고, 3년전에 專門大學을 卒業한 세째 딸과 금년에 專門大學을 卒業하고 原州로 통근(버스)하는 네째 딸, 高3과 中1에 在學中인 두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모두 8식구가 한집에서 지내고 있다.

이 농가의 所得은 매년 거의 差異가 없는 편이며, 87년의 경우를 보면 9,000평의 논농사에서 550만원 정도, 600평의 호프농사에서 100만원정도, 그리고 自家消費用을 겸해서 栽培한 고추, 팔, 콩, 들깨 등에서 50만원 정도로 모두 7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未婚인 子女들의 結婚(3男2女)과 현재 中・高等學校에 다니고 있는 두아들의 大學教育費 등

을 생각하면, 이만한 農土에서 最少限 1,000 만원 정도의 所得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나) 호프栽培 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75 년에 이 마을의 18 개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 맥주회사와 호프재배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 호프를 재배하기 시작했었다. 그로부터 5 년후인 80 년에는 18 개 농가가 50 만원씩을 출자하여 호프 건조 및 보관창고를 지었고, 乾燥機 등의 施設은 全國單位의 組織인 호프 團地聯合會로 부터 900 만원의 資金을 담보대출로 貸出받아서 設置했었다.

그러나 勞動力不足과 태풍피해 등으로 계약회사로부터 支援받았던 肥料나 農藥代金이 빚으로 남게 되는 등 收支가 악화되어 한농가씩 한농가씩 호프재배를 포기하게 됨에 따라 87 년 현재는 모두 7 개 농가만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共同乾燥施設을 갖출 때 까지만 해도 이 團地에서 年間 25 % 정도의 호프가 生産・出荷되었었으나 지금은 10 %내외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호프團地聯合會는 會員農家の 호프栽培面積 100 평당 1,000 원씩의 組合費로 運營되고 있으며, 이 聯合會가 생긴 후부터는 계약회사와의 협상이나 계약내용이 상당히 改善되었었다. 특히 과거에는 계약농가에 대한 肥料나 農藥 등의 資材供給을 일률적으로 栽培面積에 비례하여 하던 것이 農家の 申請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 支柱나 철사 등의 栽培施設 設置支援資金도 2 년거치 3 년분할상환, 年制 10 %의 조건으로 300 坪당 30 만원의 범위 안에서 융자되고 있으며, 種球에 대한 外上供給도 가능해졌다.

이 농가는 山間地에 적합한 所得作目を 導入해 보고자 하던 중, 交通이 불편한 地域의 여건을 고려하여 販路가 가장 확실한 호프재배를 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作目の 栽培는 상당한 施設投資와 長期的인 眼目を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무작정 뛰어들어 畝를 造成하지 않을 作目이라는 점에서 이 作目を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作目は 태풍피해에 약하고 高空으로 農藥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농약중독의 위험이 높고, 호프를 收穫하여 商品化 하기 까지 상당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근래에 들어서면서는 納品價格의 引上率이 예

를 들면 86년의  $kg$ 당 940 원에는 87년에는 불과 40 원이 오른 980 원 (引上率: 4.26%)에 그치는 등 收益性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약화됨으로써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프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태풍피해는 이 단지내의 두농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즉 금년의 경우 태풍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농가의 收穫量은 500 평의 栽培面積에서 357.4  $kg$  (300 평당 214.4  $kg$ )에 불과한 반면, 栽培圃場의 位置가 地形的으로 有制하여 피해가 가장 적었던 農家の 그것은 600 평에서 1,384.8  $kg$  (300 평당 692.4  $kg$ )으로 3.2 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를 所得面에서 살펴보면, 피해가 큰 농가는 粗收入도 적지만 피해복구에 쓰여진 추가적인 농약살포 등으로 支出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300 평당 21,400 원의 손해를 보았으나, 피해가 거의 없었던 農家は 300 평당 531,000 원의 所得을 얻음으로써 두농가간의 소득격차는 300 평당 무려 552,400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농가도 이제는 호프栽培를 위해 얻어 썼던 대부분의 融資나 貸出이 이미 約定대로 상환되었고, 자신의 農土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은 공동건조장내의 乾燥施設 設置資金에 대한 상환도 내년(88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미 設置된 支柱 등의 施設이 낡아지고 種球를 更新해야 할 때가 되면 호프재배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호프재배가 지금까지는 農家所得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었다는 점에서 다소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農事の 展望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봐서 農事 이외에는 전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계속하여 아이들의 學費와 結婚 등에 대비한 저축을 늘려나가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7년정도를 더 눈발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 할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代를 잇겠다는 것은 가능한 한 막겠다고 하고 있다.

#### 라) 農政全般에 대한 見解와 建議事項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農業政策은 사실상 있으나 마

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이는 전혀 現實性이 없는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농가는 비교적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農地에 대한 年間 財産稅(土地分) 38만원과 農地稅 28만원으로 모두 66만원의 農地와 관련된 稅金을 納附하고 있는 바, 이는 이 농가의 연간소득 700만원의 9.4%에 해당되므로, 이를 實情에 맞도록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 ▣ A-8 農家の 경우(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10년전인 1977년 당시 나이 31세때(현재 41세, 中卒) 부친으로부터 밭 1,330평을 상속받아 農事를 짓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客地에서 工場에 다녔었고, 工場을 그만 둔 후에는 그 工場 부근에서 酒店을 경영했었으나 여의치 않아 귀향하게 된 것이었다고 한다. 귀향후 1,330평의 밭에 옥수수과 팔농사를 했었으나 여기서 얻어지는 所得 보다는 마을의 農事일을 거들어 얻어지는 勞賃收入으로 生計를 유지해 왔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里長의 권고를 받아 79년부터는 300평의 호프農事를 시작했었고, 주로 여기서 얻어진 所得을 모아 6년후인 1984년에는 750평의 논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프농사의 收益性이 과거와 같지 않아 85년부터는 호프농사를 중단했으며, 그대신에 85년과 86년에는 옥수수와 고추농사를, 금년에는 고추 대신에 팔을栽培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얻은 所得은 옥수수에서 60만원(30가마), 팔에서 30만원(2가마) 정도로 모두 90만원에 불과하여 결국은 생계비의 대부분을 또다시 勞賃收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농가는 어떻게 하던지 農地를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연한 한해 한해가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집에는 2男1女의 子女와 婦人으로 모두 5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다.

## 나) 호프栽培支援事業의 受容實態

이 農家가 호프를 栽培하기 시작한 것은 里長의 권유로 1979년 里長을 團地長으로 1975년에 結成된 호프團地의 會員農家로 가입하면서부터 였으며, 매년 호프단지 연합회로부터 호프栽培에 필요한 모든 農用資材를 의상으로 供給받고 호프를 收穫하여 納品할 때 納品代金에서 이를 賒아나갔었다.

이 농가는 호프를 재배하기 시작한 1979년부터 '84년까지 6년동안 호프農事로 얻은 所得을 고스란히 모아 750평의 논을 구입함으로써 自家食糧의 自給基盤이라는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85년, 그러니까 호프농사를 시작한지 7년이 지나면서 種球更新 등의 再投資가 필요했었으나 그의 投資財源의 마련이 여의치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호프의 收益性이 점차 惡化되기 시작하여 展望이 어두워 짐으로써 호프농사를 포기하고 그대신 고추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작년인 86년에는 500斤의 전고추를 收穫했었으나 價格이 금년의 절반 수준이 체 못되는 斤當 800 원에 그침으로써 비료값과 종자값, 그리고 농약값을 겨우 전지고 말았었다고 한다.

호프農事を 계기로 750평의 논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事業은 큰 도움을 주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收益性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效果도 短命에 그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과 展望에 대한 見解

이 농가가 추구하고 있는 目標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은 農事規模의 擴大이나 현재로서는 實現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또 직장생활을 해봤었지만 精神的인 갈등 등으로 괴롭기만 할 뿐, 마음이 편하고 정신적인 부담도 없는 農事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農事を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나이(41세)에 轉職을 試圖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가능하다면 마음이 편하고 건강한 직업

인 農事를 이어받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農事規模의 擴大는 불가피하다고 덧붙혔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이 농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農政은 「믿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面이나 單協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손해를 보았었기 때문이고, 근래에 와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때문에 도지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立場에서 이 농가가 가장 시급하고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農政課題는 農産物의 收入을 억제하고, 농산물 價格의 引上도 최소한 賃金上昇率만큼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 특히 지금까지 政府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 특혜를 누려온 재벌기업에 대한 政策支援을 줄여나가고, 그 財源을 지금까지 도외시 되어 온 農家에 대한 支援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高冷地菜蔬

국내 최초의 고냉지 채소 재배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口傳에 의하면 1958년경 서울의 中央靑果市場 職員이 日本에서 北海道産 여름 무우가 판매되고 있는 것에 着眼하여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일대에 試驗的으로 栽培토록 한 것이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 고냉지채소는 이들 山間地域 農家들의 목돈마련 作目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大規模의 투기성 재배가 성행해짐에 따라 70년대말부터는 파잉과 과소생산이 자주 반복되면서 매우 不安定한 作目으로 바뀌어 갔고, 栽培가 可能한 地域도 全國的으로 擴散되어 갔다. 이에 따라 저장성이 거의 없는 여름결구배추의 時期的인 出荷集中이 잦아졌고, 이는 극심한 價格波動을 유발하기도 했었다. 政府는 이를 改善하기 위하여 1978년의 고냉지 채소과동을 고비로 79년부터 「農畜産物價格安定基金」을 財源으로 한 出荷先渡事業을 전개하기 시작했었다. 이는 농가별 播種時期와 播種面積의 調節을 전제로 한 先渡資金의 性格으로 年制 5%의 條件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A-1 農家の 경우(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5년전인 1982년, 당시 나이 38세때(현재 43세, 國卒) 부친으로부터 논 1,200평, 밭 13,000평, 韓牛 1마리를 물려받아 농사를 시작했었다. 長男인 형님이 公務員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서 次男인 자신은 군복무를 마치고 귀향한 1971년부터 실은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農事經歷으로 하면 17년이 되는 셈이다.

67세의 노령이신 부친은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셨었으나, 퇴원하신 후부터는 아직 未婚인 동생(27세)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中2와 국민학교 6學年에 다니고 있는 두아들과 함께 모두 4식구만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부모님이 동생과 생활하시게 된 것은 본인 부부가 여름내내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모를 모신다기 보다는 부모가 家事일을 거들게 되기 때문이며, 그러시기에는 몸이 너무 노쇠하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주관하게 된 82년에는 우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송아지(韓牛) 6마리를 구입하여 繁殖 및 肥肉牛事業을 本格的으로 도입하고자 했었으나, 84년을 고비로 소값이 下落하고 展望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때 그때 매각하여 규모를 늘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큰소 2마리와 송아지 2마리를 기르고 있다. 또한 85년에는 1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경운기를 구입함으로써 농사를 시작했던 5년전에 비해서 소는 1마리에서 4마리로, 그리고 경운기 1대가 늘어난 셈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負債가 農協에 400만원, 私債 80만원이 생기게 되어 실제로는 전혀 發展・成長하지 못한 셈이라고 한다.

이 농가는 매년 13,000평의 밭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고냉지채소를 栽培해오고 있으나, 예를 들면 86년에는 아시안게임을 전후하여 價格이 폭락함에 따라 400만원정도의 손해를 기록했었으나 금년에는 남부지방의 태풍과 폭우피해로 가격이 높게 형성됨으로써 1,500만원의 소득을 얻는 등 농가소득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다.

반면에 이 농가는 최소한의 年間所得이 400 만원 수준만 된다면 농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13,000 평의 밭과 1,200 평의 논, 그리고 4 마리의 韓牛를 가진 農事規模에 비해서 매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인 것으로 보여진다.

#### 나) 高冷地菜蔬 出荷先渡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매년 120 ~ 140 만원의 고냉지채소 출하선도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바, 금년에도 120 만원의 出荷先渡資金 이외에도 1,400 만원의 一般貸出 및 私債를 얻어 배추 7,000 평과 무우 1,500 평을 재배하여 이 두가지 作目에서만 1,400 만원 정도의 所得을 얻었다. 물론 前述한 바와 같이 작년인 '86 년의 손해' 400 만원을 감안한다면 2 개년 通算 1,000 만원으로 年平均 500 만원 정도의 연간소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농가의 설명이다.

한편 이러한 대규모 재배에는 많은 資金이 일시에 소요되는 바, 出荷先渡事業은 이를 다소나마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다소 도움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농가는 政府가 出荷時期의 集中을 예방하고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정부의 先渡資金을 받아서 스스로는 대규모栽培方式을 택하고 있어 앞뒤가 어긋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농가는 자신이 技術的으로 가장 자신이 있고 경험도 가장 많은 作目이 고냉지채소일 뿐 아니라, 이 山間地域에서 큰 돈을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作目이 고냉지채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作目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 作目を 피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政府의 政策意圖가 農家の 利害關係에 밀려서 目標達成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농가는 특히 84 년에는 종자와 비료를 보조받아 일부 콩을 栽培해 보았으나 冷害로 인해서 실패했었고, '85 년에도 收買用 옥수수를 상당히 심었었으나 收益性이 매우 낮은 등, 결국은 이 지역에서 돈이 될 수 있는 作目이 고냉지채소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고 한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농가의 支出은 매년 늘어가지만 所得은 늘어나지 않아서 農業의 展望이 매우 어둡지만, 농사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자신도 없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하고자 한다고 이 농가는 말하고 있다. 한편 이 농가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즉 먼저 집이 있는 곳과 農土와의 사이를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한참을 우회하여 고속도로 밑으로 뚫린 좁은 통로(일명 : BOX)를 이용하여 왕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生産費는 아무데서도 보상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農地交換을 통해서 농토를 한곳으로 모으고자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의 農土를 필요하다면 축대도 쌓고, 農路도 가꾸는 등의 일에 노력하고자 할 뿐, 경지구모를 확대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그대신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5~6년 이내에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관광을 다녀오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중 하나라고 덧붙이면서, 이제는 최소한 굶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여유가 있는 대로 관광 등으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힘쓰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農政은 전반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때도 가끔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當面하고 있는 시급한 農政課題는 農産物價格의 安定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농가는 農家가 마음놓고 農事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農産物價格의 安定이 필수적이며, 가격등락이 극히 심한 高冷地菜蔬와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 保險制度를 實施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가와 농민을 위하는 政策을 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農村指導所는 農事技術에 대한 指導나 相談 뿐 아니라, 農家나 農民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부족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農民相談所」와 같은 機能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A-3 農家の 경우(山間)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A-3 農家와 동일함).

## 나) 高冷地菜蔬 出荷先渡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는 1977년에 처음으로 農事를 짓기 시작한 바로 다음 해인 78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高冷地菜蔬 出荷先渡資金을 받아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 농가의 생각은, 우선 政府의 資金惠澤을 굳이 안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政府의 意圖가 高冷地菜蔬의 價格不安定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資金支援이 지금까지 이를 栽培해오지 않던 農家들까지도 참여토록 권장하는 것과 같은 結果를 가져옴에 따라서 量産에 의한 價格下落을 야기시켜, 結局은 소비자들만 싼값에 供給받고 農家所得은 그만큼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制度에 대한 근본적인 檢討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事業의 執行에 있어서도 農家들이 配定받는 先渡資金이 農家가 신청한 資金額數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농가는 통상 실제의 所要額數보다도 늘려서 신청하는 등의 부작용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事前에 精確한 栽培計劃은 수립하기 어렵고, 혹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특히 이 지역의 高冷地 農事는 갑자기 栽培作目を 바꾸기에는 無霜期間이 너무 짧고, 山間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밭은 일반적으로 規模가 크기 때문에 많은 量의 옥수수나 콩이나 감자 등의 種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농가는 1984년까지만 해도 10,000명의 밭중 상당부분을 收買用 옥수수 재배에 활용하고, 일부(1,500~2,000명 수준)에만 高冷地菜蔬를 栽培해 왔으나, 흑색비닐의 멀칭재배법을 이용한 감자와 배추의 混作栽培法을 개발함으로써 85년부터는 매년 5,000명 정도를 감자와 배추의 混作栽培에 活用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4월에 흑색비닐로 멀칭을 한 다음, 비닐에 구멍을 뚫고 감자를 파종하고, 5월 중순경에 고냉지배추의 풋트育苗를 시작하여 6월 말경에 감자포기 사이 사이에 배추를 正植하는 방법으로 栽植密度는 각 작목이 單一栽培時보다 낮다. 이는 감자의 줄기와

잎 등의 地上部分이 말라져 가기 시작하면서 고냉지배추는 점차 生育이 왕성해지고, 고냉지배추가 結球를 시작할 무렵이면 감자는 地上部가 없어지고 감자만 地下에서 고냉지배추가 收穫되고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충분한 莖莖肥大期를 거침으로써 收穫量도 密植栽培의 單一栽培法の 그것과 별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히 年中 5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은 짧은 無霜期間을 가진 이곳 山間에서 1年2期作과 유사한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농가는 작년부터 고냉지배추 이외에도 양배추를 감자와 混作하는 試驗栽培를 해오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두차례에 걸친 試驗栽培結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한다. 다만 양배추가 多肥性 作物이기 때문에 施肥量을 약간만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A-3 農家와 동일함)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생략(소 入殖支援事業의 A-3 農家와 동일함).

### 다.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農村에 定着할 意志와 能力을 가진 農漁村靑少年들을 選定하여 專業農家로 育成・支援함으로써 農漁民의 精銳化를 통한 福祉農漁村建設을 위한 人力基盤을 확보하기 위해서 1981년부터 施行되기 시작한 事業이다. 이 사업은 <表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에 農民後繼者 1,795명과 漁民後繼者 150명을 選拔・支援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擴大해 왔었으며, 85년부터는 매년 1만명씩을 선발・지원함으로써 86년말 현재 모두 30,944명이 選拔・支援되었다.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主要支援內容은 <表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支援限度額과 居置 및 償環期間에 있어서는 몇 차례의 改正을 거쳤으나 87년을 기준하면 事業分野에 따라서 최고 1,000만원까지, 그리고 償環期間도 최고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고, 金利

表 3 - 8 年度別 農漁民後繼者 育成實績

單位：名

年度別	計	耕種	複合營農	畜産	果樹	特作	水産
1981	1,945	286	-	1,446	29	34	150
1982	1,998	820	-	867	67	92	152
1983	2,001	720	183	838	17	50	193
1984	5,000	1,387	1,132	1,840	20	101	520
1985	10,000	2,482	2,929	3,314	73	223	979
1986	10,000	3,185	3,756	1,746	90	286	937
누계	30,944	8,880	8,000	10,051	296	786	2,931

資料：農林水産部，「農林水産主要統計」，1987.

는 81년 이후 年利 5%로 전혀 변화가 없다.

本 研究에서는 2명의 耕種部門과 1명의 韓牛部門, 그리고 1명의 酪農部門 營農後繼者에 대해서 調査된 바, 1명의 酪農部門 營農後繼者는 것 소入殖支授事業의 A-7 農家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나머지 3명의 營農後繼者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 A-4 農家の 경우(山間, 耕種部門)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7년전인 1980年, 당시 나이 21세때(현재 28세, 中卒) 부친의 農事중 耕種部門을 형님(長男)이 담당하던 이어서 次男인 이 後繼者의 몫으로 돼지 5마리를 추가로 도입하여 畜産部門을 담당키로 하면서 農事를 시작했었다.

이 후계자는 3男3女の 형제중 둘째 아들(4째)로서, 위로는 出家한 두 누님과 형님이 있고, 아래로는 내년도('88년)에 제대예정인 남동생과 서울에서 職場生活을 하고 있는 여동생이 있다. 따라서 집에는 83세의 노령이신 할머니와 64세이신 아버지와 어머니(55세), 그리고 아직 未婚인 이 후계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형님은 가까운 이웃에 分家해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농가의 營農規模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이 두형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表 3 - 9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事業別 資金支援限度 및 償環條件

事業名		支援規模 및 償環條件					비고
		事業物量	支援額(萬圓)		居置 - 償環(年)		
			1986	1987	1986	1987	
種別	細部事業名						
農 業	耕種農業	1,600 坪	800	1,000	3 - 4	5 - 5	農地購入, 施設設置 家畜 및 農機械購入
	施設園藝	300 坪	700	700	3 - 4	3 - 4	
	複合營農*		800	800	3 - 4	3 - 4	
畜 產	酪農	4 頭	700	700	3 - 4	3 - 4	家畜入殖 및 畜舍新 築, 草地造成
	韓牛	7 頭	600	600	3 - 4	3 - 4	
	豚	50 頭	600	600	3 - 4	3 - 4	
	其他		600	600	3 - 4	3 - 4	
果 樹	사과	3,000 坪	600	1,000	3 - 4	5 - 5	農地, 苗木, 農機械 購入
	포도	3,000 坪	600	1,000	3 - 4	5 - 5	
	其他		600	1,000	3 - 4	5 - 5	
特 作	마늘	150 坪	600	600	3 - 4	4 - 3	農地, 種子, 施設物 設置 및 購入
	人蔘	300 坪	600	600	3 - 4	4 - 3	
	蠶業	1,800 坪	600	600	3 - 4	4 - 3	
	其他		600	600	3 - 4	4 - 3	
水 產	海藻類養殖	1 件	600	600	3 - 4	3 - 4	漁船確保, 施設物 設置, 種子購入, 漁具購入, 施設改 善等
	魚具類養殖	1 件	800	800	3 - 4	3 - 4	
	漁船漁業		800	1,000	3 - 4	5 - 5	
	蕃養漁業		600	600	3 - 4	3 - 4	
	其他		600	600	3 - 4	3 - 4	
團體	協同營農(漁)		1,000	1,000	3 - 4	3 - 4	協同課題 및 施設

\* 複合營農은 食糧作物 + 經濟作物 + 畜産事業이 必히 連結되어야 하며, 畜産事業에 投資되는 資金은 支援總額의 30% 未滿 이라야 함.

資料 : 農林水産部.

이 후계자는 서울로 出家한 누님집에 있으면서 1년 가까이 工場에 다니다가 각박한 都市生活에 회의를 느끼고 귀향하여 80년부터 農事를 짓기 시작했었다. 이때의 이 농가의 全體 營農規模는 논 3,000평, 밭 2,000평, 韓牛 2마리, 그리고 79년에 형님이 購入한 경운기 1대가 전부였었다. 여기에 이 후계자의 몫으로 돼지 5마리를 추가로 導入하여, 기존의 韓牛 2마리를 합하여 畜産部門에 대한 農事를 이 후계자가 맡기로 하여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84년에는 형님과 둘째 누님의 結婚(81년과 82년), 84년 봄에 척추를 다친 형님의 治療費 등으로 누적되어온 負債 1,000만원을 청산하기 위하여 논 2,250평을 매각함으로써 3,000평의 논이 750평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었다. 그러나 自家食糧의 自給을 위해서 논농사규모를 1,000평으로 유지하고자 250평의 도지를 얻었으며, 85년 12월에 營農後繼者(耕種部門)로 選定되면서 86년초에 1,600평의 밭을 구입하게 되어(支援資金 720만원+自負擔 300만원) 밭은 모두 3,600평으로 늘어났다. 또한 85년에는 80년에 5마리로 시작했던 養豚이 100마리로 늘어나 있었으나 그의 收益性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고, 전망도 밝지 못해서 이를 모두 정리·매각하여 여기서 얻어진 資金의 일부를 1,600평의 밭을 매입하는데 보냈었다. 또한 여기에 일부의 빚을 얻어 韓牛 20頭를 매입하여 短期肥育牛事業으로 전환했었다. 이렇게 시작된 1년 미만의 短期肥育牛事業은 현재 40頭의 통상적인 飼育規模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擴大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 후계자는 86년에 6개 농가가 트랙터(35마력), 이앙기, 콤바인(3조식) 각 1대씩을 기본장비로 한 機械化 營農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87년 봄에는 農家負擔 경감조치로 200만원의 私債를 金融資金으로 전환했었으나, 금년 겨울에는 낡은 경운기(79년 구입)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용자를 얻는 등, 현재 부채는 또다시 私債 150만원, 農協融資 150만원, 飼料代金 外上 600만원 등 모두 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농가는 肥育牛 40頭, 경운기 등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資金 및 財政運營이 매우 무질서하고 방만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농가의 年間所得을 87년의 경우, 短期肥育牛(年間 20頭 수준)에서 100만원, 논농사에서 160만원 상당, 옥수수(3,000평)에서 250만원, 그리고 콩, 팥 등의 自家消費用중 초과된 것으로부터 40만원 정도로 모두 550만원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준은 매년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농가는 실질적으로 두집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님께 가정까지를 생각하면 연간소득이 현재의 두배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900만원의 부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와 연관지어 볼 때, 이 농가는 현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나)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의 受容實態

이 農家は 1985년 12월 당시 나이 26세때 耕種部門의 營農後繼者로 선정되었으며 本人이 營農後繼者가 되고자 한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農事가 都市의 職場生活보다 나을 것 같고 기왕이면 後繼者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농가는 1,600평의 農地購入資金으로 720만원을 3년거치 4년상환, 年利 5%의 條件으로 (本人은 2년거치 5년상환 年利 8%라고 말하고 있음) 支援받았으나, 실제로는 300만원의 自負擔이 없이는 구입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實賣入單價: 坪當 6,400원, 融資支援單價: 坪當 4,000원).

이 후계자는 밭에는 收買用 옥수수를 栽培할 뿐이고 主力作目은 短期肥肉牛이며, 主所得源도 短期肥育牛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87년의 所得構造를 보면 옥수수에서 250만원, 短期肥育牛 20頭에서 100만원의 所得을 얻고 있으며, 밭농사는 형님이 맡고 있고 畜産部門은 이 후계자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바탕을 두었다기 보다는 이 후계자 자신의 느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後繼者는 비록 耕種部門의 營農後繼者로 選定·支援되어 1,600평의 밭도 規定대로 사들였으나, 실제로는 畜産部門으로 成長코자 하고 있으며, 본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第3者의 立場에서도 畜産部門 營農後繼者

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後繼者는 營農 後繼者 育成事業이 財政的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額數가 너무 작기 때문에 中長期的인 發展計劃의 推進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고, 특히 農地마저도 約定대로 賣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이 후계자는 지난 7년 동안의 農事를 경험해본 바, 農業의 展望이 매우 否定的인 일 뿐 아니라, 政府, 農協, 飼料業者, 農機械 生産業者 등 모든 주위가 農家의 立場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이나 힘있고 강한 사람들의 입장만을 보호해 주고 있으니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農村을 떠나고 싶으나, 하는 수 없이 農事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耕種이 아니라 소나 돼지 등의 大家畜 分野로 成長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畜産分野에 있어서도 企業畜産에 의한 騁포와 法的 規制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하여 飼育場所를 여러사람의 이름으로 여러곳에 分散시켜 一般農家로 위장한 中小企業畜産,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극히 미온적인 규제 등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순박한 농민들이 발붙일 만한 畜産分野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展望이 어둡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연간 소득 1,000만원 이상이라는 目標도 그의 達成이 거의 막연할 뿐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조차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인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農政은 그의 대부분이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정책들로써 일을 벌려 놓고 끝까지 책임져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農民들이 이를 믿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고 이 후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農政의 當面課題나 건의사항에 있어서도 이 농가는 價格安定에서부터 비료, 비닐, 농약 등의 營農資材供給事業, 옥수수나 쌀의 수매사업, 農機械의 A/S사업, 부채경감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政府의 비호나 주관하에 상인들이나 기업가들의 이익

은 보장·보호하면서 단체행동도 어렵고 現實의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農民들의 利益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후계자는 깊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농가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 ▣ B-1 農家の 경우(耕種部門)

####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생략(소入殖支援事業의 B-1 農家와 동일함).

#### 나)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가 耕種部門 營農後繼者로 선정된 것은 1986년 12월 당시 나이 33세때이나, 營農後繼者 선발신청을 한 것은 그보다 1년이 앞선 1985년이었으며, 그때는 탈락되었었다.

이 후계자는 長男인 형이 公務員으로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어 次男인 本人이 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어야 할 형편이었고, 學校공부도 국민학교만 나온 후 獨학으로 高入檢定考試에 合格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74년 軍에서 제대한 후 귀향, 부친의 농사를 거들면서 2.5톤 트럭을 가지고 自營運輸業을 하고 있던 차에 79년, 당시 나이 26세때 농사와 運輸業이라는 二重職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었다. 그 결과 부친을 모시고 農事에 전념하는 것이 옳고 有利할 것으로 判定되어 運輸業을 정리하고 농사에 전념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바에는 專門農業人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어 '82년 32세라는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營農後繼者로 신청하게 되었으나, 이때는 탈락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86년에도 85년에 이어 신청하여 선발됨으로써 신청 2년만에 어렵게 선발된 셈이라고 한다.

이 後繼者는 1,600명의 농지구입자금으로 720만원을 3년거치 4년상환 年利 5%의 조건으로 지원받았으며, 이에 360만원의 自負擔을 추가하여 (火災事故로 인한 韓牛 20頭 전량을 매각한 代金의 일부로 承擔) 모두 1,080만원을 마련, 밭 2,300평(평당 4,700원)을 買入하여 이를 모두 포도원으로 造成하고 있다.

포도원의 조성은 지금까지의 고추나 참깨농사가 연작피해 등으로 한계에 왔다고 느껴진 반면, 과거부터 가꾸어 오던 500평의 포도농사는 꾸준한 소득을 가져다 주었었을 뿐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그의 需要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계자가 수료한 營農後繼者教育(농촌진흥청 주관)은 양잠부분이었기 때문에, 選拔된 사업분야인 耕種部門과 관련이 없었고, 포도원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후계자가 확실한 답변을 피했었다.

이 後繼者는 불의의 火災事故로 肥肉 및 繁殖牛에 의한 畜産專門農家로의 成長에 부풀었던 기대가 무산되어 失意에 빠져있던 차에 營農後繼者로 選定됨으로써 이번에는 포도원을 根幹으로 하는 果樹專門農家로 成長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을 통한 資金支援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포도가 本格的으로 收穫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支援資金의 상황이 시작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約定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관한 見解

생략(소入殖支援事業의 B - 1 농가와 동일함).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생략(소入殖支援事業의 B - 1 농가와 동일함).

#### ▣ A-6 農家の 경우 (韓牛, 山間)

가) 農家の 概況과 成立 및 成長過程

이 농가는 7년전인 1980년 당시 나이 25세때(현재 32세, 農高卒) 집안의 長男으로 부친으로부터 는 2,200평, 밭 5,000평, 林野 6,000평을 물려받아 농사를 시작했었다. 長男인 이 후계자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부친은 1986년 이 후계자를 結婚시키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그의 1년 전인 85년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85년과 86년의 두해는 이 후계자에게 있어서 상당히 벅찬 해였다고 한다. 특히 이 후계

자는 5男1女 중의 長男으로 여동생과 두 남동생은 지금 會社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 없고, 4 번째에 해당되는 남동생은 軍服務中이기 때문에 집에 없지만, 高 1인 남동생과 현재 59세이신 어머니와 부인과 딸(6세) 등 모두 5 식구가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후계자는 지금까지 13년 동안이나 새마을청소년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마을開發委員職을 맡고 있는 등, 대외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후계자가 韓牛部門의 營農後繼者로 選定된 것은 '82년 6월이며, 이로써 韓牛 7頭를 갖추어야 했었다. 그러나 소값이 한참 오르고 있었던 따라서 4頭밖에는 구입하지 못했고, 그대신 이웃집의 소 3마리를 代理飼育하기 시작했으며 83년 4頭的 韓牛가 8頭로 늘어나면서 이웃집의 소 3마리는 되돌려 주게 되었었다. 이외에도 82년에는 融資支援을 받아 경운기 1대를 구입함으로써 농사를 시작한지 3년만에 비록 負債는 늘었지만 營農資産도 그만큼 증가하는 최초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로 인한 負債들은 모두가 中長期 融資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83년에 韓牛가 8頭로 늘어나자 소값은 서서히 下落하기 시작했고, 4마리의 송아지중 2마리가 병들게 되어 도태시킴으로써 6頭로 다시 줄었고, 특히 소값下落이 長期化될 것으로 보여 韓牛를 정리하고 다른 농사분야로 전환하고자 했었으나, 規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모든 관계기관들이 韓牛飼育을 고집했었다. 그러던 중 84년에는 韓牛가 11마리로 늘어났으나 또다시 그중 송아지 2마리가 관절염으로 도태되어 9마리로 줄어들게 되었었고, 이처럼 2년동안에 4마리나 도태시키게 됨에 따라 韓牛繁殖은 늦어지게 되었었다.

그러나 85년부터는 農機械購入資金과 營農後繼者 支援資金의 상황이 시작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부득이 3마리의 송아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86년에는 본인의 결혼과 부친상 등으로 인한 費用과 融資金의 償還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87년 봄에 2,200평의 논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논농사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이로써 이 농가는 과거의 논농사+밭농사+축산의 3개 부문 복합에서 밭농사+축산의 2개 부문 복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가을 현재 이 농가가 갚아야 할 부채의 총액은 營後繼者 및 農機械경운기) 購入 支援資金과 營農資金, 農協으로부터의 一般貸出, 분무기 外上購入 등 모두 1,000 만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현재 飼育中에 있는 韓牛 7頭와 경운기, 분무기 등이 이빚을 갚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별로 부담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빚을 농사를 지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나)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의 受容實態

이 농가가 營農後繼者가 된 것은 營農規模의 擴大를 통해서 商業的 專門農으로 成長하기 위한 基盤을 갖추고자 했고, 그 方法으로는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 韓牛가 최적이었고, 특히 山間이라는 立地條件이 韓牛飼育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농가도 81년의 신청에서는 탈락되었으나 82년 6월에 選拔됨으로써 두번째 신청에서 選定되었던 셈이다.

이 후계자는 韓牛 7頭의 買入을 전제로 600 만원의 資金支援을 받았으나, 그당시(82년)의 가격수준으로는 4마리밖에는 買入할 수 없었고, 나머지 3마리는 이웃농가의 소를 代理飼育키로 함으로써 約定된 7마리를 겨우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농가가 營農後繼者로 選定될 당시의 目標은 繁殖 및 肥肉牛 40頭規模의 畜産農家였으나 이제는 그의 實現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라고 한다. 이 후계자는 前述한 바와 같이 82년에 韓牛 4頭를 買入하고 3頭는 이웃집의 것을 代理飼育하기 시작해서, 83년에는 모두 11頭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代理飼育중이던 3頭는 이웃집에 되돌려 주고 나머지 8頭로 다시 시작한 셈이었다. 그러나 83년과 84년의 병으로 인한 4마리의 도태 등 액운이 뒤따라 지난 4년동안 3마리의 송아지 밖에는 매각하지 않았으나 87년 가을 현재 모두 7마리로 오히려 1마리가 줄어들어 있는 실정이다.

이 後繼者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값이 下落하기 시작했고, 韓牛飼育의 展望이 매우 어두워질 것으로 보여 이를 매각·정리하여 다른 농사분야로 전환하고자 상담을 했었었지만, 규약위반을 이유로 안된다고

고집함으로써 결국은 그 시기를 놓치고 飼育頭數가 7 마리 이상이 維持될 수 있게 되었던 '85 년이 되어서야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낮아질대로 낮아진 가격(30 만원/송아지 1頭)에 「울며 겨자먹기」로 3 마리의 송아지를 처음으로 매각할 수 있었었다.

따라서 이 후계자는 자신이 차라리 營農後繼者로 選定되지 않았던더라면 이처럼 經營主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게 되어 뻘히 알고 있었으면 서도 빚더미를 끌어 안게 되지는 않았었을 것이라고 한다.

#### 다) 앞으로의 目標와 展望에 대한 見解

이 후계자는 지금까지 스스로 경험해온 바와 같은 政策이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경우 농사를 더이상 계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획기적인 政策轉換이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轉職을 서두르고자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代案이 있는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숙한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고 싶으나, 그것도 지금의 농토들이 팔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막연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農事도 잘만하면 展望이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세대에는 소위 도중하차를 하게 되는 셈이긴 하지만, 자식들이 農事を 원하고자 한다면 代를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는 것이 이 후계자의 생각이라고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후계자는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해야 할런지?에 대해서 현재 망설이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때문에 農事を 정리하고 他職業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000 만원의 負債에 대해서도 이를 상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農事が 잘되어 여유가 생긴다면 農地를 늘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營農機械化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힘으로써 이 후계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移農意思是 移農을 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불만의 한 표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農政全般에 관한 見解와 建議事項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農業政策은 이를 믿고 따른다거나, 또는 따르지 않는다거나 보다는 農事에 다소 참고가 될 뿐이라는 것이 이 후계자의 생각이다. 특히 正確한 통계와 情報의 分析을 토대로 확고한 자신이 있는 政策을 樹立해야 하고, 이러한 政策은 政府가 그의 結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어야만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를 入殖하여 규정대로 해온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들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농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믿기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의 農家受容實態에 대한 檢討)

本 研究의 營農後繼者에 대한 農家調查結果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겠다.

우선 農家の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에 대한 受容意圖가 農事를 위해 定着・成長해 보겠다는 점에서는 政府의 政策意圖와 一致하고 있으나, 그의 細部的인 事業內容은 처음부터 각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조사농가중 2개 농가는 耕種部門의 營農後繼者로 選拔되었었으나, 農地만을 구입했을 뿐, 한농가는 短期肥肉事業으로, 다른 한 농가는 果樹農家(포도원)로 發展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農家の 事業計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못했다는 것과 事業計劃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支援資金의 目的外使用을 감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은 能力과 意志가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 청소년을 선발하여 이들이 하나의 發展된 바람직한 農家像으로 完成되도록 함으로써 他的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示範의 性格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事業의 事後管理는 支援資金의 執行 여부에 대한 點檢보다는 후계자로 選拔되면서 認定된 農家の 事業計劃을 基準으로 그의 推進實績을 分析・評價하고, 計劃當時에 전제로 했던 주위의 與件들에 대한 確認과 點檢, 그리고 그 결과들에 의한 適時適切한 計劃의 修正이나

補完 등을 가장 핵심적인 內容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一線 關係機關들의 事後管理能力과 機能은 이와같은 事業의 成敗를 左右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要素라고 하겠다.

또한 이 事業은 前述한 바와 같이 意慾과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젊은 이들만을 選拔・育成한다는 점에서 示範的, 모범적 性格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人格的 資質과 定着意志를 우선적인 選拔基準으로 삼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人格的 資質이나 강한 定着意志는 나이가 많은 젊은 층일 수록 앞선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技術水準이나 專門性 등이 事業成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本人이 選拔審議過程에서 자신의 事業計劃을 자신있게 설명하고, 의문점에 대한 審査委員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함은 專門機關이나 專門家에 의한 事後管理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人格的 資質과 定着意志는 營農技術이나 農事能力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은 선택된 농가를 도와 이 농가가 年次的으로 成長・發展하여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事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관련된 事業支援資金은 해당농가의 成長過程이나 段階에 따라서 달라지는 投資需要에 알맞도록 分割・調整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물론 이 事業이 政策的 支援만으로 어떤 農家를 成長・發展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농가에 있어서 새로 시작되거나 추가적으로 導入되는 事業이 단 한번의 購入支援이나 施設確保支援에 그치지 않고, 몇차례의 후속투자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資金支援도 이에 알맞게 段階나 過程別로 분산되어야 할 것이다.

## 라. 農機械 普及支援事業

農家에 대한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은 1978년 12월 「農業機械化 促進法」이 制定・公布됨으로써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農機械技術訓練, 농기계사후봉사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農家에 대한 農機械普

及支援事業은 個別農家에 대한 購入資金支援(구입가격의 一定比率 融資)과 共同組織의 結成을 통한 「機械化 營農團」에 대한 購入資金支援(구입가격의 일정비율에 대한 補助와 融資)으로 구분할 수 있다.

農家에 대한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은 農家の 호응도와 참여율이 비교적 높아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政策事業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主要農機械의 普及臺數當 農家戶數의 年度別 變化추이를 살펴보면 <表 3-10>에서 보는 바와같이 86년말 현재 耕耘機는 2.8 농가당 1대, 분무기는 3.3 농가당 1대 등, 특히 경운기와 분무기는 基本的인 農機械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한편 年度別 主要農機械의 보급 및 資金支援實績을 살펴보면 <表 3-11>에서 보는 바와같이 耕耘機의 普及臺數는 1983년의 87,911대를 頂點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등의 農機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콤바인의 보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곡기의 보급대수는 1981년의 3,989대에서 매년 줄어들어 1986년에는 불과 881대로 줄어들었다.

이와같은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의 農機械購入資金의 主要支援內容을 살펴보면 <表 3-12>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반적으로 1984년부터의 購入資金支援比率이 83년까지의 그것에 비해서 낮아졌고, 居置期間은 2년에

表 3-10 主要農機械의 臺當 農家戶數 變化推移

單位: 農家戶數/臺

機 種 別	1965	1970	1975	1980	1985	1986
耕 耘 機	2,256.4	209.3	27.8	7.4	3.3	2.8
트랙터	-	40,781.1	4,218.2	809.0	155.5	117.9
移 秧 機	-	-	148,691.2	194.8	45.7	32.0
바인더	-	-	-	157.9	75.4	58.0
콤바인	-	-	42,483.2	1,779.6	165.1	123.0
噴霧機	330.8	53.3	17.3	6.5	3.7	3.3
揚水機	96.3	46.0	36.1	11.1	6.7	6.6
其 他*	130.5	59.7	18.5	9.6	6.2	6.3

\* 其他는 脫穀機, 乾燥機, 播種機의 合計임.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7에서 作成함.

表 3 - 11 年度別 主要農機械 支援供給 및 資金支援 實績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耕 耘 機	350臺	3,581	27,970	61,237	79,500	84,285	87,911	82,743	62,019	60,692
트 렉 터	-	-	200	562	1,223	1,507	1,620	2,483	2,719	4,243
移 秧 機	-	-	-	9,033	4,114	4,236	6,914	7,670	11,924	17,573
바 인 디	-	-	-	4,204	2,120	2,005	2,881	4,096	3,769	6,374
콤 바 인	-	-	-	790	868	1,450	1,779	3,316	3,191	5,074
乾 燥 機	-	-	-	217	251	287	583	592	596	712
噴 霧 機	-	-	8,013	10,169	16,690	20,181	23,496	19,088	10,055	8,053
撤 噴 霧 機	1,645	24,000	17,859	25,665	11,914	16,205	8,808	4,341	1,936	1,538
揚 水 機	8,675	7,913	3,718	2,560	7,048	8,587	2,712	889	289	126
脫 穀 機	-	-	5,288	2,905	3,989	3,112	2,961	2,306	1,609	881
其 他	-	-	957	325	455	8,311	11,910	16,978	5,719	2,316
計	10,670	35,494	64,005	117,667	128,172	150,166	151,575	144,502	103,826	107,582
資 金 支 援	107百萬원	2,859	15,490	88,215	129,440	147,318	169,641	148,128	143,352	177,845
補 助	107	1,430	523	1,310	2,097	10,177	9,696	10,880	11,551	11,613
融 資	-	1,429	14,967	86,905	127,343	137,141	159,945	137,248	131,801	166,232

\* 補助는 農機械 供給에 投入된 國費 및 地方費로서 營農團機臺, 訓練用機臺 및 其他 機臺를 合한 總額임.

資料：農業政策局 農業機械課

表 3 - 12 年度別 農機械購入資金 支援率 變化推移

機種別	區分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87
耕耘機	支援率	70%	70%	70% (100萬원)	56% (80萬원)	56% (80萬원)	70%
	償環條件	2-5	2-5	2-5	1-6	1-6	1-6
트랙터	支援率	70	80	80%	70	70	80
	償環條件	2-6	2-6	2-6	1-7	1-7	1-7
移秧機	支援率	100	100	100	80	80	90
	償環條件	2-3	2-3	2-3	1-4	1-4	1-6
바인더	支援率	90	90	90	80	80	90
	償環條件	2-3	2-3	2-3	1-4	1-4	1-6
콤바인	支援率	80	90	90	80	80	90
	償環條件	2-5	2-5	2-5	1-6	1-6	1-7
噴霧機	支援率	70	70-100	70-100	70	70	70
	償環條件	2-3	2-3	2-3	1-4	1-4	1-4
揚水機	支援率	100	70-100	70-100	70	70	70
	償環條件	2-3	2-3	2-3	1-4	1-4	1-4
乾燥機	支援率	100	100	100	70	80	90
	償環條件	2-5	2-5	2-5	1-6	1-6	1-7
其他	支援率	70-100	70-100	70-100	70	70	70-90
	償環條件	2-3	2-3	2-3	1-4~6	1-4~6	1-4~6

資料：農林水産部，農政局 農業機械課.

서 1년으로 줄어든 반면, 상환기간은 3年, 5年 또는 6년에서 4년, 6년 또는 7년으로 각각 1년씩 늘어났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農機械 購入資金에 대한 利率은 農漁村綜合對策(1987.3)의 일환으로 종전의 年利 10%가 8%로 引下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은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은 거의 모든 農家들에 의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受容되고 있을 뿐 아니라 普及支援機種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農家の 政策受容實態를 중심으로 個別農家에 대한 事業과 機械化 營農團에 대한 事業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① 個別農家

個別農家の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에 대한 受容實態는 農家の 農機械導入

이 아지는 해당농가의 生産作目이나 所得, 또는 經營構造의 기본적인 골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使用한다기 보다는 所要勞動力의 不足을 解消하고, 營農作業의 能率化 및 便宜化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農家の 成立이나 成長過程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보다는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의 수용동기, 수용결과 등, 이 事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또한 지금까지 농가에 보급된 機種이 育苗箱子나 벗짚절단기에서부터 바인더 트랙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용도가 다양한 耕耘機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18個 調査農家の 主要機種別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의 受容農家數를 살펴 보면 <表 3-13>에서 보는 바와같이 분무기가 15개 농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운기로 12개 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경운기를 自負擔만으로 구입한 농가까지 합하면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農家數는 총 18개 調査農家中 14개 農家에 이른다.

#### 가) 受容動機

경운기 普及支援事業을 受容한 12개 농가는 모두 ① 勞動力不足의 解消 ② 營農作業의 便宜化 ③ 政府의 資金支援을 그의 受容動機로 밝힘으로써, 前述한 바와같이 農家の 農機械導入이 營農構造나 經營構造의 기본적인 骨格의 變化를 통한 새로운 發展戰略의 選擇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다. 다만 資金支援을 받지 않고 중고 경운기를 구입한 2개 농가(77년 30만원, 87년 35만원 구입)는 性能과 용

表 3 - 13 調査農家の 主要機種別 農機械普及支援 受惠農家數

機種別	山間	準山間	都市近郊	計
耕耘機	6	4(1)	2(1)	12(2)
移秧機	1	1	—	2
噴霧機	6	4	5	15
벗짚절단기	4	1	—	5
착유기	1	—	—	1
調査農家數	8	5	5	18

\* ( )은 自負擔으로 購入한 農家數임.

도에 있어서 새것과 큰 差異가 없을 뿐 아니라 값이 훨씬 저렴한데다가 값비싼 新品을 빚까지 얻어가면서 購入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機械란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내용년수가 크게 좌우되는 만큼, 중고를 구입함으로써 특별히 고장이 잦았다거나 큰 불편을 겪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나) 受容 및 事業進行過程

12개 政策受容農家は 모두 代理店의 販促活動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融資申請의 代行業에 의해서, 農家は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전해주고 관련구비서류에 날인해 주는 정도가 고작이며, 事業 代行業關인 農協에서 錢票를 받아 그자리에서 代理店에 넘겨주기 때문에 現金은 전혀 만져보지 않으며, 그중 대부분의 農家は 錢金에 해당되는 自負擔을 後拂 또는 수확시기까지 外上으로 처리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農家들은 融資額數나 償還期間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表 3-14>에서 보는 바와같이 농가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입가격, 융자금액, 상환조건이 실제와 똑같은 경우는 단 1개 農家(1982년의 두번째 줄) 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농가의 購入價格이 실제 供給價格과 다른 것은 山間地域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트렐러에 동력전달장치(속칭 뒷데루)를 추가로 설치한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추가설비를 설치한 農家들은 이 농가 외에도 상당수에 이르지만, 이들은 상환기간이나 용자에 대한 利率이 실제와 다르다. 특히 1984년부터는 償還期間이 1년거치 6년상환으로 바뀌었고, 1987년부터는 利率이 年利 10%에서 8%로 引下되었으나 (<表 3-12> 참조),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農家は 하나도 없었다.

한편 耕耘機의 導入에 따른 運轉 및 조작에 대한 教育·訓練과정을 이수했다고 응답한 農家は 機械化 營農團에 가입되어 있는 農家 하나뿐이고 나머지 11개 農家は 모두 설명서와 이웃농가의 도움으로 운전 및 조작기술을 익혔다고 응답하고 있다.

表 3-14 調查農家의 耕耘機 購入資金調達內容

構入年度	構入價格 = 融資 + 自負擔			償環條件
1975	36 萬원 (64.3 萬원)	= 24 萬원(+ 8 萬원보조) (38.6 萬원)	+ 4 萬원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7%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9%)
1979	105 萬원 (96 萬원)	= 60 萬원 (57.6 萬원)	+ 45 萬원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9%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2.5%)
1980	140 萬원 (114.3 萬원)	= 100 萬원 (80.0 萬원)	+ 40 萬원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7.5%)
1982	142 萬원 (143.2 萬원)	= 90 萬원 (100 萬원)	+ 52 萬원	1 年거치 3 年상환, 年利 10%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180 萬원 (143.2 萬원)	= 100 萬원 (100 萬원)	+ 80 萬원 (* 추가장치)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155 萬원 (143.2 萬원)	= 100 萬원 (100 萬원)	+ 55 萬원	1 年거치 6 年상환, 年利 10%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1984	150 萬원 (143.2 萬원)	= 100 萬원 (80 萬원)	+ 50 萬원	2 年거치 3 年상환, 年利 10% (1 年거치 6 年상환) (年利 10%)
	130 萬원 (143.2 萬원)	= 130 萬원 (80 萬원)	+ 0 萬원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1 年거치 6 年상환) (年利 10%)
	140 萬원 (143.2 萬원)	= 100 萬원 (80 萬원)	+ 40 萬원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1 年거치 6 年상환) (年利 10%)
1985	140 萬원 (143.2 萬원)	= 80 萬원 (80 萬원)	+ 60 萬원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1 年거치 6 年상환) (年利 10%)
	140 萬원 (143.2 萬원)	= 80 萬원 (80 萬원)	+ 60 萬원	2 年거치 5 年상환, 年利 10% (1 年거치 6 年상환) (年利 10%)
1986	159 萬원 (143.2 萬원)	= 100 萬원 (100 萬원)	+ 59 萬원	2 年거치 3 年상환, 年利 10% (1 年거치 6 年상환) (年利 10%)

\* ( )은 政府의 融資 및 경운기 供給價格, 償環條件임.

다) 受容結果에 대한 農家の 見解

한편 政策受容農家の 受容結果에 대한 전반적인 評價로 간주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表3-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결과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農家が 7개 農家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개 農家が 「그저 그런 정도였다」고 응답했으며,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農家와 「결과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는 農家가 각각 1개 農家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결과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農家は 고장이 잦아서 修理 및 補修費 등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들었으며,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해서 營農作業이 적시에 마무리되지 못함으로써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7개 농가와 「그저 그런 정도였다고 생각한다」는 3개 농가의 대부분은 목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경운기 구입을 政府의 助자로 承當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의 資金事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農機械를 들여올 수 있었던 반면, 助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는 7~8년이 지나면 경운기도 수명을 다하여 또

表3-15 調査農家の 政策受容結果(耕耘機普及支援事業)에 대한 見解別 分布

見 解 別	山 間	準山間	都市近郊	計
1.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		1
2. 결과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3	1	7
3. 그런저런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2		1	3
4. 결과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1			1
5.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計	6	4	2	12

表 3-16 調査農家の 部門別 耕耘機普及支援事業 受容結果에 대한 見解別分布

部 門 別	增加(向上)	무 관	減少(低下)	모 름	計
所 得 面	3	4	—	5	12
負 債 面	9	—	—	3	12
資 産 面	9	3	—	—	12
技 術 面	12	—	—	—	12

다시 融資를 얻어 새기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耕耘機 普及支援事業의 受容에 따른 部門別 成果에 대한 調査農家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表 3-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農家の 耕耘機의 導入은 營農技術水準의 向上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所得面에서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農家들의 전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政策資金의 용자를 통한 農家の 경운기 도입은 한편으로는 負債增加를 誘發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資産增加를 가져왔다고 대부분의 農家가 생각하고 있으나 용자상황이 이미 끝난 지금까지도 그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농가들은 負債가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전술한 바와같이 경운기 購入支援資金의 용자를 모두 상환할 때가 되면 경운기의 수명도 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농가들은 경운기의 구입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資産增加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 라)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에 대한 問題點 및 建議

한편 調査農家들의 대부분은 販賣代理店의 事後奉仕活動 不在를 가장 큰 問題點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修理를 의뢰한 경우 출장수리는 주로 출장일정계획이 빠듯하여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期限없이 기다려야 하고, 整備工場修理는 고장난 기계의 운반 등은 물론 부품이 없거나 작업량이 많다는 이유로 修理期間이 2~3일씩이나 걸리기도 하며, 部品價格이나 代理店의 修理費 單價도 一般工作所나 車輛整備業所의 그것보다 오히려 비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심한 경우 이양작업중 고장난 이양기의 긴급수리를 요청했으나 2~3일이 지나도록 올 수 없다면 대리점이 고장

난 이양기를 정비공장에 가지고 가서 수리해 주고, 그대신 새것을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말하자, 새것을 금방 신고 와서 고장난 이양기를 그자리에서 수리해 주는 등, 현재의 A/S體系는 가동이 되지 않고 갖추어져 있기만 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당수 農家들은 農機械供給이 生産業體들의 談話에 의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全國을 地域別로 區分, 市場圈域을 설정하여 독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횡포가 더욱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형식의 機械가 개발·보급되면, 舊型式의 部品生産이 중단되고, 고장에 따른 修理部品은 制限되어 있는 在庫部品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車輛部品이나 비슷한 機械部品을 改造해야 하는 불편을 農民들이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農家들이 農機械의 輸入을 開放하여 國內業者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견제함으로써 실수요자인 農民들이 순박하고, 機械에 밝지 못하다는 점을 惡用하거나 고객인 農民들을 무시하려는 업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고장이 적은 견고한 製品을 생산할 수 있는 品質의 高級化 노력과, 다양한 地型과 用途에 따라서 농가가 적절한 機種을 선택할 수 있도록 機種의 多樣化 努力을 자극하고 재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중 일부 농가들은 이러한 農機械의 輸入開放을 農産物의 輸入開放이라는 당면과제와 연관시켜서, 農家의 양보할 수 없는 所得源인 農産物은 輸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외국의 농민들과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農家가 사용하는 農機械의 供給은 政府의 保護를 받고 있는 國內業者들이 만들어 주는대로 사다써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 農家의 受容實態 調查結果의 檢討 및 要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農機械 普及支援事業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農家의 政策受容意圖와 政府의 政策意圖는 勞動力不足의 解消와 營農作業의 能率化 및 便宜化라는 側面에서 특히 一致되고 있으며, 政府의

農家에 대한 일시적인 목돈 負擔의 輕減意圖도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農家の 資金管理 및 運用分野에 대한 經營能力의 不足과 이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融資의 정확한 額數나 상환조건 등에 대한 관심의 저조와 농가 자신의 용자에 대한 뚜렷한 償還計劃의 不在, 그리고 政府로부터의 支援이 농가 자신들의 成長・發展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政府의 農村人口 減少에 대한 對策이나 財政事情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쌍한 農民을 도와주기 위한 援助事業과 같이 받아들여서는 피해의식의 잠재 등 일부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問題點의 解消를 위해서는 용자신청이나 요령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보다는 政策解說이나 政策意圖에 대한 정확한 弘報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農機械購入이라는 農家の 投資活動에 대한 일선기관의 指導 및 相談能力과 기능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耕地規模와 主力作目の 종류, 所得率對 利子率의 여건 등에 따른 機種의 選擇이나 適正自負擔比率 등에 대한 指導 및 相談活動의 강화는 흔히 지적되고 있는 農機械의 過剩投資現象을 크게 改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당면과제중 하나라고 하겠다.

한편 農機械 購入支援資金의 償還이 농기계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농가소득중 일부로 이루어지고, 감가상각비의 農家內 蓄積이 이루어져서 내용년수가 지난후 單純 再投資(Netinvestment)가 가능하다고 보다는, 償還이 끝나면 耐用年數도 지남으로써, 單純再投資를 위해서 새로운 資金의 용자를 필요로 한다는 농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바(현행 耐用年數는 8年, 融資期間은 7년임),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용자기간의 단축과 耐用年數의 연장이라는 두가지 방향의 대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그러나 용자기간의 단축은 현재의 農家經濟 여건으로 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耐用年數의 연장에 있어서도 제조업체의 品質向上 努力이 제품의 價格引上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농가의 農機械 使用 및 조작기술의 向上을 통한 耐用年數의 연장이라는 方向에서의

努力은 아직도 상당한 改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농가의 農機械導入에 따른 기술교육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 ② 機械化 營農團

機械化 營農團 育成事業은 1981년에 612 個所를 組織・育成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부터는 매년 1,000개소 이상씩을 育成해 옴으로써 1986년 말 현재까지 모두 5,885개소가 組織・運營되고 있다<表 3-17>.

機械化 營農團은 그의 규모에 따라서 大規模와 小規模로 구분되며, 大規模機械化 營農團은 10 農家以上の 참여와 이들 참여농가의 전체 논면적이 10 ha 以上으로, 주로 마을단위를 위주로 組織・育成되고 있으며, 小規模機械化 營農團은 5 農家以內的 참여와 會員農家들의全體 논면적이 5 ha 以上인 경우, 共同利用農家들을 위주로 組織・育成되고 있다. 이들 組織에 대한 支援內容은 <表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支援金額面에서 小規模는 大規模의 약 3분의 1 정도이고, 小規模에는 大型收穫機인 콤바인 대신에 바인더를 지원하는 반면 건조기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機種間의 調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입자금에 대한 補助・融資 그리고 自負擔의 比率은 두경우 공히 40(補助) : 50(融資) : 10(自負擔)으로 규정하고 있다.

表 3-17 年度別 機械化 營農團 育成支援實績

區 分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누 계
事業量(個所)	612	1,010	1,005	1,058	1,100	1,100	5,885
트랙터	375	920	926	1,003	1,047	1,079	5,350
移秧機	933	1,595	1,492	1,702	1,725	1,800	9,247
콤바인	357	825	847	975	1,033	1,076	5,113
바인더	282	382	265	255	190	103	1,477
乾燥機	153	272	364	415	307	262	1,773
高性能防途機	20	106	75	117	245	125	688
其他	3,086	5,057	2,864	1,898	71	250	13,266
事業費(百萬元)	8,068	18,318	21,296	25,255	26,765	27,046	126,748

資料 : 農林水産部 農政局 農業機械課.

表 3-18 機械化 營農團 育成支援內容, 1987

區 分	大規模機械化營農團	小規模機械化營農團
支援限度金額	13,360 千원	4,414 千원
供給對象機種	콤바인, 이앙기, 전조기 각 1 대 및 育苗箱子 2,500 개以內	바인더, 이앙기 각 1 대 및 育苗箱子 2,500 개 以內
補助-融資-自負擔	40% - 50% - 10%	40% - 50% - 10%
기 타	供給機種중 既保有 機種의 購入義務는 없으며, 事業費의 範圍內에서 一部 機種을 변경 購入할 수 있음.	

資料 : 農林水産部 農政局 農業機械課.

機械化 營農團은 集團的인 栽培가 이루어지고 있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組織되고 있는 반면, 本 研究의 農家調查地域은 山間, 準山間, 都市近郊地域으로 벼농사의 大規模 集團栽培地域이 아니기 때문에 두개의 機械化 營農團에 대한 調查結果의 檢討에 만족하고자 한다.

#### 가) 機械化 營農團 I 의 경우

이 機械化 營農團은 6개 농가가 農機械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86년 가을에 組織한 것으로서, 트랙터(35 PS) 1대, 이앙기 1대, 콤바인(3組式) 1대를 확보하여 시작했으나, 금년 봄 이앙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이앙기만 2대로 늘어난 셈이다.

이 機械化 영농단은 青年層 農家들을 主軸으로 하고 있는바, 우선 본인의 논농사를 위해서 필요했고, 그외에도 이 마을의 논면적이 모두 38ha이고, 여기에 인근 마을까지 합하면 農機械의 維持管理와 融資金償還이 논같이, 기계이앙, 수확 등의 營農作業을 代行하여 얻어지는 收入으로 충분히 充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組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農機械 購入資金에 대한 政府支援은 補助 800만원, 融資 1,200만원으로 모두 2,000만원이고, 自負擔은 260만원으로 總 事業規模는 2,260만원이며, 용자는 2년거치 5년상환, 연리 9%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補助 780만원, 融資 975만원, 自負擔 478만원이었으며, 관계기관(面 產業系)에서 파악하고 있는 총 사업규모는 19,497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 기계화 영농단의 기본장비인 트랙터와 콤

바인에 대해서는 40%의 補助와 50%의 融資가 있으나 이앙기는 이 地域이 기계이앙을 권장할만한 기상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관제기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會員農家의 自負擔으로 두대의 이앙기를 추가한 바, 이는 기 확보된 1대의 이앙기가 금년 봄 이앙작업중 고장이 났었으나, 이의 수리가 지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앙기 한대만으로는 많은 작업량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한대를 추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기계를 추가로 요청하자, 대리점에서는 즉시 배달, 공급해 주었음은 물론, 즉석에서 고장난 이앙기도 수리해줌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대리점의 이러한 營業 및 사후봉사방식과 지나치게 利潤만을 추구하는 철저한 商業主義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無能과 無力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 機械化 營農團의 年間 收支計算을 보면, 용자에 대한 상환과 農機械의 修理·維持費 및 油類代金の 충당을 위해서는 연간 트랙터에서 130만원(논갈이 및 운송작업), 이앙기 및 육묘상자에서 100만원, 콤바인에서 70만원정도로 모두 300만원정도의 收入을 얻어야 하며, 이 마을의 여건이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事業 첫해인 금년('87)에는 이앙기가 작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데다가, 이에 대한 修理費(1년도 사용되지 않은 새기계)를 부담했던 탓으로 겨우 250만원의 收入에 그침으로써 50만원의 赤字를 본 셈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이 최초의 계획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成敗는 農機械의 고장발생이 어느정도나 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금년 봄의 이앙기 고장과 이에 대한 사후봉사에 대한 경험, 그리고 주위 農家들이 전해주는 다른 機械化 營農團에 대한 소식과 우려로 미루어 봐서 매우 위험스러워 보인다고 이 기계화 영농단은 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 機械化 營農團은 團長이 2박3일동안 특별과정을 이수했고, 그외에도 일부회원이 道農民教育院의 短期教育課程(2週)을 이수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계자체의 결함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品質의 高級化는 물론 사후봉사활동의 강화에 政府는 보다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기계화 영농단은 고장발생을 최소화하고, 각 機種에 대한 운전 및 조작기술의 專門化를 위해서 각 機種을 각 會員의 責任下에 管理·保有토록 하고 있으며, 각 機種의 作業日程에 대한 計劃도 해당責任者에 의해서 作成·調整되도록 하고 있다.

#### 나) 機械化 營農團 II의 경우

이 機械化 營農團은 1983년에 마을의 56개 전체농가를 회원으로 한 마을단위의 機械化 營農團으로 組織되었으며, 트랙터 1대(28 PS), 바인더(2組式) 2대, 예취기 1대, 경운기 1대(10 PS), 동력탈곡기 1대로 모두 5種의 農機械 6臺를 갖추고 있다.

이 機械化 營農團의 設立 배경은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 이 마을이 1里와 2里로 나뉘어지기 수년전인 1970년대 초반에 故 박정희대통령의 하사품으로 이 마을에 전달된 韓牛 1마리를 기르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한우는 매년 증식되었고, 1976년 이 마을이 1, 2里로 나뉘어지면서 韓牛도 각각 나누어 갖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다시 증식되던 마을의 共同資產인 韓牛는 1982년까지 4마리로 증식되었었다. 한편 1982년말에 있었던 마을전체회의에서는 이 韓牛중 1마리만 남기고 처분하여 이 마을에 크게 부족해진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機械化 營農團을 조직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1983년 트랙터 1대, 바인더 2대, 예취기 1대로 시작했었다(총 事業規模 11,728천원). 그러나 이 중 트랙터는 12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어서 평탄작업이나 上下車作業을 위한 하이드로릭 프론트로더(hydraulic frontloader = 前方 水壓式 上下車作業機)를 추가로 설치했었으나 1년간 사용해본 결과 용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를 製造·販賣한 業體와 교섭하여 이 裝置를 반품하는 대신에 현금 70만원을 더 지불하기로 하고 동력탈곡기 1대와 교체했으며, 같은 해에 트랙터가 벌어들인 收入金 100만원중, 동력탈곡기 구입에 따른 부족분 7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30만원과 새로운 融資 100만원으로 경운기(10 PS) 1대를 추가구입,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機械化 營農團은 모든 機械를 마을창고에 統合하여 團長이 혼자서 保管・管理하고 있으며, 영농단장이 모든 營農作業을 관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營農團이 조직되면서부터 營農團長을 받고 있는 현재의 營農團長(36세, 農高卒, '77년부터 귀향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은 자신의 農事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機械化 營農團이 밝힌 각 機種의 作業單價, 作業方式, 年間收支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트랙터는 주로 논갈이와 운반에 사용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수입의 1/3을 기사의 勞賃으로 지불했었으나 '85년부터는 1日當 15,000원으로 트랙터 收入의 약 1/4수준으로 낮쳤으며, 지난 4년간의 수입을 바탕으로 한 연평균 트랙터 收入은 120만원 정도이다.

바인더는 매년 버結束裝置가 고장나는 바람에 작년까지 延 3년동안이나 매년 10여마지기(150평 = 1마지기)정도 밖에는 작업을 하지 못해서 전혀 수입이 없었다고 봐야 하지만, 新品으로 교환한 금년에는 약 70만원을 벌어들였다. 바인더는 150평당 3,800원의 作業費를 받고 있으며, 그중 800원이 기사勞賃이다.

예취기는 거의 용도가 없어서 금년 봄부터 인근에 있는 牧場에 임대해 오고 있으나, 賃貸料나 賃貸條件은 금년 말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경운기는 1일 13,000원의 使用料를 받고 있으나, 이제는 마을사람들의 대부분이 경운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경운기가 없는 마을회원이 관리・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마을행사때 그 農家가 술값을 부담해주는 정도에서 회원들이 받아들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動力脫穀機는 4인이 한組가 되어 作業하게 되는데, 1日 100~120가마정도를 탈곡하며, 作業費는 脫穀量 30가마당 버 1가마이지만, 그중 1/2은 人夫몫이고, 나머지 1/2이 탈곡기 몫이다.

그러나 자기농사가 바쁘고, 일손이 부족해서, 脫穀機 作業組 4인의 確保가 어려워져서 금년부터는 탈곡기만을 대여해 주고 그대신 脫穀量 50가마당 1가마씩의 機械使用料를 받고 있으며, 금년 탈곡수입은 42만원 정도로 그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86년까지, 그러니까 바인더 2대가 계속된 고장으로 인해 처음 2~3일밖에는 작업을 할 수

없었던 3년동안은 事實上 이 탈곡기 수입으로 機械化 營農團이 유지될 수 있었을 만큼 큰 기여를 해왔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 機械化 營農團의 收支計算으로는 機械化 營農團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修理・維持費와 約定에 의한 融資金償還이 가능하려면 연간 250만원 정도의 收入을 얻어야 하며, 여기에 減價償却費까지를 감안한다면 연간 400만원 정도의 收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機械化 營農團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충분한 收入基盤 즉 會員農家の 전체 논면적 33ha, 밭 65ha, 그리고 마을전체가 참여한 56개 會員農家라는 유리한 여건을 모두 收入으로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지난 4년동안은 평균 200~250만원의 연간 수입에 그쳤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1990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償還되어야 할 融資金額은 利子를 제외한 元金만도 735만원(트랙터 380만원, 경운기 65만원, 바인더 2대 각 45만원씩)에 이르고 있는 반면, 바인더를 제외한 모든 機種이 이미 3~4년동안이나 사용해온 낡은 機械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修理・維持費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인다.

한편 이 機械化 營農團이 지난 4년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하고 있는 機械化 營農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우선 農機械를 각 機種別 管理 및 作業責任者없이 통합관리함으로써 機械를 여러사람이 다루게 되며, 이에 따라 機械가 함부로 다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機械가 고장나게 되면 방치해 버리는 일도 생기게 되는 등 機械의 고장 및 修理에 대한 履歷管理가 어렵기 때문에 機械의 수명이 짧아지고, 機械고장이 잦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機械化 營農團은 내년부터 각 機種別로 책임자를 정하여, 그 책임자에 의해서 機械가 保管・管理・使用 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農機械의 品質을 향상시킴으로써 農機械의 고장을 줄어야 할 것이며, 마모가 심한 부품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버린 뒤가 아니라 정기적인 사전 부품교환이 가능하도록 製造業體의 部品供給體系나 整備體系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세째, 사후봉사체계의 강화와 서비스정신에 입각한 사후봉사활동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農機械의 사후봉사는 많은 먼지와 이물질속에서 작업해야 하는 農機械가 갖는 취약점과 營農作業이 특정시기에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營農作業의 시간적 固定性이라는 特性에 알맞는 사후봉사체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代理店이나 農機械 製造業體는 利潤極大化라는 商業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政府의 이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마. 收買事業

##### ① 米穀

米穀收買事業은 우리나라의 主食糧인 쌀의 需給을 安定的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施行해 오고 있는 중요한 農業政策事業중의 하나로써, 1970년 이후부터의 米穀收買實績을 살펴보면, <表 3-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生産量에 대한 收買量의 比重推移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 꾸준히 增加하여 77년, 78년에는 23.4%에 달했었으나 冷害로 인한 흉작을 경

表 3-19 年度別 秋穀收買實績, 1970~86

年度別	生産量(A)	收買量(B)	B/A	年度別	生産量(A)	收買量(B)	B/A
	千石	千石	%		千石	千石	%
1970	27,356	2,436	8.9	1979	38,645	9,032	23.4
1971	27,761	3,418	12.3	1980	24,655	3,790	15.4
1972	27,480	3,520	12.8	1981	35,160	6,356	18.1
1973	29,248	3,331	11.4	1982	35,938	7,577	21.1
1974	30,867	5,105	16.5	1983	37,529	8,468	22.6
1975	32,424	5,483	16.9	1984	39,457	8,436	21.4
1976	36,215	7,245	20.0	1985	39,071	7,567	19.4
1977	41,706	9,742	23.4	1986	38,936	6,186	15.9
1978	40,258	9,413	23.4	1987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7.

협해야 했던 80년에는 15.4%로 낮아졌다가 다시금 증가하여 '83년에는 22.6%에 달했었으나 그후부터는 多收性 新品種인 統一系의 栽培가 줄어들면서 收買量比率도 낮아지기 시작하여 86년에는 15.9%에 머물렀었다.

한편 이러한 政府의 收買事業은 收買價와 放出價의 差額, 각종 조작비 등의 費用이 발생되어 1986년말 현재까지 누적된 米穀에 의한 糧特赤字는 18,746億원에 이르고 있으며, 84년부터는 缺損의 일부를 一般會計의 赤字로 補償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表 3-20>.

表 3-20 年度別, 穀種別 糧穀管理基金 缺損現況, 1970~86

年 度	計	쌀	보리쌀	其他雜穀	價格補助	一般會計 補 填
1970	△ 28	4	△ 28	△ 4	-	-
1971		51	△ 45	△ 6	-	-
1972	△ 22	49	△ 61	△ 4	△ 6	-
1973	△ 254	9	△ 88	△10	△ 165	-
1974	△1,250	△ 327	△ 356	△19	△ 548	-
1975	△ 936	△ 163	△ 220	△ 7	△ 546	-
1976	△ 503	△ 197	△ 286	△ 5	△ 15	-
1977	△ 631	△ 219	△ 433	21	-	-
1978	△1,591	△1,540	△ 145	94	-	-
1979	△2,087	△1,851	△ 285	49	-	-
1980	△2,417	△1,400	△1,068	51	-	-
1981	△1,441	△ 218	△1,268	45	-	-
1982	△1,305	△ 179	△1,157	31	-	-
1983	△3,370	△2,599	△ 851	80	-	-
1984	△4,059	△3,576	△ 528	45	-	3,304
1985	△3,450	△2,994	△ 490	34	-	4,500
1986	△3,730	△3,596	△ 160	26	-	3,500
合 計	△27,074	△18,746	△7,469	421	△1,280	11,304

資料：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7.

#### 가) 農家の 受容實態

이와같은 米穀에 대한 收買事業은 國民의 基本食糧인 쌀의 需給과 價格을 安定시킬 目的으로, 한편으로는 收穫期의 集中出荷로 인한 낮은 가격

으로부터 農家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非出荷期の 높은 가격으로부터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政策手段으로 定着되어 있다. 그러나 本研究의 農家調査結果를 살펴보면, 農家の 立場에서는 政府의 米穀收買事業에 대해서 充分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86 년을 기준할 경우, 山間地域의 8개 調査農家를 제외한 10개 調査農家中, 米穀收買事業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모두 6개 농가에 이르고 있으나(〈表 3-4〉 참조), 6개 농가중 '87년인 금년에는 米穀收買에 전혀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농가가 2개 농가이고, 나머지 4개 농가도 금년의 買上量을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山間地域의 8개 調査農家를 제외시킨 것은, 本章의 第2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地域의 가을, 즉 結實期가 충분히 길지 못하기 때문에 米質이 좋지 못하여 米穀收買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86年度에 米穀收買에 응했었으나, 금년에는 買上量을 크게 줄이거나 전혀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6개 농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統一系 新品種의 多收性에 의한 所得의 우위성이 낮아져서 面積을 기준으로 한 單位面積當의 米穀所得이 거의 차이가 없어진 반면에, 統一系는 병충해나 태풍에 의한 피해율이 일반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一般市販에 있어서도 一般系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政府買上은 定해진 時間에, 定해진 量만큼 買上規格에 맞도록 乾燥・包裝・操作해서 定해진 買上場所까지 運搬, 檢査를 기다려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불편하고 買上規格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統一系의 植付面積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政府買上은 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겨나 미강 등의 副産物을 農家가 전혀 利用할 수 없지만, 一般市販은 쌀로 去來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農家가 副産物을 利用할 수 있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政府買上은 그의 代金이 목돈으로 일시에 支拂되기 때문에 農家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去來할 수 있는 一般市販에 비해서 資金管理가 어렵고 돈을 남

비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收買價格이 市販價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調查農家들의 米穀收買事業에 대한 全般的인 見解는 충분히 긍정적이지 못하고, 점차 이에 대한 關心度도 낮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本章의 서두에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調查地域이 集團의인 벼농사지역이 아니고, 특히 벼농사의 規模가 큰 農家에 있어서는 수확된 벼의 장기적인 보관이나 이들 농가의 자금수요가 일반적으로 수확직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本 研究에서의 農家調查結果는 全國의인 차원으로 擴大되어서는 안되며 다만 벼농사의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한, 즉 地域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 ② 옥수수

옥수수에 대한 政府의 收買事業은 주로 江原道の 山間地域 일원의 농가들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全國的인 農家에 對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1970/1971年까지만 해도 옥수수는 논농사가 어려운 강원도 山間地域에 있어서 감자와 함께 중요한 食糧作物으로써 기여해 왔었으나 多收性 新品種인 統一系의 개발로 米穀의 自給度가 점차 향상되고, 제 1, 2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반적인 국민생활수준이 向上되었고, 이로써 生活水準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어서는 肉類의 消費가 增加하고, 옥수수와 감자를 栽培하여 이를 主食으로 해왔던 농가들에 있어서는 그의 主食이 옥수수나 감자로부터 쌀로 바뀌어져가기 시작함으로써 옥수수는 食糧으로써가 아니라 飼料用으로써의 비중을 더해 갔었다고 할 수 있겠다. <表 3-21>.

옥수수의 主用途가 食糧에서 飼料用으로 옮겨가면서 1972년부터는 옥수수의 輸入量이 增加하기 시작했고, 國內生産量의 比重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옥수수의 자급율이 과거의 18~19% 수준에서 10%미만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84, '85, '86년의 최근 3개년 동안은 3~4%에

表 3 - 21 年度別 옥수수生産, 收買 및 用途別 使用實績, 1970~86

年度別	生産量 (千%)	收買量 (千%)	收買 比 率	輸入量 (千%)	用途別使用量(千%)			
					計 *	飼料用	玉粉用	澱粉用
1970	68	12	17.3%	284	- (18.9)	-	-	-
1971	64	14	22.6	315	- (18.6)	-	-	-
1972	54	14	25.6	422	434 (13.8)	434	-	-
1973	61	6	9.9	456	526 (12.4)	449	-	77
1974	52	1	2.7	573	576 (10.3)	429	58	89
1975	54	6	10.9	532	589 ( 8.3)	393	110	86
1976	70	8	12.1	890	929 ( 6.7)	698	94	137
1977	83	25	30.8	1,370	1,280 ( 6.2)	990	84	206
1978	100	33	32.5	1,791	1,893 ( 6.0)	1,564	54	275
1979	149	56	37.5	2,881	2,717 ( 3.4)	2,323	44	350
1980	154	63	40.6	2,234	2,401 ( 5.9)	2,028	43	330
1981	145	48	32.9	2,355	2,386 ( 6.1)	1,974	47	365
1982	117	58	49.6	2,814	2,793 ( 4.9)	2,301	55	437
1983	101	52	51.5	4,167	4,158 ( 2.8)	3,491	74	593
1984	133	58	43.6	3,223	3,279 ( 3.1)	2,569	80	630
1985	132	68	51.5	3,035	3,199 ( 4.1)	2,389	108	702
1986	113	51	45.0	3,697	3,665 ( 3.5)	2,712	162	791

\* 의 ( )는 自給率(%)임.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7.

그치고 있다. 이에 政府는 옥수수 收買事業을 강화하기 시작함으로써 1977년에는 生産量의 30.8%를 수매했고, 그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2년 이후부터는 매년 약 50~60千%씩을 수매함으로 수매비율도 40~50%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內需基盤을 갖추고 있는 農産物중의 하나인 옥수수의 收買事業은 飼料生産業體가 값싼 輸入옥수수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生産農家は 他作物에 비해서 相對적으로 낮은 收買價를 이유로 생산을 기피함으로써 實需要者인 飼料業體와 農家사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常存해오고 있는 實情이다.

#### 가) 農家の 受容實態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옥수수 收買事業은 生産農家和 飼料生産業體와의 利害關係속에서 最大 公約數를 찾아야 하며 이에 所要되는 費用 즉 國庫負擔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農家立場에서의 옥수수收買事業에 관한 見解와 實情 등에 대한 調査農家들의 見解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우선 1987년을 기준할 경우 옥수수 政府買上에 응하고자 옥수수를 재배한 農家は 山間地域의 8개 調査農家中 2개 農家に 불과했으며, 이들 두 농가가 밝힌 300 坪當 收支計算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300 坪當 평균 收穫量은 10~12 가마(60 kg들이)로써, '86년도의 수매가격을 기준할 경우 조수입은 22만원 정도(18,680원/60kg×12가마)이며, 이를 위해서 種子代 3~5만원, 肥料代 4~6만원(10~12포대), 農藥代 1만원 등 現金으로 他人에게 支拂되어야 하는 생산비는 300 坪當 57,000~75,000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 坪當 所得은 14만~16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 10,000 평의 옥수수를 재배한 농가의 경우 450~460만원의 所得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금년도의 옥수수 收買價는 가마당 21,300원(60 kg 上品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14%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농가의 금년도 옥수수 所得은 600 만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3,000 평을 栽培한 농가에 있어서도 150 만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70 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調査時期가 옥수수 收買價의 引上發表가 있기 전인 9 月 中순이었음).

그러나 2개의 조사농가가 주장한 옥수수재배의 收益性에는 적지 않은 差異가 있는 바, 그것은 栽培農가가 他人에게 支拂해야 하는 生産費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自家勞力費에 대한 認識의 差異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그중 한 농가는 현수준의 옥수수 收買價格은 이에 自家勞力費를 加算할 경우 겨우 生産費가 보상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山間地域은 1년에 한번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年間所得 300 만원만 얻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6,000명의 옥수수 농사를 지어야 하며, 그보다 栽培規模가 적을 경우에는 生計를 꾸려가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이 농가의 主張이다. 따라서 옥수수 수매가격은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 25,000 ~ 30,000 원(60 kg上品 기준)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농가는 現在의 收支計算만으로도 損害는 없으며, 自家勞力費에 대해서는 이세상의 모든 돈벌이가 自家勞力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經營主 스스로가 이를 生産費로 간주할 경우 收支맞는 作目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收買資金을 管理하는 農協單位組合의 實務者는 농가에 따라서 고냉지채소보다 훨씬 못하다는 농가도 있고, 고냉지채소를 아예 投機性 作目으로 단정하고 감자나 옥수수를 훨씬 有利한 作目이라고 주장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옥수수의 收益性이 현재의 收買價格下에서 꼭 不利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옥수수 栽培面積의 변화는 前年度의 고냉지채소시세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를 들면, 작년도의 고냉지채소가격下落이 管内의 옥수수 생산량을 전년대비 28% 정도 증대시킨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바. 短期營農資金 支援事業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短期營農資金 支援事業은 第3共和國과 함께 綜

合農協(農業銀行+農協)이 發足を 보게 된 1961년부터이며, '80년 이후부터의 支援實績은 <表 3-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營農資金 支援總額은 1980년에는 3,348 억원이었던 것이 86년에는 2.3 배가 增加한 7,779 억원으로 늘어났으나, 總 農家戶數는 같은 기간중에 2,155 千戶에서 1,906 千戶로 줄어들었으므로 戶當平均 支援額은 155 千원에서 408 千원으로 2.6 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營農資金을 支援받은 受惠農家數는 1980년의 1,600 千戶에서 86년에는 1,645 千戶로 늘어난 반면 總 農家戶數가 줄어들었으므로 受惠農家比率은 80년의 74.3%에서 86년에는 81.4%로 높아졌으나, 戶當平均 經營費가 같은 기간중에 587 千원에서 1,854 千원으로 3.2 배가 증가함으로써 受惠農家當 經營費에 대한 營農資金의 支援率은 35.6%에서 27.1%로 낮아졌다. 또한 全農家の 年間經營費總額에 대한 營農資金 支援總額의 比率도 80년의 26.4%에서 86년에는 22.0%로 낮아졌다.

營農資金은 貸出期間 1년 이내, 年利 8%의 短期信用貸出資金으로써 연중 分期別로 支援되고 있으며, 農家當 200 만원의 貸出限度 이내에서 耕

表 3-22 年度別 營農資金支援實績, 1980~86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總 農 家 戶 數 (千戶)		2,155	2,030	1,996	2,000	1,974	1,926	1,906
受惠農家戶數 (千戶)		1,600	1,643	1,607	1,636	1,591	1,645	1,546
受惠農家比率 (%)		74.3	80.9	80.5	81.8	80.6	85.4	81.1
經營費	總 額 (億圓)	12,658	16,094	19,289	27,426	31,130	33,994	35,337
	戶當平均 (千圓)	587	793	966	1,371	1,577	1,765	1,854
支營農資金	總 額 (億圓)	3,348	3,876	4,732	4,783	5,468	6,891	7,779
	戶當平均 (千圓)	155	191	237	239	277	358	408
		(209)	(236)	(294)	(292)	(344)	(419)	(503)
支援比率 <sup>2)</sup> (%)	全 體 農 家	26.4	24.1	24.5	17.4	17.6	20.3	22.0
	受 惠 農 家	35.6	29.8	30.4	21.3	21.8	23.7	27.1

1) ( )는 受惠農家當 平均임.

2) 支援比率 =  $\frac{\text{受惠農家當 平均營農資金 支援額}}{\text{戶當平均經營費}} \times 100$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主要統計」 1989.

農水産部, 「農水産金融便覽」 1986.

作規模에 따라 差等を 두고 있다. 營農資金의 利子率은 1982. 3월부터 그 이전의 14%에서 10%로 낮추었었으며, '86년 3월부터는 農漁村綜合對策을 계기로 다시금 8%로 引下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0년 이후부터의 營農資金이 運用實績을 分期別로 살펴보면 (表 3-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3-23 年度別, 分期別 營農資金融資 및 回收實績, 1980~85

單位: 억원(%)

區 分		1 / 4	2 / 4	3 / 4	4 / 4	計
融 資	1980	519 (15.8)	1,708 (51.0)	1,052 (31.4)	69 ( 2.1)	3,348 (100.0)
	1981	1,093 (28.2)	2,429 (62.7)	279 ( 7.2)	75 ( 1.9)	3,876 (100.0)
	1982	1,979 (41.8)	2,087 (44.1)	525 (11.1)	141 ( 3.0)	4,732 (100.0)
	1983	1,172 (24.5)	3,016 (63.1)	518 (10.8)	77 ( 1.6)	4,783 (100.0)
	1984	1,673 (31.0)	3,477 (64.4)	105 ( 2.0)	142 ( 2.6)	5,397 (100.0)
	1985	2,327 (33.9)	3,851 (56.0)	198 ( 2.9)	497 ( 7.2)	6,873 (100.0)
回 收	1980	50 ( 2.3)	119 ( 5.4)	143 ( 6.6)	1,872 (85.7)	2,184 (100.0)
	1981	285 ( 7.1)	122 ( 3.0)	256 ( 6.3)	3,371 (83.6)	4,034 (100.0)
	1982	72 ( 1.6)	144 ( 3.2)	320 ( 7.0)	4,022 (88.2)	4,558 (100.0)
	1983	169 ( 3.6)	376 ( 8.1)	424 ( 9.1)	3,680 (79.2)	4,649 (100.0)
	1984	68 ( 1.3)	371 ( 7.5)	630 (12.7)	3,899 (78.5)	4,968 (100.0)
	1985	726 (10.9)	668 (10.0)	489 ( 7.3)	4,793 (71.8)	6,676 (100.0)

資料: 農水産部, 「農水産業金融便覧」, 1986.

우선 農家の 分期別 營農資金需要라고 볼 수 있는 分期別 營農資金의 放出實績을 살펴보면 '81년에는 2/4分期에 年中 放出額의 51%가 放出되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4分期(31.4%), 1/4分期(15.8%), 4/4分期(2.1%)의 順이었으나, 1981년부터는 2/4分期 - 1/4分期 - 3/4分期 - 4/4分期의 順으로 1/4分期과 3/4分期의 順序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農家の 資金不足現象이 과거에는 7, 8, 9월의 3/4分期가 1, 2, 3월의 1/4分期보다 심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1/4分期가 3/4分期보다도 資金不足現象이 심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이때가 入學金 등의 學資金需要가 集中되어 있는 年初와 一致하고 있어서 이 두가지가 서로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농가의 分期別 營農資金償還實績이라고 볼 수 있는 營農資金의 分期別 回收實績을 살펴보면 4/4分期, 즉 年末이 大部分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農産物의 收穫이나 出荷 및 販賣가 모두 年末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농산물의 가을철 收穫比重이 상대적으로 크고, 오랜기간동안 매년 12월 31일을 會計年度의 마감일로 해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營農資金支援事業은 全體 農家戶數의 80%以上이 受惠農家인데다가 支援되는 營農資金이 全體農家の 農業經營費의 20%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農政分野중 하나다. 여기서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와같은 營農資金의 支援惠澤을 받고 있는 農家들의 營農資金支援事業 受容實態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農家の 受容實態

우선 18개 調査農家中 1987년의 경우 4개 농가, 86년의 경우 2개 農家が 營農資金을 전혀 지원받지 않았던 바, 이들 농가중 1개 농가는 이미 3~4년전부터 營農資金을 전혀 支援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表 3-24).

이들 營農資金을 전혀 지원받지 않은 農家들은 ① 自身들의 資金事情이 꼭 빚을 얻지 않고도 農事를 지을 수 있고 ② 마을에 배정된 營農資金이

表 3 - 24 調査農家の 營農資金金融資金額別分布, 1986 / 1987

單位: 戸

融 資 金額別	山 間		準 山 間		都 市 近 郊		計	
	1986	1987	1986	1987	1986	1987	1986	1987
200 萬圓	—	1	1	1	1	2	2	4
150 萬圓	—	—	1	1	1	—	2	1
120 萬圓	—	1	—	—	—	—	—	1
100 萬圓	1	2	—	—	—	—	1	2
70~80 萬圓	2	—	1	1	2	1	5	2
50~60 萬圓	1	1	2	2	—	—	3	3
40 萬圓	2	1	—	—	1	—	3	1
계	6	6	5	5	5	3	16	14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事情에 놓여 있는 農家들의 申請額을 充當하지 못하여 이웃농가들에게 양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러한 營農資金의 支援은 里長들이 각 農家の 資金申請을 받아서 이를 취합하여 邑・面事務所와 單協에 申請・報告되며, 이는 報告系統을 따라 中央에 보고되어, 中央에서 이를 취합・檢討하여 配定하면 다시 單協과 里長을 거쳐 각 農家에 配定되고 있다. 따라서 農家の 申請額과 配定額은 다를 수 있으며〈表 3-25〉, 配定을 받은 후에도 각 洞・里別로 마을 사정에 따라서 里長의 중재하게 農家間的 調整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비교적 허다한 실정이다.

表 3 - 25 營農資金受惠農家の 申請額對 配定額의 關係別 分布

區 分	山 間	準山間	都 市 近 郊	計	
1986	申請額 = 配定額	2	4	3	9
	申請額 > 配定額	3	1	1	5
	申請額 < 配定額	1	—	1	2
1987	申請額 = 配定額	1	3	3	7
	申請額 > 配定額	4	2	—	6
	申請額 < 配定額	1	—	—	1

농가들의 營農資金 申請動機를 87年度에 營農資金을 使用하고 있는 농가들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綜合해 보면 <表 3-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營農資金支援事業의 본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農事資金의 不足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한 農家は 전체 營農資金 使用農家 14개 農家中 2개 農家에 불과하고, 꼭 農事資金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農家の 전반적인 資金고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한 農家가 12개 農家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支援받은 營農資金의 使用에 있어서도 <表 3-27>에서 보는 바와같이 營農資金을 種子, 肥料, 農藥, 飼料 등의 營農資材購入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農家は 2개 農家에 불과하고 11개 農家は 農事資金에 관계없이 農家の 지출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된다고 답하고 있으며, 무응답 1개 農家は 실은 80만원의 營農資金중 50만원을 自營業을 하고 있는 동생의 事業資金으로 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現實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營農資金支援事業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農家가 農産物을 생산하는 하나의 經營單位라는 점에서 경영상의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經營主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며, 대부분의 農家들이 후자의 見解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3-26 營農資金受惠農家の 申請動機別 分布

受容動機別	山間	準山間	都市近郊	計
農事資金의 不足解消	2	—	—	2
農家資金의 不足解消	4	5	3	12
計	6	5	3	14

表 3-27 營農資金受惠農家の 營農資金 使用實態別 分布

使用區別	山間	準山間	都市近郊	計
農事資金(資材購入等)	2	—	—	2
農家の 支出 우선순위에 따라서	4	5	2	11
무응답	—	—	1	1
計	6	5	3	14

그러나 여기서 말한 經營上의 지출우선순위가 모두 農事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 즉 家計分野에 대한 支出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營農資金의 目的外 使用은 그의 통제나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가입장에서는 농가내의 모든 자금을 農事時期에 맞추어 集中시키다 보면 農事以外的 분야에 있어서의 자금부족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營農資金의 使用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營農資金의 支援이 갖는 본래의 目的과 意圖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農家經濟가 다소 여유가 생기고 윤택해지게 될 때까지는 農家들의 영농자금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認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營農資金을 지원받은 農家들의 營農資金受惠結果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 보면 <表 3-28>에서 보는 바와같이 調査農家中 11개 農家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3개 農家は 「그저 그런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들 3개 農家の 소극적인 見解는 營農資金이 申請額보다 적게 支援될 경우, 때로는 논갈이, 밭갈이 등이 끝난 상태에서 栽培作目を 바꿔야 한다거나, 또는 이미 구해논 賃借地에 대한 農事計劃을 갑자기 수정해야 하는 등, 農事計劃에 差質이 생기게 되며, 어떤 농가는 支援額數가 극히 적어서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表 3 - 28 調査農家の 營農資金 受惠結果에 대한 見解別 分布

單位：戶

見 解 別	山 間	準山間	都市近郊	計
1.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3	3	9
2. 결과적으로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1	-	2
3. 그저그런 정도라고 생각한다.	2	1	-	3
計	6	5	3	14

그러나 全體的으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農家들의 立場에서는 申請額을 全額 支援해 주고, 貸出期間을 農家の 農事期間에 맞도록 農家別로 調整해 주고 貸出金利도 貸出期間에 따라 差等を 두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

#### 나) 農家の 受容實態에 대한 檢討

우선 農家の 政策受容動機와 政府의 政策意圖는 農家の 資金壓拍 解消라는 측면에서는 一致되고 있으나 農事資金의 支援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農家の 營農資金申請이 營農計劃을 바탕으로 한 資金需要를 근거로 한다기보다는 農家の 전체 資金사정을 바탕으로 金利가 낮은 營農資金을 가능한한 많이 確保하고, 그 이상의 不足分을 營農資材의 外上購入이나 一般貸出, 또는 私債로 충당한다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營農資金의 政府支援은 앞에도 언급한 바와같이 그의 受惠對象이 農家이고, 農家は 하나의 農業經營單位이기 때문에 農家の 資金運用이나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경영주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며, 營農資金의 農業의 사용에 대한 감독이나 추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營農資金의 合目的 使用에 대한 制度的 裝置의 보완보다는 農家와 里長들의 營農資金支援事業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認識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신교육내지는 소양교육의 강화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第 4 章

###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의 農業政策은 해방과 6.25 동란, 戰後復舊를 거친 60年代까지 「食糧의 絶對不足을 해결하기 위한 增産」을 政策基調로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60年代 후반부터는 自立安定農家の 育成이나 主産團地造成事業 등 부분적인 構造改善政策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70年代에는 公업개발을 위주로 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非農業部門의 成長이 高度化되기 시작함으로써 都·農間の 隔差가 심해지면서 기존의 增産政策基調위에 農家所得增大政策을 接木한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 「새마을所得增大事業」 등, 소위 「增産을 통한 農家所得增大」가 새로운 政策基調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70年代 후반부터는 工業化, 都市化의 進行에 따른 農産物의 商品化와 流通物量의 증가로 인한 流通近代化와 營農後繼者의 育成에 대한 必要性이 證明하면서 「增産을 통한 所得增大」는 제한된 內需市場으로 점차 限界를 노출하게 됨으로써 農外所得增大에 대한 政策的 關心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80年代에 들어서면서는 70年代 후반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農業政策도 多樣해지기 시작했고, 多樣해진 農業政策은 國土와 國民階層間的 均衡開發이라는 國家的 發展戰略方向의 큰 테두리 안에서 農外所得源의 積極적인 개발과 農村의 보다 발전된 生活空間化를 골격으로 한 綜合的 性格을 지닌 農漁村綜合對策으로 發展하기 시

작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農政의 변천과정 안에서 農林漁業의 成長을 살펴보면, 우선 農林漁業의 對 GNP 비중에 있어서 1970 년의 29.3 %에서 1985년에는 14.8 %로 가장 비중이 낮고, 기간중의 GNP 成長기여도에 있어서도 8.5%로 가장 낮은 산업분야로 밀려나 있다.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1985 년을 기준한 경우 栽培業의 비중이 87.1%로 가장 높지만, 1970 年의 91.3 %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畜産業은 같은 기간중 6.9 %에서 11.0 %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농산물의 생산은 축산물과 채소 및 과실에 있어서 크게 증대되고 있는 반면, 麥類, 薯類, 면화, 유채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食生活構造의 다양화, 고급화, 簡食需要의 증가, 일부 農産物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米穀偏重의 生産體系에서 經濟作物의 導入에 의한 복합적 생산체계의 轉換이 농가단계에서 進行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의 農業政策은 農家經濟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 예를들면 1985 년의 農家經濟規模는 1970 년의 그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4 배, 농가지출은 21.9 배, 농가경제잉여는 25.5 배, 농가자산은 31.0 배가 증대되었으며, 농가부채는 무려 127.2 배나 증대되었다. 이러한 농가경제규모의 成長은 긍정적인 發展을 뜻하기도 하지만 127.2 배나 되는 농가부채규모의 증대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農業政策, 그중에서도 특히 農家를 事業主體로 하는 政策事業에 있어서는 政府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가 아니라 농가가 경영주체라는 점에서 농가의 意思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政府는 이들 농가를 支援・調整하는 機能을 가질 뿐, 經營內部에 깊숙히 干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研究에서는 農家の 成長過程속에서 農家가 受容한 바 있는 農業政策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農家の 受容動機 및 目的, 受容 및 事業推進過程, 受容結果에 대한 농가 스스로의 満足度 등을 綜合적으로 調

査・分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農家の 政策受容意圖와 정부의 政策意圖를 比較・檢討하였다.

우선 농가의 政策受容意圖가 정부의 政策意圖와 一致하지 않은 경우는 비교적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이미 飼育중에 있는 韓牛에 대해서 入殖資金을 支援받았다거나, 이미 自力으로 조성한 林間草地나 이미 설치되어 5년동안이나 사용해 온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造成 또는 設置資金을 지원받았다거나, 또는 동생에게 事業資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營農資金을 지원받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물론 農家の 立場에서는 어떤 資金이 되었던지 資金의 용도나 執行 등에 대한 決定이 農業經營主體인 농가의 固有權限이라고 主張될 수 있겠으나, 정부의 特定分野에 대한 特定目的의 支援 및 育成資金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나 경향은 정부의 政策事業에 대한 事後管理의 미흡을 중요한 要因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접적인 政策事業對象인 농가를 최일선에서 接하고 있는 일선기관들은 농가의 事業執行에 대해서 支援資金의 流用이나 執行여부에 대한 確認 및 點檢에 그치고 있는 實情이다. 예를 들면 農村指導所(支所)에서는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을 제외하고는 해당지역, 즉 管內에 支援하고 있는 政策事業名, 事業規模, 受惠農家 등에 대한 기초적인 資料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農協單位組合은 資金의 貸出 및 回收 등 자금관리에 관한 기록만 갖추고 있으며, 邑面事務所의 產業系는 統計資料만 갖추고 있을 뿐, 受惠農家에 대한 指導나 事業進行중의 여건변화에 따른 적시적절한 相談, 事業計劃의 修正 및 補完 등이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원자금의 轉用이나 流用 이외에도 예를 들면 耕種部門에 選拔된 영농후계자가 자금을 받아 農地만을 約定대로 매입했을 뿐, 곧 바로 支援部門과는 다른 短期肥肉牛事業이나 포도원을 造成하였고, 이러한 事業方向의 전환이 담당기관이나 전문기관과의 事前協議는 물론 指導나 相談 또는 諮問에 의하지 않고 經營主의 독자적인 判斷과 決定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政策事業에 대한 事後管理가 매우 허술한 상태에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물론 政策支援資金의 타용도 轉用은 농가가 정부의 政策意圖를 정확하게 認識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가들이 스스로 지원받은 融資의 정확한 액수,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調查結果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농가의 정책지원자금에 대한 認識이 정부의 政策意圖를 이해하려는데서 비롯된다기 보다는 상당수의 농가에 있어서는 농가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상대적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예를 들면, 옥수수의 政府收買價格에 대해서 두개의 調查農家가 段步當 生産費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한 농가는 이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농가는 농가의부로 지불하지 않고 농가내부에 남게 되는 자가노력비, 토지나 자본용역비 등을 생산비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수매가격수준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政策事業으로 추진되는 사업, 그중에서도 특히 特定目的으로 추진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事業支援資金을 신청한 농가의 事業計劃이 전문가(예: 農村指導士, 單協營農部長 등)와 담당자에 의해서 충분히 檢討되어야 함은 물론, 事業主體인 농가의 事業推進能力 등도 事前에 評價되어야 하겠으나, 이미 확보 또는 설치되어 있는 物件, 즉 이미 進行中에 있는 사업을 新規事業인 것처럼 신청하여 지원자금을 받는 등, 최일선에서 사업을 執行·管理하는 기관의 役割과 機能이 극히 미흡한 實情에 있다고 지적될 수 있겠다.

한편 정책의 수용결과에 대한 농가 자신들의 見解는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결과적으로 큰(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자금을 지원받은 受惠者의 입장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지금까지의 經驗을 바탕으로 한 農政 전반에 대한 농가 자신들이 밝힌 견해가 「믿고 따르기 어렵다」(2개 농가거나 「믿고 따르면 손해만 본다」(13개 농가)

라는 부정적 視覺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농정 전반에 관한 농가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주로 「부정확한 統計를 바탕으로 한 政策」, 또는 「신기술, 소득작목 등 새로운 것에 대한 정부의 擴散·普及을 위한 政策에 의해서 過剩生産 → 價格下落 → 都市消費者의 利益과 生産農家の 損害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농가의 活動範圍와 視野,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경험요소들이 全國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개개 농가가 居住하는 마을이나 그의 주위에 限定되어있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樹立되어 추진중에 있는 정책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시적절한 修正과 補完을 충분히 거칠 수 없었던 예산 및 정부조직상의 更直性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농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政策意圖의 傳達不足으로 인한 농가의 認識不足 등도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은 농가의 政策受容實態를 綜合해 보면, 농가의 정책수용이 정부의 政策意圖와 일치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로,

(1) 政策支援事業의 計劃樹立에 있어서 농가의 입장이나 要求, 見解, 利害關係 등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폭넓은 事前檢討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2) 농가와 직접적으로 接하고 있는 일선의 事業推進 및 管理機關의 기능과 역할의 미흡(예 : 정확한 事業背景, 취지, 目標, 推進方法 등에 대한 충분한 說明과 相談機能, 사업대상자의 選拔과 事業計劃의 審議 및 事後指導와 事管管理能力 등),

(3) 사업추진과정중에 發生될 수 있는 농가의 內的 및 外的 與件변화에 대한 적시적절한 대응과 각 지역의 地域的 與件에 따른 部分的인 修正 및 補完, 전국적이 아닌 지역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적시적절한 現場對應을 위한 사업계획의 修正·補完 등이 가능할 수 있는 일선의 事業擔當機關에 대한 自律性 및 權限의 制限,

(4) 농가의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認識不足(例: 상대적 열등감, 피해의식, Ice cake論理(全體事業豫算 對比 農家當 支援額數의 현저한 差異), 固定受惠者 등)

(5) 농가의 農業經營體로서의 經營 및 企劃能力 不足과 이에 대한 農村指導事業의 미흡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이의 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가를 事業主體로 하는 農業政策의 수립에 있어서 농가의 立場이나 利害關係를 우선적으로 수립·고려해야 한다는 認識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사업의 대상농가 선정은 농가의 事業計劃에 대한 농가 자신의 설명과 審査委員들과의 질의답변 등을 통한 깊이있는 審査過程의 定着과 농가의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심사의 內實化, 일선기관의 事後管理能力제고 및 地域的 特殊性과 여건변화에 따른 적시적절한 대응을 위한 일선기관의 自律性 및 權限의 確保와 농가의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政策說明 및 弘報活動의 강화, 그리고 농가의 經營 및 企劃能力 向上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강화가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 附錄：農家の 政策受容에 관한 調査表

調査農家：\_\_\_\_\_

住 所：\_\_\_\_\_

調査日時：\_\_\_\_\_

### 1. 家族事項 및 經營主人의 事項

#### 1) 家族事項

관계	성별	연령	직업	동거여부	結婚, 分家, 수술 등의 特記事項

#### 2) 經營主

○ 學歷：\_\_\_\_\_

○ 年 齡：\_\_\_\_\_

○ 職業經歷：\_\_\_\_\_

○ 其他 社會活動 및 그의 經歷：\_\_\_\_\_

○ 其他 特記事項：\_\_\_\_\_

2. 農家の 受容政策

區 分		受容時期	規模等の特記事項	區 分		受容時期	規模等の特記事項
複 合 營 農	참깨 콩콩 옥수수 맥주 호프 유채 양잠 飼料 蔬菜 施設			普 及 支 援 事 業	撒霧機 揚水機 탈곡기 刈取機 벼짚단기 育苗箱子 비료撒布機 農用엔진 育苗箱子세척기		
	탈기 고추 마늘 양파 한우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負債경감대책		
					出荷調節事業		
農 機 械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분무기 분무기(보행식)				營農資金		
				其他			

3. 農家의 設立 및 成長過程

年 度	農地, 家畜, 農機械 等の 主要營農資産										變動事由 및 受容政策

4. 政策受容

※ 受容政策의 種類에 따라 추가작성함.

1) 受容政策의 目的 및 主要內容에 대한 農家의 認識內容

---



---

2) 政策受容의 動機 및 形態

---



---

3) 政策受容當時의 政策에 對한 期待 및 目標

---



---

4) 政策受容에 따른 主要受惠內容

가) 指導 및 特殊教育

---



---

나) 物資支援 및 其他

---



---

5) 政策支援資金

가) 資金의 規模, 受領方法 및 資金內容

---



---

나) 資金의 惠澤 및 償還條件

---



---

다) 資金의 執行 및 利用實態

---



---

6) 政策事業의 進行過程 및 過程別 推進實績

---



---



---



---

7) 政策受容結果에 대한 農家의 評價

가) 전반적인 評價

- ① 結果的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
- ② 結果的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
- ③ 그저 그런 정도이었다고 생각한다 ( )
- ④ 結果的으로 다소 損害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 )
- ⑤ 結果的으로 큰 損害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 )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나) 部門別 評價

① 所得面 : \_\_\_\_\_

② 資産面 : \_\_\_\_\_

③ 負債面 : \_\_\_\_\_

④ 營農技術面 : \_\_\_\_\_

⑤ 其他 : \_\_\_\_\_

8) 受容한 政策에 있어서의 問題點 및 建議事項

\_\_\_\_\_

\_\_\_\_\_

\_\_\_\_\_

5. 其他政策

1) 收買事業

○ 年度別 收買(買上)量

年 度	買 上 農 產 物 別			備 考
1983				
1984				
1985				
1986				
1987(P)				

○ 問題點 및 애로사항

## 2) 營農資金

## ○ 年度別 營農資金 利用實績

年 度	利 用 實 績			備 考
	申 請 額	受 領 額	用 途	
1983				
1984				
1985				
1986				
1987				

## ○ 問題點 및 애로사항

---



---

## 3) 農業政策 全般에 관한 見解

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② 믿고 따라야 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 )
- ③ 믿고 따라야 할 때도 가끔은 있다고 생각한다 ( )
- ④ 믿고 따르던 손해만 본다고 생각한다 ( )
- ⑤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한다 ( )
- ⑥ 잘 모르겠다 ( )

그 이유는 : \_\_\_\_\_

나) 農家의 立場에서 現在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農政課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다) 農業政策에 대해서 農家立場에서 崇高하고 싶으신 것이나 건의하시고자 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



---



---

## 6. 其他

1) 앞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농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③ 모르겠다 (    )

그 이유는 : \_\_\_\_\_

2) 귀하의 子女들이 귀하의 代를 이어 農事를 계속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꼭 代를 잇도록 하고 싶다            (    )

② 代를 이을 것으로 믿고 있다        (    )

③ 代를 이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    )

④ 절대로 代를 잇지 않도록 하겠다    (    )

⑤ 모를 일이다                            (    )

그 이유는? \_\_\_\_\_

3) 귀하는 農事가 잘 되어 여유가 생긴다면 맨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

그 이유는 : \_\_\_\_\_

4) 위의 일이 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    )

② \_\_\_\_\_ ~ \_\_\_\_\_ 년 정도        (    )

③ 갈수록 어렵다                    (    )

④ 모르겠다                            (    )

## 參 考 文 獻

- 金俊輔, 「農業政策」, 白英社, 1962.
- 南久熙, 「韓國의 農業과 農政」富民文化社, 1982.
- 農林部, 「農漁民所得増大 特別事業 總覽」, 1969.
- 農水産部, 「農漁民所得増大 特別事業 評價報告書, 1968 ~ 73」, 1974.
- \_\_\_\_\_, 「農特事業 經營成果 調査」, 1970.
- 農水産部, 農協中央會, 「複合營農의 開發方向」, 1983.
- 農協中央會, 「우리나라의 農業政策概觀」, 1981.
- \_\_\_\_\_, 「複合營農示範事業에 관한 調査研究」, 1983.
- \_\_\_\_\_, 「複合營農 開發戰略 - 複合營農 심포지움보고서」, 1983.
- \_\_\_\_\_, 「複合營農 示範事業成果 調査結果」, 1984.
- \_\_\_\_\_, 「複合營農示範事業 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1985.
- 盧化俊, 「政策評價論」, 法文社, 1984.
- 奉明根, 「農業政策論」, 螢雪出版社, 1982.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複合營農모델 開發研究」, 1986.
- 孫宗鎬, 「韓國農政의 發展史」, 인성출판사, 1982.
- 宋大熙 外,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5.
- 俞尙根, 「韓國農政의 方向과 教育」, 修學社, 1962.
- 尹皓燮 外, 「農業金融政策과 農業金融構造 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12.
- 李斗淳 外, 「農家經濟의 實證的 調査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12.
- 李永錫, 「高冷地菜蔬의 栽培現況 및 需給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9.

- 李永錫, 「商業農時代の農村指導事業」,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7. 9.
- 李重雄 外, 「農民後繼者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12.
- 鄭德基, 「韓國近代農政史 研究」, 螢雪文化社, 1982.
- 崔正燮 外, 「自立經營農家育成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12.
- 崔鍾載, 「農業政策論」, 一潮閣, 1969.
- 崔應祥 編著, 「農政 10 年史」, 世文社, 1959.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韓國農政日誌」, 1985.
- \_\_\_\_\_, 「轉換期の韓國農業」研究叢書 1, 1978.
- 許信行, 「地域農業과 複合營農」研究叢書 1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農林水産部, 「農家經濟調查 結果報告」各년도판.
- \_\_\_\_\_, 「農林水産統計年報」各년도판.
- \_\_\_\_\_, 「農林水産主要統計」, 1987.
- \_\_\_\_\_, 「農水産金融便覽」, 1986.
- 農協中央會, 「農協年鑑」各년도판.
- 日本農業研究會編, 「農業政策批判」御茶の水書房, 1977.
- 碩正夫, 「農政の目標」, 富民協會, 東京, 1966.
- 黑柳俊雄 共編, 「農政의 經濟分析」, 明文書房, 東京, 1981.
- 柏祐賢, 「農業政策論」, 養賢堂, 東京, 1980.
- 態本縣 農業試驗場, 「新技術導入に伴う個別農家の發展過程に關する調査研究」, 昭和 42 年 3 月(1967. 3).
- Baum Kenneth. H. & Schertz Lyle. P., 「Modeling Farm Decisions for Policy Analysis」,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3.
- Day. R. H., 「Economic Analysis and Agricultural Policy」,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2.
- Earl O. Heady, 「Goals and Values in agricultural Policy—Price and Income Policy—」, CAEA Report 7, Iowa State Uni., 1960.

- Earl O. Heady, 「Agricultural Policy under Economic Development」, Iowa State Uni. Press, 1962.
- Hildreth. R. J., 「Readings in agricultural Polic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8.
- Lindon J. R. and Bererly F., 「Decision Analysis in agricultural Settings : an Introduction」, Report No. 444.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Michigan State Uni. 1984.
- Petit, M., 「Determinants of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y」, Research Report. 51.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85.
- Runge. C. F., 「The Politics of Farm Policy : Prospects for a Market oriented Agriculture」, Stapf-Paper, p 85-1, Institute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Home Economics, University of Minonesota, 1985.
- Schickele, 「Agricultural Polic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54.

빈 면

研究報告 157

## 農家の 政策受容에 관한 調査研究

---

1987年 12月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刷 株式會社 文苑社

電話 739-3911~4

---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